

봉사하는 재단
연구하는 재단
NEW KOSAF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16
한국장학재단
2016 KOSAF Business Policy 사업 정책

Contents

Section	01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1
		Ⅰ. 일반현황	2
		Ⅱ. 주요사업 세부 현황	5
Section	02	국가장학지원	23
chapter	1.	소득연계형 장학금	25
		Ⅰ. 국가장학금	26
		Ⅱ.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45
		Ⅲ.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51
chapter	2.	우수학생 장학금	59
		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60
		Ⅱ. 대통령과학장학금	97
		Ⅲ.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112
		Ⅳ.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24
chapter	3.	취업연계 장학금	131
		Ⅰ. 국가근로장학금	132
		Ⅱ.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140
Section	03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상환관리	157
		Ⅰ. 학자금대출	158
		Ⅱ.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189
		Ⅲ.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194
		Ⅳ. 농어촌학자금 용자	210
Section	04	인재육성기부	229
chapter	1.	차세대 리더 양성	231
		Ⅰ.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232
chapter	2.	대학생 재능 멘토링	243
		Ⅰ.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244
		Ⅱ. 다문화 학생 멘토링	252
		Ⅲ. 대학생 재능 봉사	260
chapter	3.	기부금 사업	269
Section	05	한국장학재단 연혁 및 미래발전방향	293
		Ⅰ. 연혁 (연도별)	294
		Ⅱ. 미래 발전 방향	301
참고		소득분위	293
		Ⅰ.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310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312

Section 01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I. 일반현황	2
1. 설립 목적 및 연혁	2
2. 조직 및 인원	3
3. 주요사업 및 예산	4
II. 주요사업 세부 현황	5
1. 국가장학지원 사업	5
2. 학자금 대출 사업	13
3. 인재육성기부 사업	17



I |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및 연혁

□ 설립 목적 및 근거

○ 설립 목적

-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인재육성에 기여

○ 설립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연 혁

- 2009. 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 05. 한국장학재단 설립
- 2009. 07.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직접대출) 실시
- 2010. 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실시
- 2011. 07. 전 직원 성과연봉제 실시
- 2012. 01.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 2015. 0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
- 2015. 09.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
- 2015. 11. 한국장학재단 본사 대구 이전 완료
- 2016. 09.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2 조직 및 인원

□ 조직

- 3 본부: 대출경영·나눔경영·협업 본부
- 16부서: 5실 10부 1소

〈 한국장학재단 조직도 〉



□ 인원

- 정 원: 261명 (임원 4명, 직원 257명)
- 현 원: 257.5명 (임원 4명, 직원 253.5명)

(단위: 명, '16.8.31.기준)

구분	임원	정규직							소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원	4	6	12	38	83	110	8	257	261	
현원	4	5	9	33	80	111.5*	15	253.5	257.5	

* 채용형 단시간근로자 5명은 2.5명으로 표기



3 주요사업 및 예산

□ 주요 사업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지원, 학자금 대출, 인재육성기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장학 지원) 소득연계장학, 우수·취업연계장학, 기부장학 등
 - (학자금 대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 (인재육성기부) 국가인재육성 프로그램, 기숙사 지원 등

□ 예 산

- (수입) 정부출연금 4조 1,490억 원*, 차입금(재단채) 2조 1,213억 원 등
 - * 국가장학금 3조 6,546억 원, 근로장학금 2,506억 원, 학자금대출지원 2,155억 원 등
- (지출) 맞춤형 국가장학금 3조 9,446억 원, 대출사업 4조 4,151억 원 등

(단위: 백만 원, '16.8.31.기준)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계	
		삼성기부금	인재육성	기부금	수익		
수 입	1. 정부출연금	4,148,955	-	-	-	4,148,955	
	2. 차입금	2,121,262	-	-	-	2,121,262	
	3. 용자원리금회수	2,067,112	-	59	-	2,067,171	
	4. 자체수입	87,688	2,962	392	15,775	106,858	
	5. 전입금	64,018	-	-	-	1,716	65,734
	6. 전기이월	78,125	194,193	16,436	17,406	610	306,770
합 계	8,567,160	197,155	16,887	33,181	2,367	8,816,750	
지 출	1. 사업비	8,451,124	3,786	5,072	33,181	1,757	8,494,920
	2. 재단운영비	39,008	-	-	-	-	39,008
	3. 예비비	448	-	-	-	-	448
	4. 전출금	65,734	-	-	-	-	65,734
	5. 차기이월	10,846	193,369	11,815	-	610	216,640

Ⅱ | 주요사업 세부 현황

1 국가장학지원 사업

주요 사업	유형별	세부 현황
국가장학지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 대통령과학장학금 ▶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취업연계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근로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
	학자금 상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 및 연체 관리 ▶ 신용회복 지원
인재육성기부	차세대 리더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대학생 재능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 다문화 학생 멘토링 ▶ 대학생 재능 봉사(캠프)
	대학생 연합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주요 성과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50% 수준으로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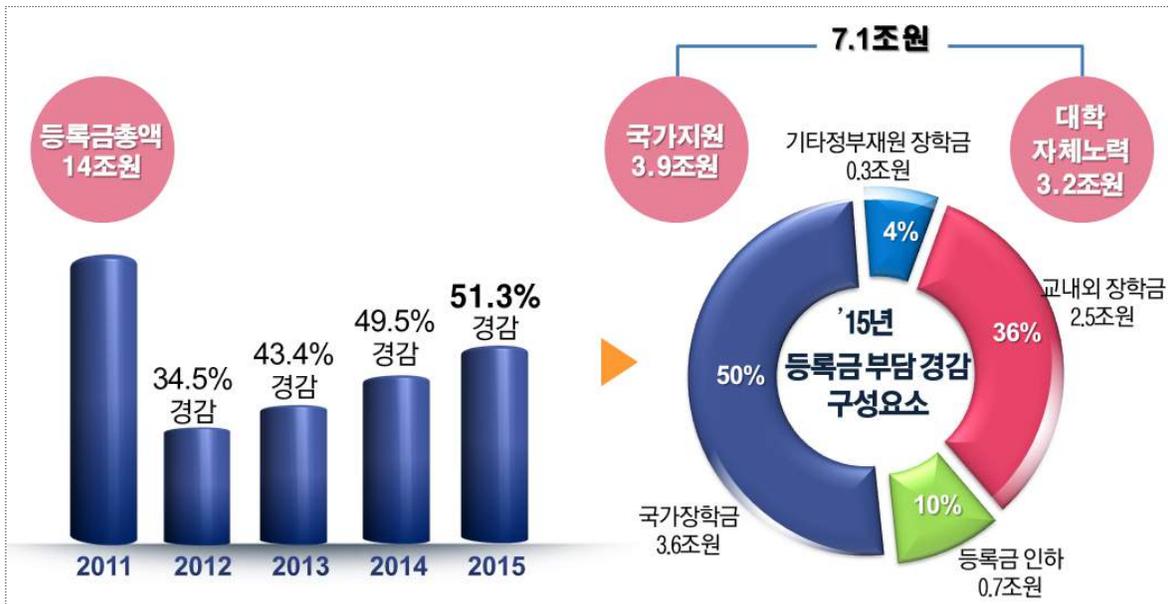
□ '15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 등록금 총액 14조원('11년 기준) 대비 7.1조 원을 마련(정부 3.9조원, 대학 3.2조 원) 하여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1.3% 경감

* 정부 : ('11) 0.5조 원 → ('12) 1.9조 원 → ('13) 3조 원 → ('14) 3.7조 원 → ('15) 3.9조 원

* 대학 : ('11) 1.8조 원 → ('12) 2.9조 원 → ('13) 3조 원 → ('14) 3.2조 원 → ('15) 3.2조 원

〈 '15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 〉



□ '16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기준액 인상(480→520만 원) 및 C학점 경고제(기초~2분위)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 대학 등록금 안정화

○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등록금 인상율은 안정화 추세

* 평균등록금(만 원) : 국공[('11)435→('15)409, △6.0%], 사립[('11)769→('15)734, △4.6%]

1-1 소득연계형 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가. 국가장학금

- (지원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15년 예산 및 '16년 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16년	
	예산	예산	실적
계	36,000	36,545	17,984
I 유형	29,000	29,000	14,048
II 유형	5,000	5,000	2,858
다자녀(셋째아이)	2,000	2,545	1,078

- (지원유형) I 유형, II 유형, 다자녀(셋째아이)로 구분하여 지원

○ (I 유형)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여 장학금 지원(연 52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80점) 이상

* '1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를 2분위이하까지 적용

※ C학점 경고제('14.2학기~): C학점(70점 이상~8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도 1회까지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2016년 소득분위별 I 유형 연간 지원 금액〉

(단위 : 만 원)

년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15년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16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증액	40	40	40	30	22	-	-	-	-



- (Ⅱ 유형) 대학의 자체 노력(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과 연계하여 지원
 -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실적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4,000억 원)
 - * '1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D, 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인재 장학금 지원(1,000억 원)
 - * ('15) 신입생 → ('16) 2학년까지 확대 지원(2년간)
- (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 기초~2분위 이하: 연 520만 원 이내, 3~8분위: 연 450만 원 이내
 - 지원기준 : I 유형과 동일,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연차적으로 확대)
 - * ('14) 1학년 → ('15) 1~2학년 → ('16) 1~3학년 → ('17) 1~4학년

나.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및 우수 인력 양성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0 (42건)	23.8 (58건)	9 (40건)

- (지원기준) 저소득층 중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유학 준비 기간 확대를 위해 유학준비생 유형으로 **고교 2·3학년 선발**
 - *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통해 확인
 - 우수 해외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해 해외대학 입학 확정 후 유학생 유형 전환 심사
- (지원금액) 등록금(실비)·체재비 등 연 **\$50,000*** 이내, 항공료 별도(USD \$2,500* 이내)
 - * \$1 = 1,215원 기준, 약 6천만 원
 - 해외 대학 입학 전에는 진학 비용 지급(학업관리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

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지원목적) 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및 우수 인재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학자금, 거주지원비, 생활비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분야로 지원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56 (3,789건)	55 (3,662건)	27 (1,861건)

* 삼성기부장학금 포함

- (지원기준) 기부자의 의사(기준)에 부합하는 장학생 선발

- 대한LPG협회·하나금융 등 기업 및 개인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 내용 결정 및 장학생 선발

* 기부금품운영위원회 및 삼성기부금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대상 및 금액, 선발기준 결정

1-2 우수학생 장학금

각 분야(이공·인문·예체능계) 및 대상(학부·대학원)별 인재 육성을 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가. 국가우수장학금

- (지원목적) 학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계	759 (24,464건)	759 (27,446건)	380 (12,087건)
이공	이공계 장학금 617 (19,645건)	607 (22,086건)	283 (9,101건)
인문·사회	인문 100년 장학금 131 (4,555건)	130 (4,800건)	81 (2,590건)
예·체능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11 (264건)	22 (560건)	16 (396건)



- (지원유형) 이공계·인문사회계·예체능 계열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4년제)
 - (이공계)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해당 학문 분야 발전 도모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당해 연도 우수 신입생 대상 지급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
 - (인문100년) 인문학 및 기초학문분야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 후속세대로의 성장 도모
 - 국내 고교 3학년 및 인문·사회계열(4년제) 학과 1·3학년 대상 선발*
 - * (전공탐색) 고교3학년, 대학교1학년, (전공학립) 대학교3학년
 - '15년 이후 선발자부터 학업장려비 300만 원(학기별) 지급
 - * 대학 대응 투자 50% 포함
 - (예술체육비전)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창조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15년 신규 도입)
 - 국내 예체능계열(4년제) 학과 3학년 대상 선발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학기별), 학업장려비*
 - * ①인문 100년: 학기별 300만 원 (대학대응투자 50% 포함), ②예술체육비전: 잔여예산 발생 시 연 1회 최대 150만 원

나. 대통령과학장학금

- (지원목적)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대통령과학장학금	58 (895건)	59 (944건)	27 (469건)

- (지원기준)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
- (지원금액)
 - (국내)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250만 원(성적기준 충족자), 생활비 1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 (해외) 연간 최대 미화 \$5만 이내(학비, 체재비)

다.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 (지원목적) 인문사회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리더로 양성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대학원생 지원장학금 (인문사회계)	50 (1,446건)	50 (1,400건)	23 (669건)

- (지원기준) 인문사회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금액) 학기당 최대 400만 원 지원(등록금 범위 내)
* 1인당 최대 1년 간 수혜 가능

1-3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의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를 지원하는 장학금

가. 국가근로장학금

-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국가근로장학금	1,800 (94,797건)	2,271 (110,000건)	1,155 (52,960건)

*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차년도 2월 말에 종료되는 관계로 상기 '15년 실적은 '16년 2월 말까지 지원한 최종 실적

** '16년 실적은 대학 교부금액 기준(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 멘토링 사업 제외)

- (지원기준) 소득 8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지원 가능
 - 장학생은 동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대학별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지원금액) 교내 8,000원/시간, 교외 9,500원/시간
* 국가근로장학 수혜자는 중복수혜 대상(금액)에서 제외



□ (지원유형)

- (일반근로형) 장학생의 근로지에 따라 교내 및 교외근로로 구분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형(교내)) 장애학생 학습지원으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취업연계형(교외)) 취업연계가 가능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활동 진행
* 장애대학생 도우미와 취업연계형은 2015학년도 신설

□ (사후관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의 효과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중

- 주요 거점 도시별 점검센터 운영,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장학금지원에 대한 관리 철저
-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자와 예비 창업 대학생을 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

- 1학기 69억 원, 2학기 신규 및 계속장학생 139억 원 지원 예정
* 장학금 지원자를 1년에 2회(상·하반기) 선발하여 지원 대상 확대 노력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희망사다리장학금	190 (4,361건)	208 (4,000건)	69 (1,609건)

□ (지원기준)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및 전문대학 2학년 이상 학부 재학생 중에서 직전 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지원 가능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학기별 200만 원
- (교육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는 학기별 직무 및 창업 교육 지원, 지역별 중소기업 리스트 제공 등 지원 강화

2 학자금 대출 사업

〈〈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 주요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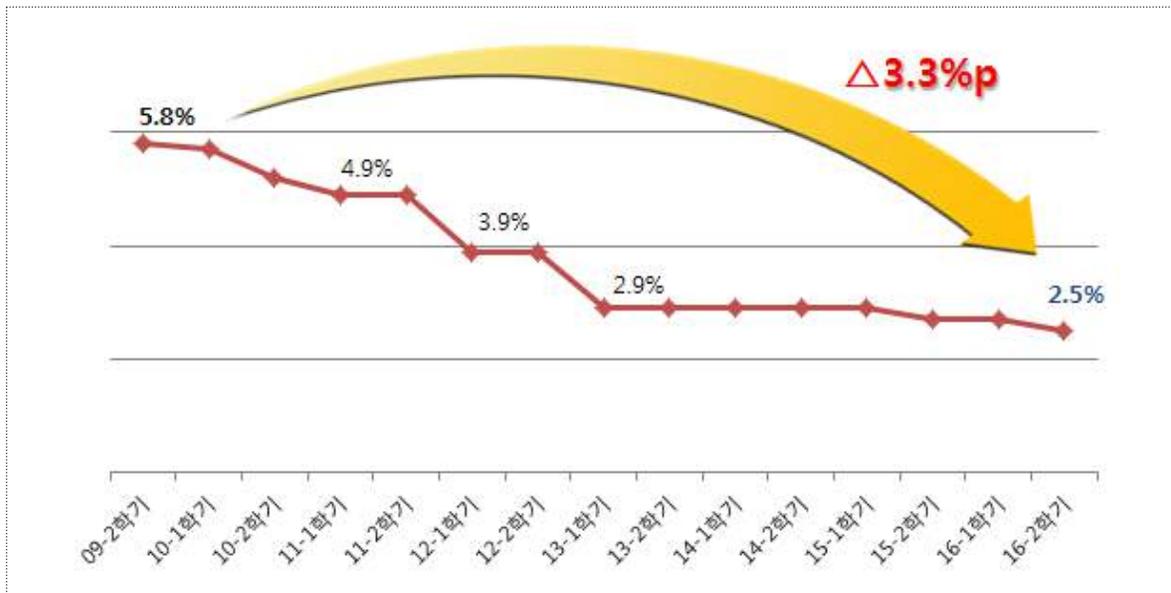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통한 대학생 이자 부담 경감

○ 재단 설립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노력으로 '09년 2학기 대비 '16년 2학기 **3.3%p** 인하 달성

- 금리 인하 : ['09.2학기] 5.8% → ['16.2학기] **2.5%** (△3.3%p)

* 직접 대출 등으로 경비 절감 및 조달금리 인하 가능

〈 재단 설립('09.5월)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이 〉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확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B→C학점, '12.1학기) 및 소득기준(7→8분위, '15.1학기) 완화, 특별추천제 도입으로 심사기준에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 구제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연간 200→300만 원, '13.1학기) 및 연령 제한 완화(만55세→만59세*, '15.2학기)로 학자금 대출 수혜 폭 확대

*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 대출선택제 도입(변동금리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선택권 부여) 및 초과학기 대출 완화(3회→4회), 이수학점 제한 완화(12학점→대학 최소 이수학점) 등('16.2학기)

○ 학자금 대출 금리와 채권 조달금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2-1 학자금 대출지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여 고등교육 기회 부여

가.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13,705 (522,847건)	15,431 (534,161건)	10,757 (419,363건)

-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 (지원기준) 가구소득, 학점, 성적,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 '15년도에는 소득기준을 7→8분위 까지로 확대하여 수혜대상 증가
-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 (지원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7,549 (189,832건)	8,491 (207,651건)	6,556 (167,232건)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출신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농어촌 학자금융자	901 (37,191건)	960 (42,000건)	679 (28,979건)

-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지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인 대학생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용자
 - *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운영을 위탁한 사업

2-2 학자금 상환 관리

효과적인 상환 및 연체 관리로 신용유이자 발생을 억제하여 건전한 학자금 상환 체계 구축

가. 상환 및 연체 관리

- 소득수준별 이차지원, 군복무자 이차면제 등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채무자 상환 부담 경감
 - '15년에는 485억 원 규모의 이차를 지원하여 신용유이자 발생 억제

〈 '15년 실적 및 '16년 계획·실적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485	372*	207**

* 이차보전 204억 원, 군복무이자 103억 원, 특별상환유예 65억 원

** 이차보전 101억 원, 군복무이자 61억 원, 특별상환유예 45억 원

□ 연체 방지 및 연체자 신용보호를 통한 연체율 감소

- (연체방지) 조건 변경, 대출원리금 납부일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채무자의 단순 부주의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연체정상화)** 연체정상화상담센터 운영, 자체프리워크아웃* 등 자체 연체정상화 제도 운영 중

* 신용유의등록 이전에 분할상환기간 장기화 등 자발적 사전 채무 조정

- **(연체율)** '16년도 연체율은 3.43%(전년 대비 1.57%p↓)이며, 연체자 수는 37,965명(전년 대비 20,455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 학자금 대출 연체율 관리 현황 〉

(단위: 건, 억 원, '16.8.31.기준)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대출 잔액(A)	73,955	65,882	59,834	57,980
연체 금액(B)	3,866	2,867	2,991	1,988
연체율(B/A)	5.23%	4.35%	5.00%	3.43%
연체자 수	75,854명	60,736명	58,420명	37,965명

* 일반·보증부·전환대출 포함,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대위변제) 제외

나.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분할상환,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등 다양한 제도 운영
 - **(분할상환)** 장기연체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시 채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조정
 -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감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 및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신용회복 지원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재학 및 졸업 후 2년까지 채무자의 등록된 신용유의 정보를 해제하여 사회활동(취업) 기회 제공

3 인재육성기부 사업

〈〈 인재육성기부 사업 주요 성과 〉〉

□ 국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 추진

- 사회지도층 인사 1,847명이 대학생 15,267명에게 멘토링
- 국무총리 초청행사, 배움지기 진로추적조사, 연구논문 게재 등 추진
 - * 참여자의 취업률(73.9%) 및 대기업·공공 취업률(49.8%)이 일반대학생 대비 각 15.3%p, 34.1%p 높음

□ 대학생 지식나눔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 지원 강화

- 대학생 12만명이 저소득 초중고생 30만명에게 멘토링
 - * 연도별 참여인원: ('10) 1만 명 → ('13) 10만 명 → ('15) 9만 명
 - * 정부3.0 협업: 학교밖청소년(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산업통상자원부), 경제캠프(기획재정부) 등

〈 인재육성기부 사업 참여 현황 ('16.8.31.기준) 〉



□ 인재육성에 기반한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 주거안정

-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인재육성 공간 마련
 - * (1호 기숙사) '17년 1학기 1,000명 입주 예정, 기숙사비 15만원 이내, 은행연합회 기부재원(326억원)
 - * (2호 기숙사 추진) 한국수력원자력 기부 협의 중 (약 400억원)
 - ※ 민·관협업: (부지) 국유지(6,090㎡), (건립재원) 공공기관 기부(약 400억 원)



3-1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사회지도층 인사(나눔지기)의 경험과 지혜를 대학생(배움지기)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 육성 프로그램

- (지원목적)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꿈과 끼, 창의력, 전문성 및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대학생 경력 개발을 지원
- (참여대상) 멘토링 운영 위원회 심사 및 면접을 통한 멘토링에 참여할 나눔지기·배움지기 선발
 - (나눔지기) 기업 CEO, 석학 등 사회 각 분야 리더
 - (배움지기)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16년도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사업 실적 〉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고
260명	2,190명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8명

- (운영방식) 팀별 연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월 1회 이상의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 수행
 - 역량진단, 사이버 아카데미, 리더십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대학생 역량 개발 지원
 - * 배움지기의 부족역량을 진단·개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 나눔지기의 추천을 통해 우수 배움지기가 기업 채용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

3-2 대학생 재능멘토링

대학생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초·중·고등학생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 나눔 봉사

가.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참여대상

- (나눔지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 교외 국가근로장학금과 동일 단가(9,500원/1시간) 기준 지원
-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16년도 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실적 〉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 고
7,030명	22,682명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3.2명

* 연간 나눔지기 12,000명, 배움지기 33,600명 내외 인원 배정

나. 다문화 학생 멘토링

□ 대학생이 다문화 가정 초·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 및 한국 문화체험 등을 통한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 다문화 학생 멘토링 지원 확대에 사회통합에 기여

□ 참여 대상

- (나눔지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의 지도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 (배움지기) 다문화·탈북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16년도 다문화 학생 멘토링 사업 실적〉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 고
4,521명	5,029명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1.1명

* 연 1회 선발



다. 대학생 재능 봉사(캠프)

- 대학생이 방학 중 캠프 형식의 지식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방학 중 저소득층 초·중·고생 대상 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진로상담 등 멘토링 활동
- (참여대상) 재단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및 초·중·고생
 - (나눔지기)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의 대학(원)생
 -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 경비만 지원
 - (배움지기) 저소득층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생

〈 2016년 제13기 하계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사업 실적 〉

(’16.8.31.기준)

나눔지기(멘토)	배움지기(멘티)	비 고
2,555명 내외	7,392명 내외	나눔지기 1인당 배움지기 약 2.9명

* 연간 나눔지기 4,433명, 배움지기 11,000명 내외 인원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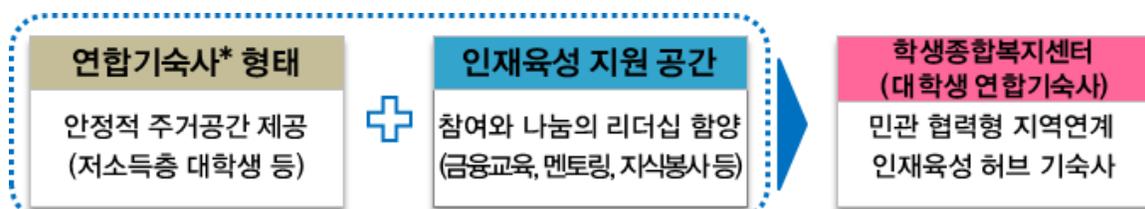
- 나눔지기인 대학생이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창의형 캠프 운영으로 타 기관 멘토링과 차별성 확보
 - (어울림 캠프) 배움지기 맞춤형으로 학업 집중지도 및 진로 상담을 하는 캠프
 - (특성화 캠프) 예·체능 등 다양한 주제로 창의적 활동을 체험하는 캠프
 - (KOSAF캠프) 재단 국가 우수장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캠프

3-3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저소득층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추진

□ 사업 개요

- ◆ 정부와 민간기관 등이 협력하여 꿈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기반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 (연합기숙사) 대학캠퍼스밖에 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는 기숙사

- (사업기간) '14.3월 ~ '16.12월
- (규모) 연면적 19,894m² (1,000명 수용)
- 기숙사 운영 계획(안)
 - (입주대상) 당일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 등 위주
 - (기숙사비) 국·공립 대학교 수준 (15만 원 이내 / 2인 1실 기준 예정)
 - (시행시기) 2015. 9월 착공 ~ '16.12월 준공 예정
 - (입주시기) 2017년 1학기 예정
 - (지원혜택) 주거 공간 외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입주생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멘토링, 지식봉사, 금융 교육, 학자금 상담, 열린 도서관 및 학습지원 공간 등 지원

Section 02

국가장학지원

chapter 1. 소득연계형 장학금	25
I. 국가장학금	26
II.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45
III.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51
chapter 2. 우수학생 장학금	59
I.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60
II. 대통령과학장학금	97
III.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112
IV.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24
chapter 3. 취업연계 장학금	131
I. 국가근로장학금	132
II.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140

2016 한국장학재단 사업 정책

chapter | *1*

소득연계형
장학금

- I. 국가장학금
- II.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III.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I | 국가장학금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

* 등록금 수준(4년제, 대학정보공시)

사 립 : ('00) 451만원 → ('11) 769만원 → ('15) 734만원('11년 대비 4.6% 감소)

국공립 : ('00) 219만원 → ('11) 435만원 → ('15) 409만원('11년 대비 6.0% 감소)

□ 주요경과

- '11.9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12년(1.75조원)부터 시행
 - 정부재정과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연계를 통한 등록금 공동부담 추진
- 정부는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발표('13.5.28)

〈 국정과제 주요 내용 〉

-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기초~8분위, 전액~25%) 및 저소득층 대상 성적요건 완화 검토
 - ※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
- (셋째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계획 마련

- '15년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자체노력(3.2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16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 6,545억원 예산 확정('15.12.2)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교육비 지원)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부담 구조 하에 '15년 달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 유지
 - ※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 ('11년 등록금 총액 기준): ('14) 49% → ('15) 51% → ('16) 52%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경감을 위해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을 3학년까지 확대
 - I 유형 지원단가 인상(480만원→520만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 많이 지원 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
-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연계 강화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신·편입생은 II 유형 지원 배제,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I·II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모두 배제

나. 주요 내용

- (I 유형) 소득별 차등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
 - (II 유형) 대학의 등록금 부담경감 참여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 유도
 - (다자녀) 만 22세 이하('93.1.1이후 출생) 1~3학년,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지원
- (지급구조) 등록금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 연계 필요
 -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 및 등록금 수준의 적정 관리를 위해 I 유형(소득연계 지원)·II 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구조 유지



□ (재원규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16년 3조 6,545억원(I·II 유형 3조 4,000억원, 다자녀 2,545억원) 규모

○ I·II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간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상호 활용

□ (I 유형 : 2.9조원)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

〈2016년 소득분위별 I 유형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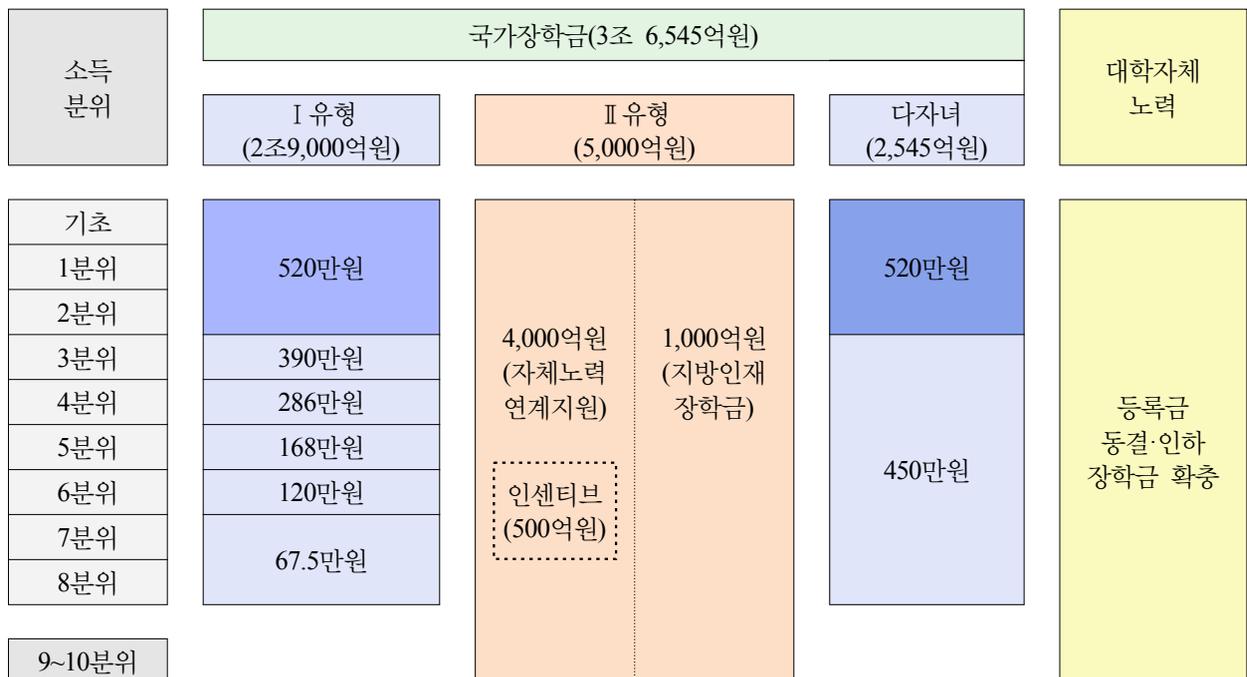
년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5년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지급비율	(100%)	(100%)	(100%)	(75%)	(55%)	(35%)	(25%)	(14%)	(14%)
2016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지급비율	(100%)	(100%)	(100%)	(75%)	(55%)	(32%)	(23%)	(13%)	(13%)
증액		40	40	40	30	22	-	-	-	-

□ (II 유형 : 5,000억원)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응 지원 및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 II 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대학의 II 유형 참여 유인을 확대하여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

□ (다자녀 : 2,545억원) 신입생부터 3학년까지 만 22세이하('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 450만원 지원(단, 기초~2분위는 520만원 지원)

〈 '16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



3 지원방안

3-1 국가장학금 I 유형(소득연계 지원)

□ 목적

-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 기준 지원액 연간 520만원을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학생 선택 적용 불가)



○ 지원제한 사항

-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 기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2조 9,000억원

- (지원금액)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원금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만 지원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학생회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
- ※ 지원 범위는 소득분위별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지원횟수)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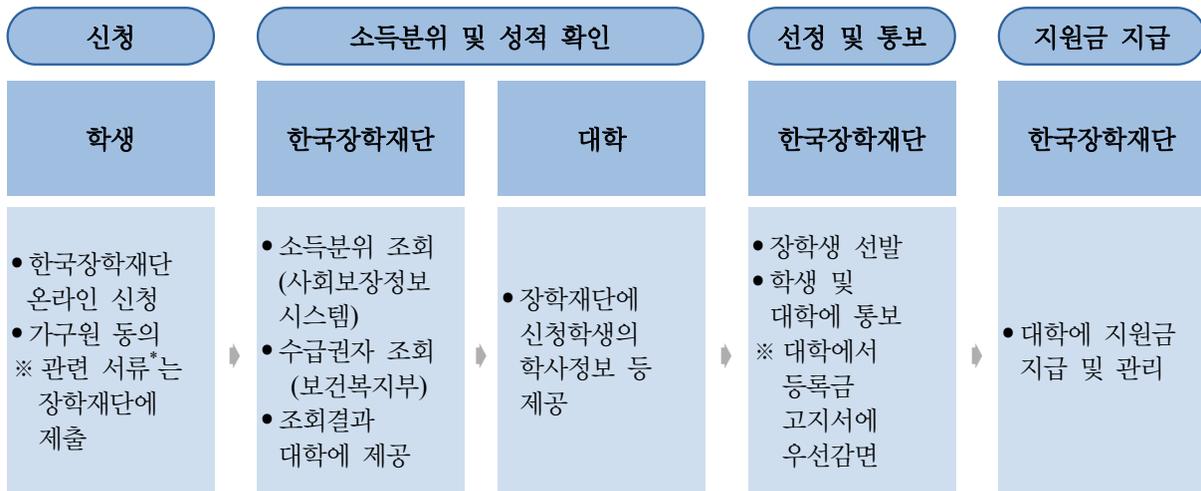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제) 및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제) 지원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재학생·편입생은 최대 지원횟수에서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범위내서 지원(잔여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 등록횟수 : 등록금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등록횟수를 산입하므로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 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한적으로 지원(학생별 1회에 한하여 구제기회 부여)
단, 학생별 구제기회를 사용하였으나 대학별 학사일정(예 : 교환학생, 해외실습 등) 등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에 따라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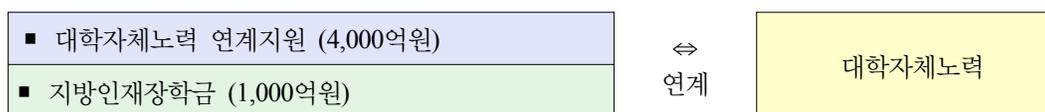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개별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를 독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3-2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목적

-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동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장학금 II 유형 지원
-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 지원 및 자체노력 이행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등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II 유형) 기본구조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소정의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파악가능한 자

○ 지원제한 사항

- '1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D, 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가. 유형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3,500억원

○ (대상대학)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의 자체노력 이행 대학

- ※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15년의 자체노력 규모(등록금 인하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의 합)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I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등록금 인하 시 인하규모 만큼 장학금 규모 감축 가능
- ☞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으로 확인된 경우 “동결(인하)”로 인정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대학별 지급)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해 대응 지원

- 단,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대학 간에 가감조정 가능

□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방안

- 대학 등록금 안정화 기초 유지를 위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는 II 유형을 유지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 지원규모는 「'15년 자체노력 인정분('12~'15년 자체노력 인정분)」×100%와 「'16년 추가 자체노력분 (등록금 인하규모의 150% + 장학금 추가 확충분의 130%)」으로 비율로 대응 지원

- II 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II 유형 참여 유도
 - *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ACE 사업, CORE 사업, Prime 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 지원기준 및 선발절차

- (지원기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 자체지원기준 수립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2분위 중 I 유형 탈락자도 대학자체지원기준 충족 시 II 유형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II 유형 가이드라인]

- (저소득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 지도록 자체적으로 설계
 - * 기초~2분위는 I·II 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과소지급 방지)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대학)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⑤ (대학) 학생 선발·지원 후 한국 장학재단으로 결과 통보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II 유형”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II 유형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개별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를 독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자체노력 인센티브

- (지원규모) 500억원
- (대상대학) '16년 II 유형 참여대학 중 자체노력 우수대학
- (산정방식) '15년도 기준 자체노력실적 40%, 우선감면율 30%, 등록금 부담완화도 20%, 인센티브 지급율 10%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선취업 후진학자 우선지원 실적은 가산점 부여
- (지원기준) '15년 결산 실적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

나. II 유형 - 지방인재장학금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1,000억원
- (대상대학) 비수도권 소재 국·공·사립대학 중 '15년 또는 '16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대학 1~2학년
- (지원기간) 신입생으로 최초 선발이후 2학년 까지 연속하여 지원(최대 4학기)
 -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 재학생(2학년)의 경우 '15년도에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16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대학 소속 학생으로 계속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 휴학생인 경우 복학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지원 요건 충족 판단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15년 또는 '16년 선발된 자 중 계속지원 요건 충족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완료자에 한하여 지원
 - (1학년) '16년 선발자는 '15년 또는 '16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대학 소속 학생
 - (2학년) '15년 선발자는 '16년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대학 소속 학생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원칙으로 하며, 타장학금 수혜한 경우 필수경비 범위 내 차액 지급 가능
 - ※ 단, 최소금액 10만원 이상 지급
- 대학은 선발학생의 기숙사비, 교재비 등 생활비 지원 권장
- 타장학금 수혜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방인재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 학생 계속지원기준 및 지급방식 등

- (계속 지원기준) 직전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중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 할 경우
 - 성적기준 미 충족 등 사유로 1회라도 탈락 또는 미수혜 시 계속지원 불가
- (선발절차) 대학은 ① 우수 인재 확보 노력 ② 자체 선발 기준 수립 및 장학생 추천 → 학생은 ③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대학 ④ 신청 학생의 학사정보 등 장학재단에 제공 → 한국장학재단은 ⑤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사정보 등 확인하여 장학생 선발 및 대학에 등록금 지원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지방인재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개별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를 독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패널티)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장학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지원액 삭감, 장학금 반환 등 패널티 부여

3-3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목적

-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3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대학생

○ 지원제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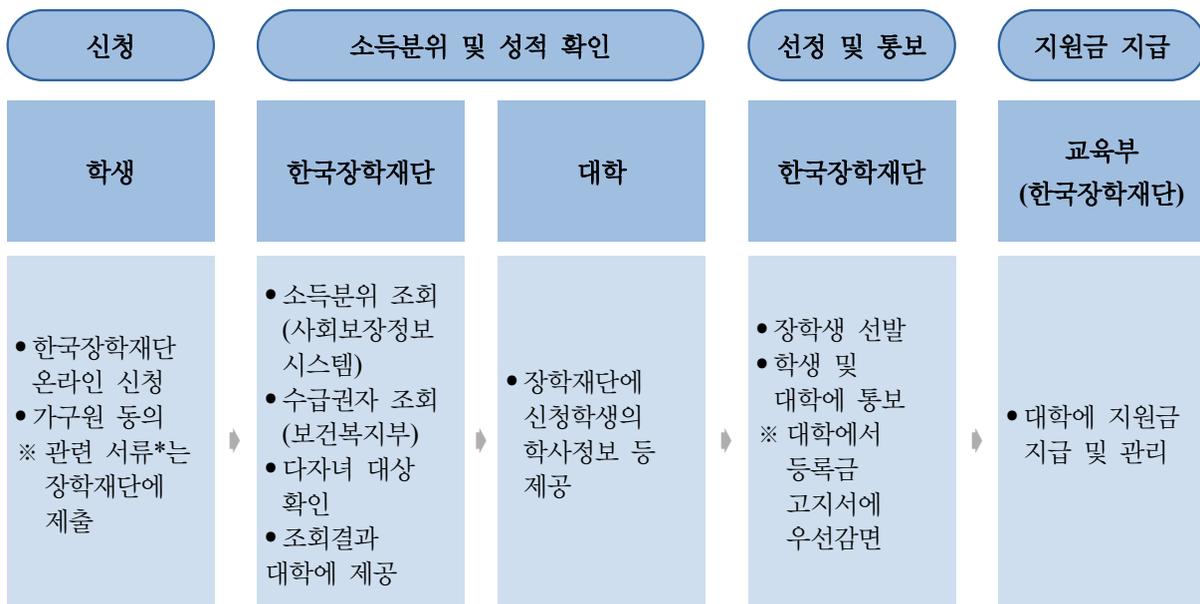
- '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I 유형과 동일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2,545억원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2분위 520만원 지원
 - II 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연계하여 실제 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
 - '14년 이후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1~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17년에 4학년까지 확대 예정)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및 셋째아이 이상 대상여부 확인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관련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개별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를 독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3-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목적

- '14.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 단, '15학년도에 대학생 신분(휴학생 포함)이었던 학생이 '16학년도에 신입입생인 경우도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타장학금 수혜한 경우 필수경비 범위 내 차액 지급

○ 지원기간

- '15학년도 2학기부터 선발이후 1년간(2개 학기 범위내) 지원
- ※ 휴학 중인 학생(군입대, 질병휴학 등)은 복학 시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학생 본인 또는 가족

○ 신청기간 :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 기간내

○ 신청절차

- ①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② 지원대상자 검증(세월호피해 추모지원단) → ③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 ④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⑤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 :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과 국가장학금 신청
- 기 신청자 : 국가장학금 신청(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필요)

* 교육비 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e-메일 또는 우편, FAX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7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 FAX번호 : 053-238-2288, e-mail : khy113@kosa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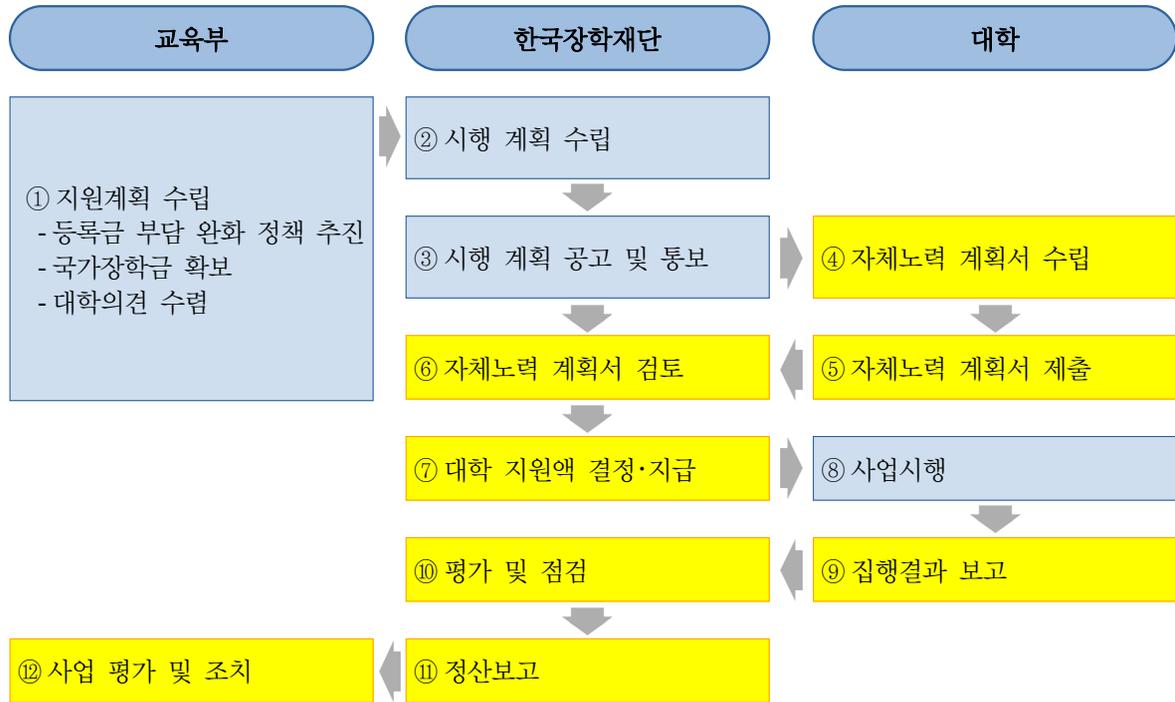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소득분위·수혜 횟수 등 심사요건 미적용
-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



4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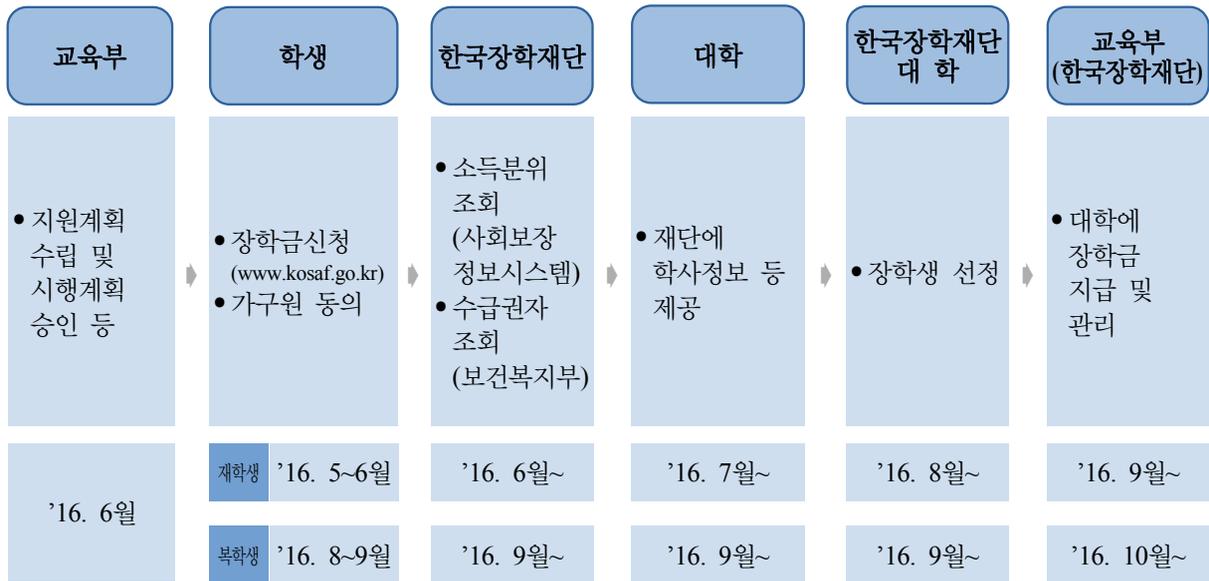
* 유형 I, II, 다자녀 국가장학금 공통 유형 II만 해당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대학 의견 수렴 등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
 -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대학생 소득분위 정보 제공, I 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통보, 대학의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및 평가 등
- (대학) 지원대상자 선정(II 유형), 자체노력 시행, 등록금 고지서 감면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I 유형, II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하고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과 타 장학금 명확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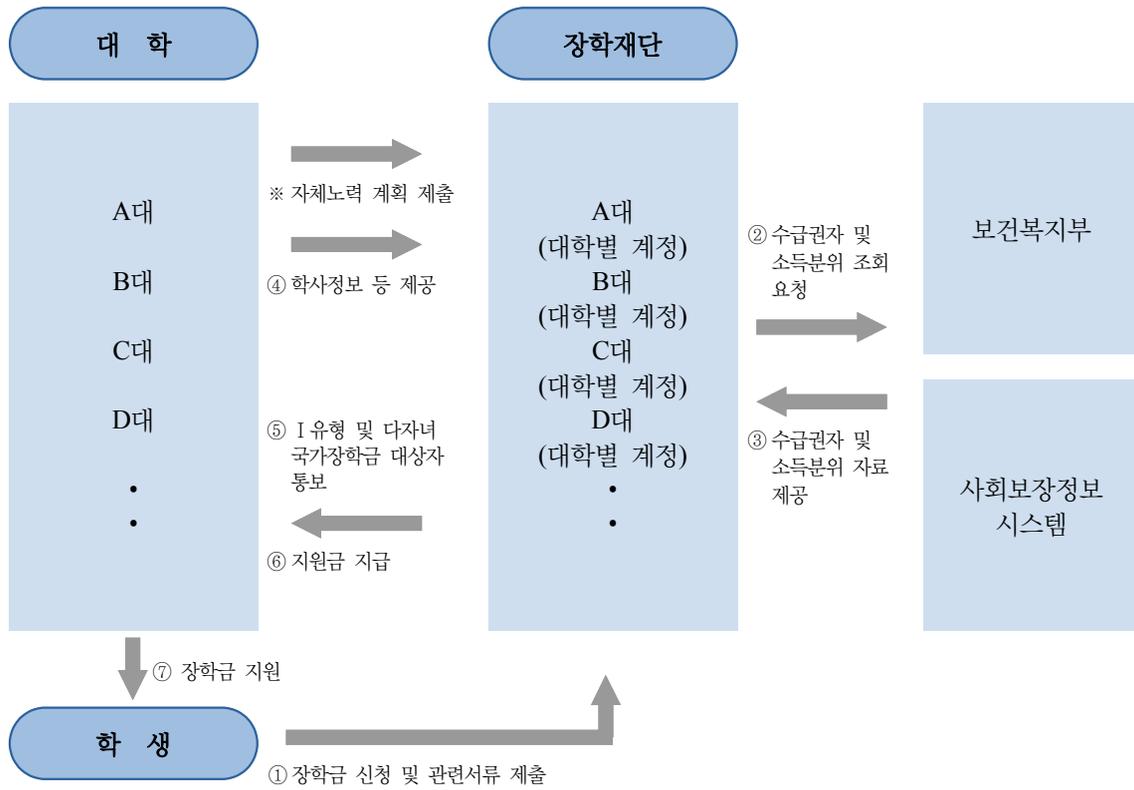
-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하며,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철저
- I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 II 유형은 해당 학기 교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에게 50% 이상 집행 권고

○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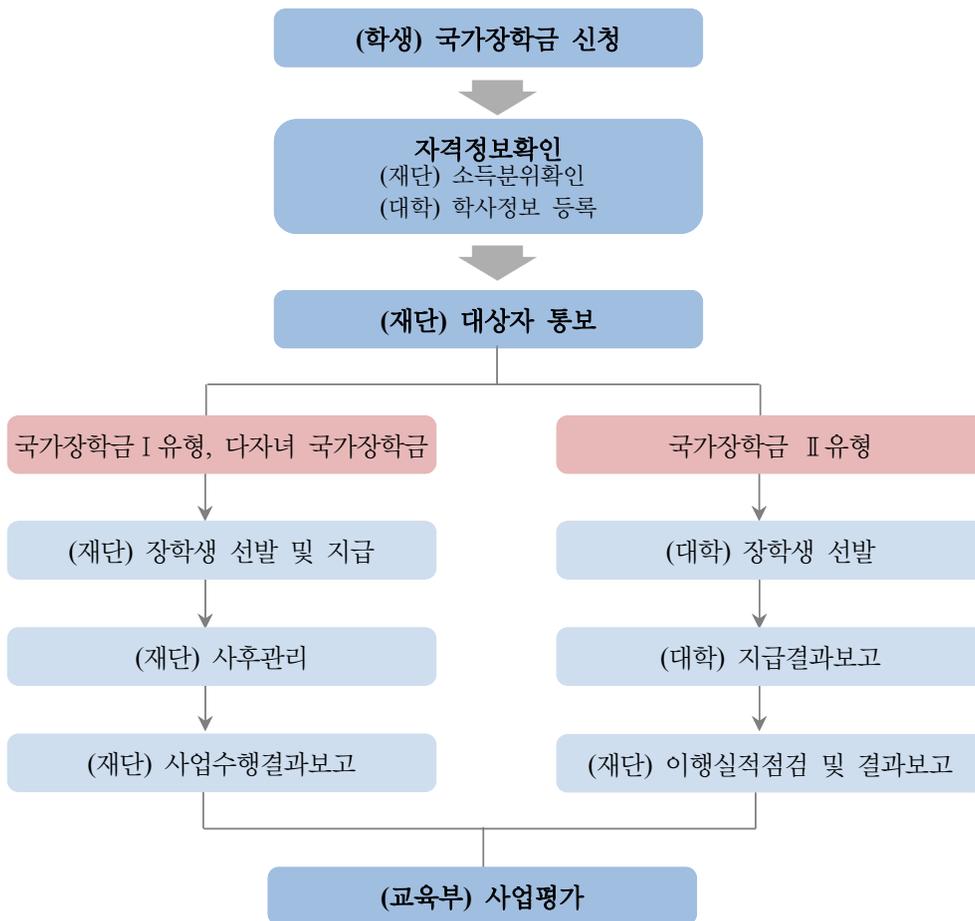


□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관련서류*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제출
 -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 (한국장학재단)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학사정보 등을** 제공 받아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및 I 유형 지원대상, 셋째아이 지원대상을 대학에** 통보
-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셋째아이 지원대상자 명단과 II 유형 신청자에 대한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실시



○ 장학금 지급절차



5 사업 관리

가. 대학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및 구축
-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역할 수행(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적변동자 관리 등)
- II유형 지원 결과보고 제출 및 정산 완료

나.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 오선발, 사후 관리 등에 따른 조치방안 등 국가장학금 집행 관리 역할 수행
 - 사업운영 관련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재단에서 조치
 -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 사항 등은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상정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국가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민·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 등
- 소득분위 변경, 학생 성적포기에 따른 성적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학기까지 미반환시 중복지원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 학생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반환대상자는 대학 협조공문을 통해 제한하며, 사유 해소시 지원 가능
- 대학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금 관리
- 각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대학의 이행실적 점검 추진



- 국가장학금 부당 사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 오선발,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사업결과 보고('17.3월) 및 사업비 결산 보고

다. 교육부

- 정부의 대학 관련 각종 평가에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 반영
- 학사운영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Ⅱ | 우수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1 사업개요

□ 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해외유학 기회 제공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추진경과

- 2012년 1월 : 저소득층의 해외유학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 2012년 6월 : 장학생 1기 선발
- 2013년 5월 : 장학생 2기 선발
- 2014년 5월 : 장학생 3기 선발
- 2015년 5월 : 장학생 4기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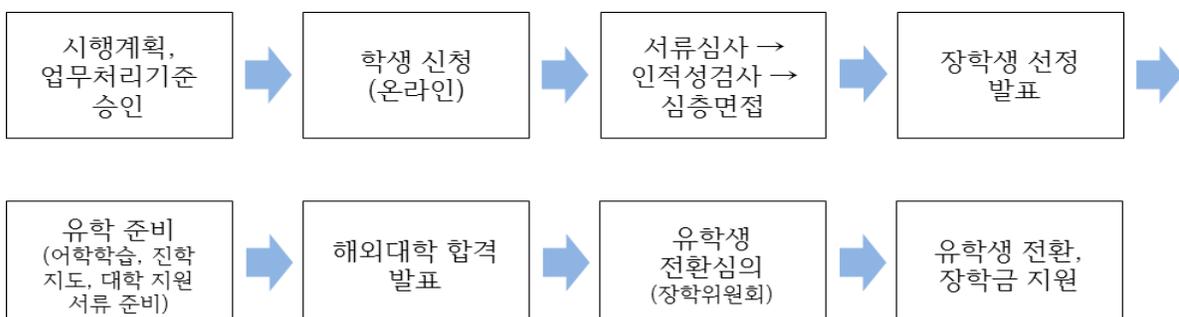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제16조(사업)제1항)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업무처리 흐름도





2 지원 개요

□ 지원규모 및 예산 : 73명 내외, 23.9억원 지원

- 신규장학생 30명 내외, 계속장학생 43명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유학준비생(구 I유형, 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지원기간 : 선발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내역 : 해외대학 진학 및 학업관리비, 입학준비금
 - 진학 및 학업관리비(시험응시료, 원서지원비 등) : 실비 지원
 - 입학준비금* : 유학생(구 II유형) 전환대상자에 한함 ('16년 선발인원부터 적용)
 - * 6백만원 이내, 학업용 노트북과 해외 주거를 위한 물품구매 등

○ 유학생(구 II유형, 해외장학생)

- 지원대상 : 유학준비생(구 I유형) 장학생 중 해외대학 진학하여, 유학생(구 II유형) 전환으로 선발된 자

- ▶ 유학준비생(구 I유형) → 유학생(구 II유형) 전환 선발
 - 대상 : 유학준비생 유형으로 선발된 장학생 중 사전공지 된 지원가능 해외대학 진학자
 - 방법 :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입학예정대학 심의 및 학업목표, 역량 등 평가를 거쳐 유학생 유형 전환자 선발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까지만 유학생 유형 전환 시 지원 가능(단, 졸업 후 1년 유예기간 중 별도 지원 없음)

-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4년제에서 5년제 학과 또는 대학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대학 변경은 장학위원회 승인 후 진행)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5만달러(USD) 이내(학비, 체재비), 항공료, 추가 지원금
 - ※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학비가 5만 달러(USD) 이상 소요 시, 최대 1만 달러(USD)이내 학비 추가 지원
 - 학비 :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 이용료
 - ※ 학교시설이용료 : 학생회관, 실험실, 컴퓨터, 구내식당, 보건진료소 등 교내 학교시설 이용 시 등록금 고지서상 정액 부과되는 시설 이용료
 - 체재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등을 참고하여 공무원 체재비의 90% 내외를 지급. 단, 연간 최대 미화 2만 달러(USD)까지 정액 지급(국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 항공료 : 연간 최대 2.5천달러(USD) 이내에서 매년 왕복(1회) 또는 편도(2회) 항공료 실비 지원(이코노미 기준, 미사용 시 소멸)
 - ※ 항공료는 고국방문 외에도 타국 인턴, 연구 활동 등 학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단, 고국방문 이외에는 증빙 필요)
- 추가 지원금

(인센티브I) 소속 대학의 장학금 수령 시, 추가 지원(해당 장학금의 20%이내)
 (인센티브II) 해외 우수대학(QS 20위권 등) 진학 시 장학위원회 심의 통한 추가지원
 (인센티브III) 특정 언어권 지역(아시아, 유럽 등)의 대학 진학자에게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

□ 관리방안 : 유학준비생과 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 (권역별쿼터)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으로 권역을 나누고 특정권역에 지원인원의 60%이상이 선발되지 않도록 제한예정
 - ※ 단, 심의를 통하여 권역별 쿼터 변경 가능
- (진학 가능 대학) 진학 및 편입가능 대학 안내로 우수대학 진학 장려
 - 해외 우수대학(QS, US News 등) 200위권이내
 - G7, 서유럽, 미국, 일본, 홍콩 대학 50위권 이내
 - 기타 국가 20위권 이내 대학 등
- (안전관리) 해외공관 협조, 비상연락체계, 안전교육, (상해)보험가입 추진 등을 통한 해외 장학생 안전 확보

3 신규 장학생 선발

□ 선발규모 : 30명(유학준비생(구 I유형), 국내장학생) 내외

'17년 졸업예정자 (고교 3학년)	'18년 졸업예정자 (고교 2학년)	비고
10명 내외	20명 내외	최종선발 시 인원조정 가능

- (장학생 풀 운영) 고2 장학생이 고3으로 진학하기 이전에 평가(학업성적, 학업보고서 등)를 실시하고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학준비생(10명 내외) 최종선발(미 선발 장학생은 후보자로 선발가능)
- (추가선발) 유학(준비)생의 자격상실(자퇴, 제적, 자격포기 등) 발생 시 장학생 추가(대체) 선발 가능
 - ※ 심사 우수 순으로 추가(대체) 선발 예정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간이 3년이상인 자

○ '16년 현재 국내 고등학교* 재학자 중 '17년 2월(고3) 또는 '18년 2월 졸업예정자(고2)로서 해외대학 입학 희망자로 출신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교육부 비인가 고등학교 및 외국계 고등학교는 제외

○ 성적자격 : 장학금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전 학년 전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전공실기과목* 중 석차 4등급이내 또는 학점 A-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고3) 또는 12단위 이상(고2)인 자

구분	고교 유형	석차(학점)	과목수 또는 이수단위	
			'17년 졸업예정자 (고교 3학년)	'18년 졸업예정자 (고교 2학년)
석차등급 적용고교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석차 4등급 이내	24단위 이상 (1 ~ 2 학년 성적)	12단위 이상 (1학년 성적)
학점적용 고교	영재학교	학점 A- 이상		

※ 전공실기과목은 특성화고 및 예체능고만 해당

※ 일반고는 특목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

□ 추천방법 : 추천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소속 학교장이 추천

□ 선발방법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심사(1단계) → 인·적성 검사* → 심층면접(2단계)을 통해 학업의지, 학업성적 및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발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원분야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학년별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서류 및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

구분	서류심사 (1단계)				심층면접 (2단계)	최종선발 (1,2단계 합산)
	자기소개서	학업실적	교사의견서	계		
배 점	40점	30점	30점	100점	100점	200점
선발 인원	3학년	15명 내외			15명 내외	10명 내외
	2학년	30명 내외			30명 내외	20명 내외

• 후보자(최종 선발 인원의 20% 이내)를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선정

• 심층면접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서류심사 총점 상위자(1순위), 자기소개서 실적 상위자(2순위), 학업실적 상위자(3순위), 교사의견서 실적 상위자(4순위) 우선 선발

4 계속장학생 지원

□ 성적기준

- 유학준비생 유형(국내장학생 : 고등학생) : 분기별 제출한 학업보고서를 고려하여 계속지원
- 유학생 유형(해외장학생 : 대학생)
 - (최소이수학점기준) 12학점(4과목) 이상
 - ※ 단, 대학에서 정한 최소이수학점기준이 12학점미만인 경우 해당 교칙을 따름(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또는 평점 3.0이상/4.5만점(2.9이상/4.3만점, 2.7이상/4.0만점)
 - 전 과목을 Pass/Fail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별 Pass/Fail이 총 이수단위 중 70%를 Pass한 경우 지원
 - I / II.1/II.2/III 유형 성적의 경우는 II.1(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 ※ 백분위 또는 평점 계산 가능 과목과 Pass/Fail 과목을 동일 학기에 수강한 경우 Pass/Fail 과목을 제외하고 백분위 또는 평점 계산
 - ※ 성적 산정 시 F학점 및 중도포기과목을 포함하여 계산
 - ※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 장학금 지원 제한기준

- (공통사항) 장학생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 장학생 자격이 박탈된 경우 기 지원장학금(학비 및 체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반납해야 함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 ②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③ 중복지원(등록금을 초과하여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환수

○ (유학준비생)

- 국내 대학에 지원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박탈
- 학업보고서 내용이 2회 이상 미비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 (유학생)

- 계속지원 성적기준 1회 미달 시 지원 중단가능, 누적 2회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영구 박탈
- 교환학생으로 국내대학에 오는 경우는 해당 학기 체재비 미지급



5 사업 관리

□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 등록금 :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 이용료

□ '16년 이전 유학준비생(구 I 유형) 장학생은 유학준비생(구 I 유형) 유형으로 선발된 당해연도의 기준에 따름

※ 단, 유학생(구 II 유형)으로 전환 된 장학생의 경우 체재비 지급(정액), 항공료 지원, 안전관리 지원은 소급 적용

Ⅲ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나.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다. 지원 실적 및 계획

- '09년부터 조성된 기부금으로 '10년부터 사랑드림장학사업 실시

(단위: 명, 백만 원)

연 도	기 부 자	인 원	금 액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기관	84	178
2011년	한국인삼공사 등 6개 기관	624	1,453
2012년	대한LPG협회 등 9개 기관	623	1,394
2013년	하나금융 등 14개 기관	917	1,933
2014년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892	1,795
2015년	넥슨코리아 등 15개 기관	996	2,038
2016년 1학기	대한LPG협회 등 13개 기관	426	913
합 계		4,562	9,704

- '16년 2학기에는 626명, 1,186백만 원 지원예정

라. 주요 역할

- 기부처: 장학금 재원 기부 + 장학생 선발 및 평가 참여(선택)
- 한국장학재단: 사업 총괄, 장학생 선발, 지원 및 관리 등 수행



2 '16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총괄

□ 신규 선발(270명, 380백만 원)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기부처	선발대상	심사기준		선발인원	장학금액	예산	지원기간
			공통	기부처맞춤형				
등록금	둔남장학금	동서울대학교 재학생	소득(50)+성적(50)	-	15	2	30	1개 학기 ('16.2학기)
생활비	한국가스공사	다문화 가정 (대학생)	소득(50)+성적(50)		80	1.5	120	2개 학기 ('16.2학기~'17.1학기)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	해당지역 교육청 추천 접수		100	0.8	80	1개 학기 ('16.2학기)
	KOSAF기부펀드	가정 외 보호출신	(1차) 소득(50)+성적(50)	(2차) 자기소개서(100)	50	2	100	2개 학기 ('16.2학기~'17.1학기)
	블리자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1차) 소득(50)+성적(50)+수상실적(5)	(2차) 자기소개서(100)	15	2	30	1개 학기 ('16.2학기)
	ETS TOEFL	영어활동실적이 있는 자	소득(50)+성적(50)	-	10	2	20	1개 학기 ('16.2학기)
계					270		380	

* 예산은 2016년 2학기 예산으로 작성, 소득 및 성적 점수표는 붙임1 참조

□ 계속 지원(356명, 806백만 원)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기부처	선발대상	계속지원기준	지원인원	장학금액	예산	잔여기간
등록금	KGC인삼공사	6년근 인삼경작인 자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13	3	39	1개 학기 ('16.2학기)
	구찌장학금	패션 계열 전공자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12학점 이상 이수	10	5	50	1개 학기 ('16.2학기)
	홈플러스	성적 우수 대학생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12학점 이상 이수	5	등록금전액	17.5	졸업시까지
	넥슨코리아	세월호 유가족	-	22	등록금전액	77	졸업시까지
생활비	한국화웨이	공학계열 전공자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12학점 이상 이수	9	2.5	22.5	1개 학기 ('16.2학기)
				10	2.5	25	3개 학기 ('16.2학기~'17.2학기)
	세계한인회장단	사회배려계층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12학점 이상 이수	12	2	24	1개 학기 ('16.2학기)
	대한LPG협회	택시기사 가정의 자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273	2	546	1개 학기 ('16.2학기)
한국투자공사	아동복지시설 출신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2	2.5	5	1개 학기 ('16.2학기)	
계				356		806	

* 예산은 2016년 2학기 예산으로 작성

□ 공통사항

-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선발관련 공통사항*은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표준업무 처리기준을 적용

* 중복지원 방지 및 장학금 반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단,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기부처별 선발계획에 따름

□ 장학생 선발 일정

업무내용	일정
업무처리기준 수립	'16. 6. 20.(월) ~ 21.(화)
대학 등 협조 요청	'16. 7. 1.(금)
선발 공고 및 홍보	'16. 7. 4.(월)
장학금 신청	'16. 7. 4.(월) ~ 15.(금) 18시까지
장학생 심사	'16. 7. 18.(월) ~ 8. 30.(화)
장학생 선정 및 지급	'16. 9. 2.(금)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기부처별 선발 기준

가. 둔남장학금

□ 추진배경

- 둔남(屯南)장학금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동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규모: 30백만 원(200만 원 × 15명 × 1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동서울대학교 재학생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등록금 범위 내)
- 지원기간: **1개 학기**(‘16년 2학기 지원)
- 평가기준: 가계소득(50) + 성적(50)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나. 한국가스공사(대학생)

□ 추진배경

- 한국가스공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규모: **240백만 원**(150만 원 × 80명 × 2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선발자격: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은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8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16년 2학기부터 ’17년 1학기까지 지원)
- 평가기준: 가계소득(50) + 성적(50)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 지역별 선발 인원

구분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선발인원
본사	대구광역시, 경산시	8
인천기지본부	인천광역시	8
평택기지본부	평택시, 화성시	7
통영기지본부	통영시, 창원시, 거제도	7
삼척기지본부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7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5
경기지역본부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5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5
강원지역본부	원주시, 춘천시, 정선군	5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5
전북지역본부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5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5
	제주시	3
합계		80

다. 한국가스공사(고등학생)

□ 추진배경

- 한국가스공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규모: 80백만 원(80만 원 × 100명 × 1회)
- 지원대상: 국내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자격: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지원인원: **100명**
 - 대구광역시(30명), 경상북도(70명)
- 지원내용: 학기당 **8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16년 2학기 지원)



□ 심사기준

- (교육청) 해당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지역별 배정인원 추천자 접수
- (재 단) 추천자 심사 후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 > 연장자

□ 지역별 미달시 처리기준

- 타 지역 교육(지원)청에 추가 추천 요청
 - * 전체 미선발자 대상으로 선발기준 및 심사기준 적용 선발

라. KOSAF기부펀드

□ 추진배경

-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기부금과 개인 비지정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가정 외 보호 출신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규모: **2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2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선발자격: 가정 외 보호시설의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대학생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16년 2학기부터 ’17년 1학기까지 지원)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50) + 성적(50), 2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 외부전문가(1인) 및 재단(2인), 총 3명

- 동점자 처리기준: 자기소개서 >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마. 블리자드

□ 추진배경

- 블리자드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저소득층 성적우수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규모: **30백만 원**(200만 원 × 15명 × 1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1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16년 2학기 지원)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50) + 성적(50) + 수상실적*(5), 5배수 선발
 - * 게임 및 IT 관련 **전국 단위 대회**의 수상실적(대학교 입학 이후에 한함)
 - (2차) 자기소개서(100): 기부처(2인) 및 재단(1인), 총 3명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바. ETS TOEFL

□ 추진배경

- ETS TOEFL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저소득층 성적우수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규모: **20백만 원**(200만 원 × 10명 × 1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선발자격: 영어활동실적이 있는 대학생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10명**
 - * 학교별 선발 비중은 전체 20%를 초과할 수 없음, 사랑드림(ETS TOEFL)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16년 2학기 지원)
- 평가기준: 가계소득(50) + 성적(50)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chapter | 2

우수학생
장학금

- I.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 II. 대통령과학장학금
- III.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 IV.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I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1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1 개요

가. 목적

-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나. 추진경과

- 2003. 1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신설
 -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2008. 1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07.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사업(이공계)’ 신설하고,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재단)
 -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 2009. 5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장학재단)
 -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이공계)
- 2013. 3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다.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라.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1-2 주요 사업 내용

가. 지원규모

- 지원 인원 및 예산: 10,775명, 총 607억 원

구분		예산	인원
신입생 신규 장학생	수시우수	97억 원	1,240명 내외
	수능우수		610명 내외
재학중우수자	2년 지원 유형	111억 원	1,900명 내외
	과학기술전문사관	2억 원	25명 내외
계속장학생		397억 원	7,000명 내외
계		607억 원	10,775명 내외

나.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신규장학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 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지원 금액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 등록금 인정범위는 선발 당시 연도의 기준을 따름
 - '08~'09년도 선발된 지역대학우수학생 장학생은 등록금의 50%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장학생은 반드시 1개월 내에 증명서를 제출(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대학이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은 생활비 지원 불가
- 교재비: '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1-3 신규 장학생 신청 및 선발

가. 신입생 신규 선발

□ 기본방향

- 입학 유형 별 선발 비율: 수시 67%, 수능 33%
 - ※ 201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14.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 ※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유형별(수시유형, 수능유형)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대통령과학장학금 시·도교육감 추천자(지역추천제) 중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특별 선발함(정원 외 선발)

□ 선발규모: 1,850명 내외

구 분	선발유형		합계
	수시우수	수능우수	
선발인원 (수도:비수도)	1,240명 내외 (372명:868명)	610명 내외 (183명:427명)	1,850명 내외 (555명:1,295명)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6년도에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로 입학(예정)한 자

- 입학대학 학과(부)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 동일 대학이지만 소재지를 달리할 경우 신청자의 해당 학과(부)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권역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수도권 이외 지역)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1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심화전공은 이공계열에 포함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신청제외 대상

- '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15.8.31 확정·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

□ 선발 세부내용

① 수시 우수 유형

○ 선발대상: '16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 배정기준: 최근 2년간('14~'15년) 수시입학생 중 고교 이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수시 입학생 수(평균) 등에 따라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이수 성적기준

구분	유형	기준	기준 이수단위 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등급 2등급 이내 과목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B학점 이상 과목	24단위 이상

- 적용 과목: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UP, AP포함)

교과명	과목명
수학	공통수학, 수학10-가, 수학10-나, 이산수학, 실용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확률과 통계, 수학의 활용,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과학	공통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물, 고급지구과학,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컴퓨터과학 I, 컴퓨터과학 II, 전자과학, 환경과학, 과학사,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현대과학과기술, 과학철학, 정보과학 I, 정보과학 II, 과제연구 I, 과제 연구 II, 원서강독, 워크숍, 기타

- 배정 산식

$$\text{배정인원} = (\text{대학별 수시입학생 수}^* / \text{모든 대학별 수시입학생 수}^*) \times \text{수시 우수유형 선발인원}$$

* 수시입학생 수: 최근 2년간('14~'15년) 이공계열 수시전형 입학생 중 수시우수유형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수(평균)

○ 선발방법: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이 선발하여 추천

- 이수 성적기준은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며, 장학생 선발은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 선발·추천

-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종사 예정인 자로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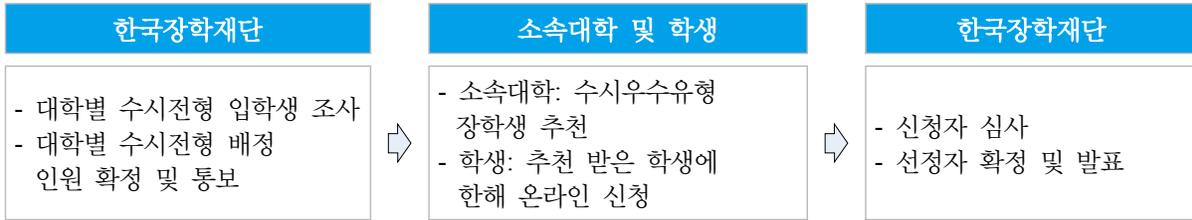
※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14.3, 경제관계장관회의)

- 9대 전략산업: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지능형 로봇, ⑦ 재난 안전 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 실감형 콘텐츠,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① 지능형 반도체, ② 빅데이터, ③ 융복합 소재,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 소프트웨어(SW) 분야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전공자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 중 8% 수준)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의 30% 수준)

○ 선발절차



② 수능 우수 유형

○ 선발대상: '16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신입생 중 '16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청자격: '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A·B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선발방법: 신청기준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 수학 A·B 유형을 통합하여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자 세부 선발기준

- (1)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수학 A/B형 및 과학탐구영역 2개 과목(평균)의 영역별 백분위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200점)
 - 예시: 수학 A/B형 백분위 100점, 과학탐구 1과목 98점, 2과목 95점인 경우 백분위 합산 $100 + \{(98+95)/2\} = 196.5$ 점(200점 만점)
- (2) 위 기준 (1)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영역별 백분위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300점)
 - 예시: 수학 A/B형 백분위 100점, 과학탐구 1과목 98점, 2과목 95점인 경우 백분위 합산 $100+98+95 = 293$ 점(300점 만점)
- (3) 위 기준 (2)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영역별 표준점수 합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예시: 수학 A/B형 표준점수 139점, 과학탐구 1과목 71점, 2과목 75점인 경우 표준 점수 합산 $139+71+75 = 285$ 점
- (4) 위 기준 (3)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학 A/B형 표준점수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 (5) 위 기준 (4)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과학탐구영역 2개 과목 표준점수 합산 점수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 (6) 위 기준 (5)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수학 A/B형 및 과학탐구영역 2개 과목(평균) 평균등급 우수자 순으로 선발
 - 예시: 수학 A/B형 1등급, 과학탐구 1과목(1등급), 2과목(2등급)인 경우 평균 등급은 $[1 + \{(1+2)/2\}]/2 = 1.25$ 등급
 - ※ 위 기준은 학생이 응시한 과목 및 유형(A·B형)의 성적을 적용함
 - ※ 비율 관계상 선발가능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사하며, 상기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 인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선발인원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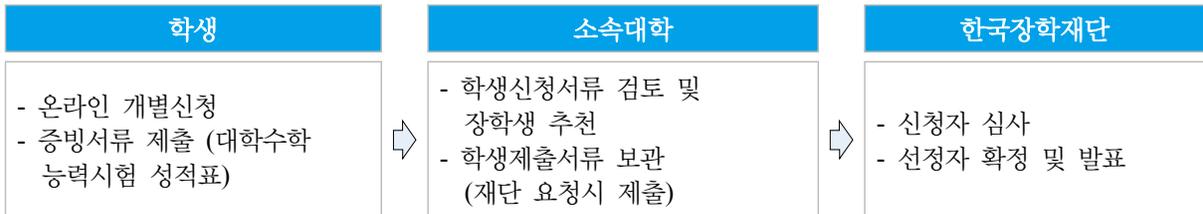


-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B형 응시자 위주로 선발
 ※ 수학 A형은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제한 선발(최대 10% 이내로 제한)

$$\text{수학 A형 최대 선발 가능 인원} = (\text{A형 응시 신청자/전체 신청자}) \times \text{수능 우수 선발 인원}$$

- 1순위 신청자의 선발 규모 미달, 세부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등에 따라 2순위 신청자 선발 가능

○ 선발절차



나. 재학중우수자 선발

□ 기본방향

-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유형별(2년지원 유형, 한 학기지원 유형)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 선발규모

구 분	유형		
	2년 지원	한 학기 지원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선발인원 (수도:비수도)	1,900명 내외 (570명:1,330명)	2,235명 내외 (670명:1,565명)	25명 내외

□ 선발 세부내용

① 2년 지원 유형

○ 선발대상

-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되지 않았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5년제 학과의 경우 5~6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 선발 제외 대상

- 1)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기 수혜자
 - 가. 2016년도 1학기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자격 유지자
 - 나. 2016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 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다. 2016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 단, 자퇴 후 동학교 또는 타 학교에 신입학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수혜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2)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非수혜자
 - 가. 2016년도 1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 나. 2016년도 1학기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
 - 다. 인문사회교육(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심화전공 제외) 계열 및 예체능·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간호학 및 보건학과와 이와 관련된 되는 학과) 관련 계열 학과(부) 재학생

- ※ '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15.8.31 확정·발표)
-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

○ 배정기준: '14년 신규 선발(수시, 수능) 이후 2년간 탈락자 수 및 '14년 신규선발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

- 배정산식

- 1차 배정: 대학별 '14년 신규 선발자(수시, 수능) 중 탈락인원
- 2차 배정: (대학별 '14년 신규 선발인원/14년 신규 선발 전체인원) × ('16년도 2년 지원 선발인원 - 1차 배정인원)

○ 선발방법: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추천

-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종사 예정인 자로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권고

※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14.3, 경제관계장관회의)

- 9대 전략산업: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지능형 로봇, ⑦ 재난 안전 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 실감형 콘텐츠,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① 지능형 반도체, ② 빅데이터, ③ 융복합 소재,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 소프트웨어(SW) 분야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전공자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 중 8% 수준)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의 30% 수준)

○ 선발기준: 직전 2년간(4개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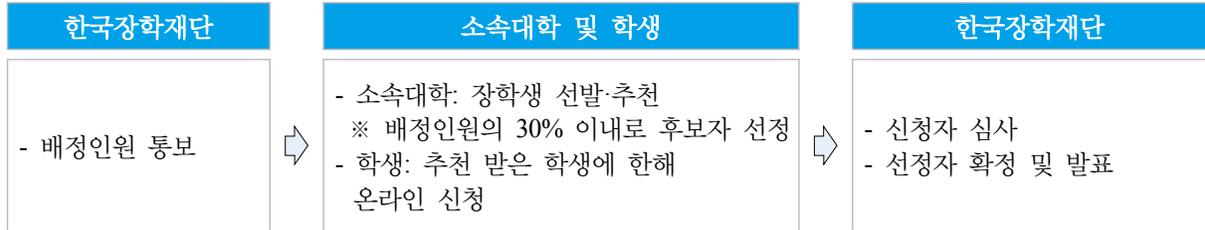
- 성적기준: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 종합 4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및 재수강을 포함



- 이수 학점기준(4개 학기):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 선발절차



- '16년도 신규 장학생 중 자격 박탈자(계속수혜기준 미충족, 포기 등) 발생 시 선정한 후보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 '16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 지원: 4년제(정규 3개 학기 지원), 5년제(정규 4개 학기 지원)

② 한 학기 지원 유형

- 선발규모: 국가우수장학사업(이공계)의 잔여예산 범위 내
 - 장학금 반환(학기 중 휴학 등), 지원 일시중단(성적미달, 휴학 등)으로 발생한 예산 활용
 - ※ 잔여예산 규모, 동점자 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선발대상

- 입학 당시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되지 않았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 제외 대상

1)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기 수혜자

- 가. 2016년도 2학기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자격 유지자
- 나. 2016년도 2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 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재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다. 2016년도 2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 단, 자퇴 후 동학교 또는 타 학교에 신입학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수혜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2)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비수혜자

- 가. 2016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 나. 2016년도 2학기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
- 다. 인문·사회·교육(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심화전공 제외) 계열 및 예체능·의약계열(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약학, 간호학 및 보건학과와 이와 관련되는 학과) 관련 계열 학과(부) 재학생

- ※ '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15.8.31 확정·발표)
-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

○ 배정기준: 장학금 반환(학기 중 휴학 등), 지원 일시중단(성적미달, 휴학 등) 발생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배정인원 산정

- 배정산식

$$\text{배정인원} = (\text{대학별 장학금 반환}^* \text{ 발생 인원} + \text{지원 일시중단 발생 인원}) / \text{반환 및 일시중단 전체인원} \times (\text{잔여예산} / \text{평균 등록금}^{**})$$

* 전액 반환한 건만 해당

** '16년도 1학기 계속장학생 평균등록금으로 산정

○ 선발방법: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중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추천

-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중사 예정인 자로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권고

※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14.3, 경제관계장관회의)

- 9대 전략산업: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지능형 로봇, ⑦ 재난 안전 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 실감형 콘텐츠,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① 지능형 반도체, ② 빅데이터, ③ 융복합 소재,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 소프트웨어(SW) 분야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전공자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 중 8% 수준)

-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의 30% 수준)

○ 선발기준('16년도 정규 1학기)

- 성적기준: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3.5이상/4.5만점 기준(3.3이상/4.3만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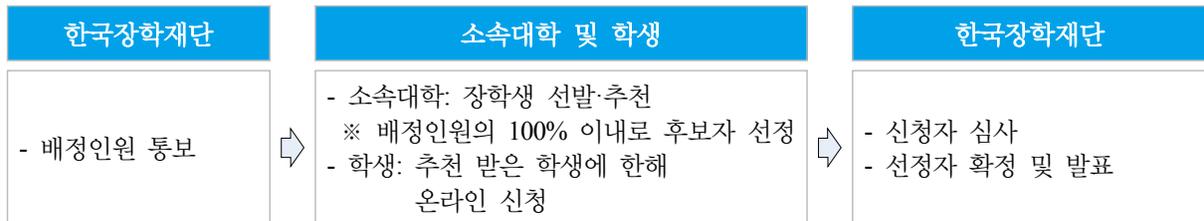
※ 휴학, Pass/Fail 과목 이수 등의 사유로 '16년도 1학기 성적 미산출 학생은 제외

※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

-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선발절차



○ 1차 선발 후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후보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선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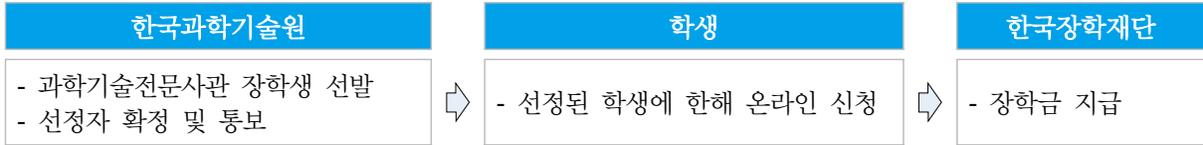
③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목적: “교육-군복무-창업”을 연계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장학금 지원



○ 지원규모: 25명 내외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자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전문역량개발비(학기 당 25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까지 지원(정규 4학기)

○ 장학생 관리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기준 준용
 - ※ 기존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혜 대상자는 중간평가(2+2) 제외
 -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계속지원 기준(성적 및 최소이수학점 기준) 적용
 - ※ 성적기준 미달 학기 누적 2회 발생 시 장학생 자격 박탈
-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기 수혜자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장학금”으로 전환·관리

○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의 복무기간은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

1-4 계속장학생 지원

가.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및 대학추천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대학은 학생의 학사정보를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 입력

- 평균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 백분위 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예) 백분위 점수 86.9인 경우 86으로 처리(성적기준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재수강 과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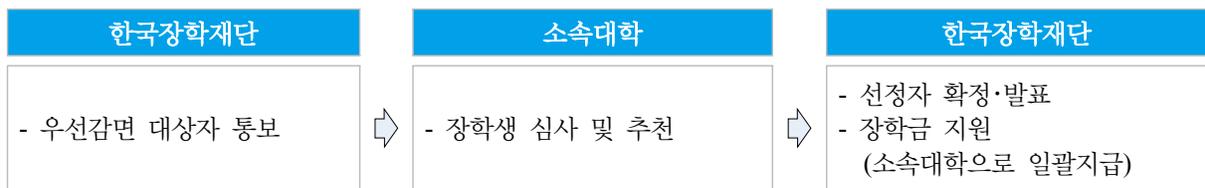
-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07년까지 선발된 저소득층 장학생: 직전학기 평균평점 3.25이상/4.5만점(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적용

○ 최소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 추천절차



나. 장학생 중간평가(2+2)

□ 평가대상: '08년도 이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의 1/2에 해당하면 중간평가대상자로 간주
- ※ 기존 장학생이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으로 진입한 경우는 평가대상 제외

□ 평가기준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중간평가(2+2)는 나머지 2년 동안 장학생 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 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을 충족해야 함

※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후 3~4학년 지원 장학생으로 재선발 시에는 신청인 동의서 온라인 동의 의무화

○ 추가평가기준

- '09년도 이후 선발장학생: 이공계 대학원 진학 및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
- '10년도 이후 선발장학생: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충족해야 함



1-5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가. 장학금 지급 절차 및 방법

□ 지급 절차

-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지급(단, 지급횟수는 학기당 2회에 한함)
 - ※ 장학금 확정 및 지급(재단) → 장학금 확인 및 지급(대학) → 장학생 수령
 - ※ 대학은 학기당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지급 방법 및 처리 방안

- 등록금 우선 감면
 - 계속지원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장학금 수혜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 독려
- 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가능하도록 검토
- 장학금 지급 시, 재단 내 대출금 및 장학금(예: 국가장학금 I 유형 등)이 있는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처리 후 대학 지급
 - ※ 대출 및 장학금 상환/반환금, 대학 지급액은 재단의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이공계 지역대('08~'09년 선발)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이연 가능
 - ※ 생활비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 반환
 - ※ 단, 불가피한 경우(해당 학생과 연락 두절 등)에는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여부 결정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 (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나. 학적변동 등 조치 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 소속대학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하고 장학재단으로 통보

□ 전공 변경

- 소속 대학(교) 변경은 불가하나, 전공학과(부)는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편입 등 소속 학교(캠퍼스 간 이동 포함)의 변경은 인정 불가
 - 전공 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지원중단
 - 중간평가(2+2) 전에 소속학과의 학제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학제를 적용하고, 중간평가(2+2) 후 학제가 변경되는 경우 중간평가(2+2)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대학 조치사항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으로 입력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단으로 통보

□ 교환학생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 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단,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제외)을 충족해야 함
 -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이후 성적산출이 되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관련 산·학·연의 인턴십만 인정)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으로 입력
- 2010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부터 적용

□ 초과학기

-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제외
 -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제외)을 충족해야 함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Fail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Fail 등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할 경우 학사원장에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입력
 - ※ 본래 성적이 계속지원기준 통과 시 지원 가능(대학: 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
 - ※ 해당 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대학)

다.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박탈

- ①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3회 시
- ② 입학 이후 2년(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 ③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④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⑤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 ⑥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 ⑦ 전공 변경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장학금 반환 및 자격박탈**: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수혜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 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에 공문으로 통보)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한국장학재단 공문 접수 후 수혜 포기 취소 불가

1-6 기 타

가.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개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11.6월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의무종사: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함

- 대상: '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 의무종사일 산정

$$\text{총 의무종사 기간} = \text{장학금 지급횟수} \times 6(\text{개월}) \times 30(\text{일})$$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의무종사 인정분야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 국가과학기술 장학생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2회 (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 단, 비 이공계 분야 대학(원)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예정 확인서 제출)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학금 환수

- 환수 대상자 지정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
 -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장학생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frac{\text{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text{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frac{\text{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text{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times \frac{\text{남은 의무종사일}^*}{\text{총 의무종사일}}$$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 환수방법: 환수 대상자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 약정서 제출

-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함
-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자 지정
-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아래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장학금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 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을 신청은 가능하나 타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시 수혜가능



□ 중복 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 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7 사업 추진 흐름도

가. 신입생 대상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신규장학생 신청안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장학재단
대학신청	○ 대학별 수시전형 입학생 제출(대학신청) ○ 대학별 수시우수유형 배정인원 통보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선발 및 신청·접수 (수시우수유형)	○ 수시우수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 선발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온라인 인증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학생
선정 및 통보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수시우수전형 장학생 선정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지원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신청·접수 (수능우수유형)	○ 수능우수유형 온라인 신청 ○ 소속대학으로 증빙서류 제출	학생
선정평가	○ 온라인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확인 ○ 온라인 인증 및 추천 (학생 신청서류 요청 시 제출)	소속대학
선정 및 통보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수능우수전형 장학생 선정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지 원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결과보고	○ 선정인원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나. 재학생 대상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신규장학생 신청안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장학재단
배정인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배정인원 통보 	한국장학재단
선발 및 신청·접수 (재학중우수자 (2원지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 선발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온라인 인증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학생
선정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장학생 선정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선발 및 신청·접수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선발 및 통보 ○ 선발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온라인 인증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소속대학 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배정인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 배정인원 통보 ※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향후 2차 배정인원 통보 	한국장학재단
선발 및 신청·접수 (재학중우수자 (한 학기지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 장학생 선발(소속대학) ○ 선발대상자 온라인 신청(학생)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온라인 인증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학생
선정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내역 확인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 장학생 선정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장학금 개별 지급 (소속대학→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인원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다. 계속장학생 지원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장학생 신청안내(학생·대학)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장학재단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한국장학재단
우선감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소속대학
신청·접수 (2+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중간평가(2+2)유형 해당 장학생의 장학금 온라인 신청 	2+2 유형 심사 대상자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심사 ○ 대학 추천 	소속대학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지원 결과 제출(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및 반납 학적변동 등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소속대학



2 인문100년 장학금

2-1 개요

가. 목적

-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 우수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로의 성장 도모
- 고교-대학교-대학원을 연계한 지원으로 인문학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및 석·박사로 진출할 우수인력 확보

나. 추진경과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분 대책('07.7월)의 일환으로 '지방인문계장학생 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 신설('08)
- 한국장학재단 출범('09.5.7)에 따라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09)
 - ※ 대통령과학장학금사업, 국가장학금(이공계)사업,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사업,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사업

다.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라. 지원규모

- 지원 인원 및 예산 : 2,400명 내외, 130억원 지원
 - * 신규장학생 500명, 계속장학생 1,900명

마. 추진체계

- 교육부 :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의 총괄적인 사항 관장
- 한국장학재단 :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및 장학생의 선발·지원·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운영·집행 및 장학생의 추천·지급·결과 보고 등 수행

바. 업무흐름도



2-2 인문100년장학금 세부내용

가. 지원 개요

□ 지원인원 및 예산 : 2,400명 내외, 130억원 지원

○ 신규장학생 500명 내외, 계속장학생 1,900명 내외 지원

구분	예산	인원
신규장학생	28억*	500명 내외(고교생 50명 포함)
계속장학생(재학중우수자 포함)	102억	1,900명 내외
계	130억	2,400명 내외

* '15학년도 고교생 선발자 예산포함(고교생 선발자는 대학 입학 이후부터 장학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대학생** :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
 -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조기 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 재입학 및 편입학은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 지급횟수는 성적미달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
 - 재학중우수자는 선발 해당학기 1회만 지원
- **고등학생** : '16년 전공탐색유형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은 '17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지원 (입학확정 후 국내 대학 최종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 ※ 대학 입학이후에는 계속장학생에 해당되는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 '16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D등급·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지원 제외('15.8.31. 확정발표)

○ 지원금액

- **장학금** :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 '14년 이전 선발자 중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 분만 지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학업장려비** : 학업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학기당 300만원 추가 지원(2015년 이후 선발자)
 - * 진도보고서(학생 작성) 및 교수평가서로 매학기 대학에서 평가(단, 선발학기 학업장려비는 전원 지급, 2학기부터 대학의 학생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 대학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정부 50% + 대학 50% 지원)

나. 신규 선발

□ 선발규모 : 500명 내외

구 분	선발유형		계
	전공탐색유형	전공확립유형	
고교생	50명	-	50명
대학생	50명	400명	450명
계	100명 내외	400명 내외	500명 내외

- (선발인원)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전공확립유형 선발규모는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 단, 전공탐색유형의 '15학년도 선발한 고교 3학년 중 대학 미진학인원은 '16년도 대학1학년으로 추가 선발
- (지역별 선발비율) 수도권 : 비수도권 = 40% : 60%('15년 재학생수 비율 및 국회 등 의견반영)
 - 전공탐색유형 대학생만 적용, 고교 3학년 선발은 지역별 선발비율 배제
- (계열별 선발비율) 인문계열 : 사회·교육 등 계열 = 50% : 50%
 - 고교 3학년은 장학금 신청·선발 시 계열(분야)로 구분하여 선발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선발유형별(전공탐색유형, 전공확립 유형)로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격

- 인문사회계는 인문·사회·교육계열을 의미하며, 인문학 및 기초학문 전공자 위주로 선발
 - 계열은 '1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구 분	자 격	비 고
고교생	'16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고교생 (교육부 비인가 고등학교 제외) - '17년 2월 졸업예정자로, '17년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진학 예정인 자(조기졸업으로 '17년 국내 4년제 대학 진학 예정자도 선발 가능)	인문사회계열 대학 진학 후 장학금 지원
대학생	'16년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의 - (전공탐색유형) 입학자 중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신입생 - (전공확립유형) 3학년 진급자 중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생 포함)	

- 입학대학 학과(부)의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기타 지역)으로 구분(동일 대학의 경우에도 본교 및 분교 등으로 구분되어 소재지를 달리할 경우 신청자의 해당 학과(부)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권역 구분)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지원/일부지원) 선발 제외
- 아래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선발하여,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지원
 - ※ 등록금은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하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 학업장려비만 지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계열의 경우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예체능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등 이공계 심화전공 학과(부) 제외

□ 선발방법

- **전공탐색유형** : 서류심사(1단계) → 심층면접(2단계)을 실시하여 인문사회분야에서의 목표의식 및 성장가능성 평가
 - ※ '16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D등급·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 ('15.8.31. 확정·발표)
 - ※ 단, '15년 전공탐색(고등학교) 선발자의 경우 선발된 당해연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입학시 지원제외
- **신청분야** : 인문계열(어문학/역사철학 등), 사회계열, 교육계열 등 3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 계열별(인문/사회·교육 등) 선발비율 〉

구분	인문계열	사회·교육 계열 등	계
선발비율	50%	50%	100%
선발인원	50명 내외	50명 내외	100명 내외

- 인문 및 사회계열 외 학과는 「교육계열 등」에 포함
- 신청자가 선택한 신청분야는 신청완료 후 변경 불가하며, 심사시 제출서류와 신청분야가 무관할 경우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단계별 심사내용** : 신청분야별로 구분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심층면접 상위 우수자 순으로 최종 선발

구분	서류심사 (1단계)				심층면접 (2단계)
	학교장/총장 추천서	전공관련 활동실적	학업계획	계	
배 점	10%	40%	50%	100%	100점
선발인원	200명 내외				100명 내외

- 학교(고교, 대학교)별로 추천된 인원내 한해 서류심사 실시 (고교 최대 2명, 대학 최대 5명 추천)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심층면접 실시(최종선발인원의 2배 내외)
- 심층면접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서류심사 점수 상위자(1순위), 학업계획 실적 상위자(2순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상위자(3순위), 학교장/총장 추천서 실적상위자(4순위) 우선 선발 (서류면접 동점자는 전원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
- '16년 전공탐색유형 선발자 중 영구탈락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 선발한 장학생 후보자(후보자 수는 선발인원의 20% 내외) 중에서 심사 우수자 순으로 추가(대체)선발

- 선정절차

서류심사	심층면접
(심사기준) 전공 관련 활동실적, 학업계획서, 학교장/총장추천서 심사 (선발인원) 최종선발 인원의 2배수 내외	(심사기준) 역량, 목표의식, 성장가능성 등 인문 사회 분야 우수성 심사 (선발인원) 100명 내외(고교생, 대학생 각 50명 내외)

- **전공확립유형** : 지원대학은 격년제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므로, 올해에는 지난해('15년) 「대학인재육성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한함

〈 계열별(인문/사회·교육 등) 선발비율 〉

구 분	인문계열	사회·교육 계열 등	계
선발비율	50%	50%	100%
선발인원	200명 내외	200명 내외	400명 내외

- **인원배정** : '15년 대학별 인재육성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16년 배정인원 적용
 -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 평가에 따른 배정인원은 2년간 유지('16년 배정인원은 '15년 배정인원을 동일하게 적용, '17년 평가 시에는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 계획 대비 실적 반영 예정)
 - '16년 대학배정 시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
 - 미 평가 연도('16년)에 예산 (추가)배정 시, '15년도 지역별 선발비율 및 대학별 배정비율 결과를 적용
 - '16년 전공확립유형 신규장학생 중 영구탈락(자퇴, 성적기준 미충족, 자격 포기 등) 발생 시, 기 선발한 전공확립유형 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추가(대체) 선발 지원(후보자 수는 배정인원의 20% 내외)
 - 대체 또는 추가 선발자의 지원기간은 영구탈락자의 잔여학기(최대 3개 학기, 5년제의 경우 5개 학기) 내에서 지원
- **장학생 선발** :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해당 대학은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추천(매년 선발)
 - 전공확립유형 전체 선발규모는 예산을 반영하여 변동 가능
 - (자체선발기준 가이드라인) 성적기준 외 대상자의 우수성, 자질, 성장가능성, 학문에 대한 열정, 학업계획서('16년 이후 선발자는 필수제출) 등을 평가하여 선발(자기소개서, 전공 관련 활동 실적, 교수추천서등 활용, 성적만으로 평가시 선발인원 배정에 낮은 점수 부여 예정)

○ 재학중우수자 선발

- **선발대상** : 입학 당시 인문100년장학생으로 非선정된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우수 학생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



- 인문학 및 기초학문 전공자 중심으로 선발
- **선발규모** : 인문100년장학금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 장학생의 휴학, 반환 및 성적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전공확립 유형 인재육성계획 평가 시 우수 대학에 추가 지원
- **배정기준** : '15년 인재육성계획 평가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전공확립유형 대학별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 배정·선발
 - 평가대학 중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최종 평가점수 상위 30% 대학 내외 (우수 대학 수는 잔여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대학별 배정인원 산식

$$\text{배정인원} = (\text{지역별}) \text{ 우수 대학별 평가점수}^* \text{ 비율} \times (\text{선발가능 인원}^{**} \times \text{지역별 선발비율}^{***})$$

* '15년 (지역별) 우수 대학별 총 평가점수 대비 (지역별) 우수 대학별 평가점수

** 총 잔여예산/평균등록금('16년 1학기 계속장학생 평균등록금)

*** '15년 대학배정 당시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 : 비수도권= 30% : 70%) 적용

- **선발방법** : 배정인원 범위내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우수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추천
-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학업장려비 지원 없음

다. 계속장학생 관리

□ '15년 이후 선발자 지원기준

- **전공탐색유형 선발자('15년) 지원기준** : '15년 전공탐색유형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은 '16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원(입학 확정 후 국내 대학 최종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별도공지)
 - 대학 입학이후부터는 계속장학생에 해당되는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15년 전공탐색(고등학교) 선발자의 경우 선발된 당해연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은 입학시 지원 제외
- **계속지원기준**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수학점 기준)
 - ※ 성적 및 학점기준 모두 충족 시 계속 지원
- **중간평가(2+2)** : 3학년 진급 장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2년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의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잔여 2년간 계속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성적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성적*이 종합평균 백분위 87점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이수학점 : 직전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충족

- 중간평가서 평가 기준 : 직전 2년간(1~2학년)의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하여 추천

- 5년제는 5개 학기, 4학기제는 8개 학기 평가
- 평가내용 :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 사회공헌활동(20%) + 기타 활동(10%) + 향후 계획(30%)
- 중간평가(2+2) 기준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14년 이후 선발자 지원기준

○ 계속지원기준

- 성적 :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수학점 기준)
- ※ 성적 및 학점기준 모두 충족 시 계속 지원

○ 중간평가(2+2) : 3학년 진급 장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2년간 성적과 이수학점이 중간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잔여 2년간 계속 지원

- 성적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성적*이 종합평균 백분위 87점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이수학점('10년도 이후 선발자) : 직전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 이수학점의 40% 이상 충족
- ※ 5년제는 5개 학기, 4학기제는 8개 학기 평가
- ※ 중간평가(2+2) 기준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공통) 장학금 지원 제한기준

-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다음 학기 1회 지원 중단
- 누적 2회 시는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전공확립유형 선발자 및 중간평가 이후 성적미달 1회시 장학생자격 박탈
- 자격박탈(상실) 및 반환 사유 발생 시, 해당 학생은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고, 기 지급된 전체학기 또는 해당학기의 장학금을 반환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동일계열 분야내에서는 전공학과(부) 1회 변경 가능



라. 사업 관리

□ 대학 준비사항

- 전공확립유형 장학생 선발을 위한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는 2년마다 평가, 우수학생 선발은 매년 선발
- 학업계획서 이행 여부 평가* 등을 통해 재학 중 장학생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실시
 - * 진도보고서(학생 작성) 및 교수평가서로 매학기 대학에서 평가하여, 학업장려비 지원 대상자를 재단에 추천
- 대학은 장학금 지원 외 장학생의 실질적 관리방안* 수립하여 석·박사 진출 등 학문 후속세대 양성
 - * (예시) 개인별 지도교수 멘토링, 대학 내 HK/BK21 참여기회 제공 등

□ 석·박사 진학 시 연계 장려(‘15년 이후 선발자)

- 전공탐색유형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으로 우선 선발하여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지원(재단)
- 전공확립유형 : 대학별 BK21플러스, 인문한국지원사업(HK), 자체지원계획과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여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지원(대학)
 - ※ 대학원 진학 시 지원금액 등 대학별 연계방안은 전공확립유형 선발인원 배정 시 평가

□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단, 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계약학과 계속장학생(‘14년 이전 선발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지원
 - ※ ‘15년부터 계약학과 학생은 선발 제외
- 아래 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선발하여,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지원(등록금은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하며,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 경우 학업장려비만 지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사후 관리

- 전공확립유형 선발 후, 당초 제출한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에 따른 지원액의 부당 사용 시 부당금액 전액 환수(실태 점검 시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 준수 여부 확인 예정)
- '17년 ‘우수학생 선발 신청서’ 평가 시 이전 신청서 준수 결과 반영 예정

□ 기 타

- 영예성 강화를 위해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교육부 장관 명의)
- 장학생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환원과 나눔 정신 준수
- 대학의 운영실적(성과) 평가와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우수학생 신청서 평가, 부당 집행 조치,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별도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구성·운영



3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가. 목적

-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창조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 예술체육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창의적인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핵심 리더로 육성될 수 있는 우수 인재 발굴

나. 추진경과

- ('13. 10월) 국정감사에서 예체능계 우수장학금 지원 필요성 제기
- ('14. 8 ~ '15. 3월)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4회), 대학생 간담회(1회), 대학 관계자회의(3회), 국회 예체능계 전문가 간담회(1회)
- ('15. 6월) 예술체육비전장학금(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신설

다.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라.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 280명 내외, 22.4억 원
 - 신규장학생 140명 내외, 계속장학생 140명 내외 지원

마. 추진체계

- (교육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의 총괄적인 사항 관장
- (한국장학재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 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장학금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바. 업무흐름도



사. 신규 장학생 선발

- (선발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 (선발시기) 2016. 3월 ~ 6월
- (선발분야) 계열(음악·미술/체육·공연예술)과 분야(이론·연구/실기·창작)를 조합하여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발

[선발 유형]

선발분야 \ 선발계열	음악·미술	체육·공연예술
이론·연구분야	I유형 (예:음악학과, 미술이론학과 등)	I유형 (예:스포츠경영학과, 영상이론과 등)
실기·창작분야	II유형 (예:피아노과, 회화과 등)	II유형 (예:무용학과, 연극영화학과 등)

※ 유형별(음악·미술 I/II, 체육·공연예술 I/II)로 선발인원(140명)의 40% 이내 선발



- (선발절차) 학생신청 → 「대학별 추천가능인원 배정 → 대학 추천 → 선발(선발위원회 → 총괄 선발위원회)」 절차로 진행
- (구간설정) 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대학(본/분교 구분)의 학생 규모별 4개구간으로 그룹화하고 구간을 설정

[대학별 추천가능인원 배정 산식(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정)]

$$(구간별) \text{ 대학별 추천가능인원} = (구간별) \text{ 추천가능인원}^* / (구간별) \text{ 신청한 대학 수}$$

$$*(구간별) \text{ 추천가능인원} = (구간별) \text{ 재학생비율}(\%) \times \text{총 추천가능인원}(700 \text{명 내외})$$

[대학별 추천가능인원 배정 설명(예시)]

※ 구간설정: 각 구간은 재학생비율(각 25%, ±1%내외)에 따른 학생 규모별 4개구간으로 그룹화하여 설정

구분 \ 학생규모 (구간)	학생규모 (구간)				계
	①1,020명미만	②1,020이상 ~1630명미만	③1,630명이상 ~2,400명미만	④2,400명 이상	
재학생비율(%)	25.9	25.0	24.5	24.6	100
추천가능인원(명)	181	175	172	172	700
신청가능 대학 수*	66	27	17	11	121

* 구간별 신청 가능한 (학생신청 소속)대학 수로서 구간별 학생 신청결과에 따라 최종 대학별 인원 배정

※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예체능계열 재학생 수 자료 활용('15년 재학생 수)

☞ '1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르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계약학과와 '16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D등급-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15.8.31. 확정·발표)

- (배정인원) 학생 신청 소속대학에 추천 가능한 인원 배정(선발인원의 5배수 내외)
- (추천) 대학이 학생의 학업의지와 사회공헌 가능성을 검증하여, 지원신청서와 함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장학생 후보를 추천
- (선발) 학회, 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선발(위원회는 추천인원을 고려)

< 제출자료 및 내용 >

구분	학 생	지도교수(학과장)	대 학
제출 자료	전공관련 활동실적서(①) 및 계획서(②)	지도교수 추천서(③)	대학신청서 (①~④을 첨부)
내용	전공 관련 성과,향후 계획 및 장래 진로 등	학생의 우수성을 증명할 자료를 바탕으로,학생의 성장가능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천 사유	대학의 예체능계 우수인재 지원·관리계획, 인재육성 성과도출 계획, 추천 장학생 후보자 순위(④)

- (심사방법) 서류심사(1단계) → 심층면접(2단계)을 통해 목표의식, 성장가능성 등을 심사 후 총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구 분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심층면접)	3단계 (총괄 선발위원회)
	학생역량	대학 지원계획	계		
배점	80점	20점	100점	100점	
선정인원	280명 내외(2배수)			168명 내외(1.2배수) 선발	(총괄 선발위원회) 최종 140명 내외 확정
심사방법	정성평가(선발위원회)			정성평가(선발위원회)	

- ※ 영구탈락자 발생 시, 계열 및 분야별 장학생 후보자 중 심사 우수자 순으로 추가(대체) 선발
- ※ 추가(대체) 선발자의 지원기간은 영구탈락자의 잔여학기(최대 3개 학기) 내 지원

- (서류심사) 학생역량부문(80%)* 과 대학지원부문(20%)** 심사 후 합산

* 전공 관련 활동실적서(30%), 계획서(40%), 지도교수추천서(10%)

** 장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의지, 참여도,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의 우수성 등

- (심층면접) 역량, 목표의식, 성장가능성 등을 심층면접

- (심사원칙) 심사위원 구성 시 신청자와 이해관계자 배제, 심사의견 공개

아. 지원내용

- 지원기간: 선정 후 해당학기부터 2년간 지원(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

□ 지원금액

- (장학금)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학업장려비) 우수 장학생에게 학업장려비 지원(잔여예산 발생시, 최대 150만원 이내)

※ '16년의 경우 2학기 장학금 지급 후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지급 예정

※ 학업장려비 지원기준: 잔여예산에 따라 계열 및 분야 심사우수자(순위별) 순 지원

지원산식 : 잔여예산(원) / 학업장려비(1인당 150만원 이내) = 학업장려비 지원인원(명)

※ 심사우수자(순위별) 순으로 1인당 15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지원함

※ 학업장려비 지원 후 추가 잔여예산 발생 시, 차 순위자에게 학업장려비를 지원함(단, 잔여예산이 1인당 100만원이상의 학업장려비 지원이 가능 시)



자. 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기준)** 직전학기 성적기준 충족자[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를 대상으로 지원(성적기준이 1회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 **(진도보고)** 장학생은 4학년 진급 시,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의견과 함께 이행(진도)보고서를 제출
 - ※ 진도보고서 제출은 2016년도 신규 장학생부터 적용(계속지원여부 판단)
- **(장학증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통해 교육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
- **(자격상실 및 반환)** 자격박탈(상실) 및 반환 사유 발생 시, 해당 학생은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고, 기 지급된 전체학기 또는 해당학기의 장학금을 반환

차. 사업 관리

-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 지원 불가
- **(전문가 회의)** 예술체육비전장학사업 활성화 및 심사·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운영
- **(관리 방안)** 대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장학생 지원관리 계획 중 대학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확산
- **(성과 관리)** 대학지원부문 평가시 이전 학년도 대학지원 실적 및 장학생 관리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

Ⅱ | 대통령과학장학금

1 개요

가. 목적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나. 추진경과

- **2003. 1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02.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신설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2008. 1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07.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 사업(이공계)’ 신설하고,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과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 **2009. 5월**: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 관리(한국장학재단)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2013. 3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다.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라.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 보고 등 수행

2 주요 사업 내용

가. 지원규모

- 지원 인원 및 예산: 502명 내외, 총 59억원

구 분		예 산	인 원
신규 장학생	국내	14억원	120명 내외
	지역추천	2억원	17명 이내
	해외	6억원	10명 이내
계속장학생		37억원	355명 내외
계		59억원	502명 내외

나. 지원내용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 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지원금액

○ 국내장학생

- 학비: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인정범위는 선발 당시 연도의 기준을 따름

☞ '03~'08년도 선발된 장학생은 학기당 500만원 지원(단, 등록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등록금 초과 금액도 지원)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학업장려비만 지급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 지원기준: 1) 직전학기 취득성적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2) 사회봉사활동 연30시간 의무 이행(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 참여 시 인정)해야 하며, 미 이행시 다음연도 학업장려비 미지급('16년 국내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해외장학생: 연간 최대 미화 5만\$ 이내(학비, 체재비)
 - 학비: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 체제비: 연간 최대 미화 2만\$
 - 출국항공료: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별도 1회 실비 지원
 - ※ 이코노미 기준, 편도만 지원

3 신규 장학생 신청 및 선발

□ 선발 규모: '16년도 신입생 대상 147명 내외

구 분	선발유형			합계
	국내	지역추천	해외	
선발인원	120명	17명	10명	147명

□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6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1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교육계열은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심화전공 포함
-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등록금이 무료인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학업장려비만 지원
- '16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포함)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은 선발 제외('15.8.31 확정·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학업장려비만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탈북대학생 등은 선발 가능(등록금 범위에서 학생 부담분만 지원)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유형별 신청 자격 요건

- 국내·해외장학생: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수학년 수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고교 유형	기 준		
		성적(석차)	과목수	이수단위
석차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또는*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 고교 1학년~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목의 성적 기준 총 과목수가 10과목 이상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함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교육부 비 인가학교 및 외국계학교는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적용과목: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수학 및 과학 관련과목(UP/AP포함)

☞ UP 등 과목 성적 기준: A 이상 (성적확인은 장학재단에서 실시)

☞ AP과목은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과목만 인정되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성적 기준 다름(예시: 일반고는 석차 3등급 이내), 시험인증식 AP는 인정 안 됨

- 지역추천제: 시·도교육감 관할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동지역 내의 이공계 대학 입학 예정자로 추천을 받은 자(2인)

•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7인을 최종 선발(서류 심사는 면제하고 심층면접만 실시)

※ 지역추천제 제외 대학: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 지역 내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인근 광역시 대학진학자 추천 가능

※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지역추천제 학생 중 미 선발된 학생은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

□ 선발 기준 및 방법

○ 신청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 본인 분야와 무관한 분야를 신청한 경우 탈락 사유될 수 있으니 가장 연관된 분야 신청 요망

○ 선발기준: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 선발방법: 서류심사(1단계) → 인·적성 검사* → 심층면접(2단계)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심층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심층면접 대상자는 반드시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함)

- 단계별 심사내용: 신청분야별로 구분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서류 및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

구분	서류심사 (1단계)				심층면접 (2단계)	최종선발 (1,2단계 합산)
	학업 성적	과학활동 실적	학업 계획	계		
배점	30점	40점	30점	100 점	100 점	200점
국내 장학생	일반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좌동	120명 내외
	지역추천제	서류심사 면제			34명 이내	17명 이내
해외장학생	최종선발인원의 1.5배 내외			좌동	10명 이내	

※ 연구 및 논문실적은 과학활동실적에서 제외(단, 연구 및 논문을 활용한 수상실적은 인정)

※ 심층면접 대상자 중 신청분야별 종합심사 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서류심사(1단계)를 통해 심층면접(2단계) 대상자를 선발하며, 심층면접 대상자 선발규모는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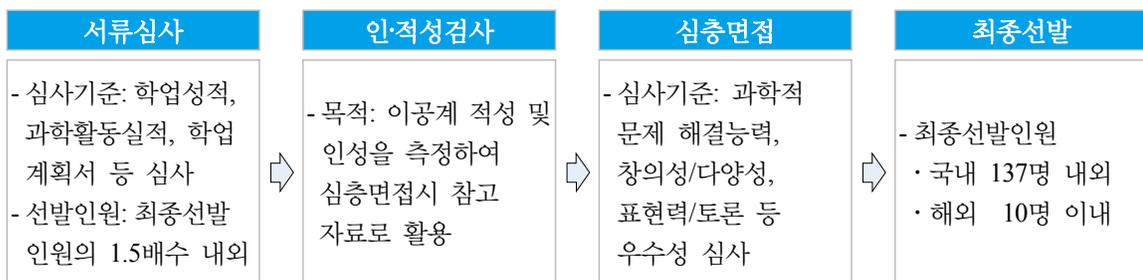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학업성적 우수자 순으로 서류심사(1단계) 인원 조정 가능

※ 동점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면접 인적성점수 상위자(2순위),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전공자(3순위), 서류 심사 성적 우수자(4순위), 심층면접심사 성적 우수자(5순위) 우선선발

*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14.3, 경제관계장관회의)

- 9대 전략산업: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맞춤형 웰니스케어,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지능형 로봇, ⑦ 재난 안전 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 실감형 콘텐츠,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① 지능형 반도체, ② 빅데이터, ③ 융복합 소재,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 선발절차



○ 선발시기: 2월 ~ 6월 중



4 계속장학생 지원

가.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성적 산출
- 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단, 졸업학기일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 ※ 2012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 상기 계속지원 기준 적용
 - ※ 2011년도 2학기 이전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 적용
 - ※ 국내 3학기제 대학의 경우 직전학기 8학점 이상 이수자
 - ※ 해외장학생 및 교환학생은 최소이수학점 제한 기준 없음
 - ※ 상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 ☞ Pass/Fail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별 Pass/Fail 총 이수단위 중 80%를 Pass할 경우 지원
 - ☞ I/II.1/II.2/III 유형 성적의 경우: II.1(60점) 이상일 경우 지원

5 장학금 지원 및 관리 기준

가. 장학금 지급 방법

□ 국내장학생

- 장학금*: 학기별로 소속대학으로 지급(등록금우선감면처리 요망)
 - * 장학금은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만 해당
 - ※ 별도의 학생 신청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
 - ※ 신규 장학생의 경우 심사 절차로 인하여 두 번째 학기부터 등록금 우선 감면 처리되어 지급
 - ※ 등록금우선감면처리가 어려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과 반드시 협의 요망

□ 해외장학생

- 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신청
 - ※ 매학기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기에 장학금 신청 후, 개인별 지급
- 제출서류: ‘진도보고서’[붙임5], ‘성적표 원본’, ‘등록금 고지서’ 온라인 제출 후 이를 검토하여 계속관리기준 충족 시 지급
 - ※ 3학기제를 적용하는 해외대학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지급
 - ※ 성적미달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진도보고서 및 성적표 필수 제출

□ 기타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장학금 이연 불가)
- 장학금 수령 후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전액 반환
- 장학생 및 소속 대학이 당해 연도 회계 종료일 이전까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장학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학과 계속장학생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록금 범위에서 학생 부담분만 지원
 -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장학생은 선발 가능하며 학업장려비만 지원
 - ※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등록금이 무료인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등록금은 지원되지 않으나 학업장려비는 지원 가능
 - ※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정부·지방 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바람
 -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나. 학업변동 등 조치 사항

□ 학적변동

- 국내장학생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 ※ 학기 중간에 휴학을 하는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붙임3]를 작성하여 소속대학에 제출(정상학기 종료 후 휴학하는 경우 제외)
 - ※ 복학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 휴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전액 반납
 - 소속대학은 학적 변동사항을 매학기별 장학금 신청 시 장학재단으로 통보
- 해외장학생
 - 휴학을 하는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붙임3]를 작성하여 장학재단으로 제출
 - ※ 복학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으며 재단에 반드시 통보 요망



□ 전공변경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와 전공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으나,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을 통해 장학재단으로 제출하고 1회에 한하여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부)의 변경 가능
 - ※ 단,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캠퍼스 간 이동 포함)은 인정 안함
- 국내장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붙임3]를 소속 대학으로 제출하고, 소속 대학은 해당내용을 장학재단으로 공문을 통해 보고함
- 해외장학생은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붙임3]를 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함(이공계 학과로 변경함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 대학 조치사항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으로 입력
 -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및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는 재단으로 통보
- 전공이 미결정(자율전공학과 등)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신청할 수 있으나,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교환학생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의한 변환 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단,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중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최소이수 학점 기준은 제외)을 충족해야 함
 - ※ 재단에서 통보한 계속장학생 추천 기간 이후 성적산출이 되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 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턴십의 경우, 소속 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공계 관련 산·학·연의 인턴십만 인정)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교환)” 으로 입력
 - 2010년 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부터 적용

- 국내장학생이 자매결연 등을 통해 취득 학점 및 성적이 상호 인정되는 국내외 타 자연 및 공학계열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학업계획 변경신청서’[붙임3]를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함

□ 초과학기

-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제외
 - ※ 소속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국내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최소이수학점 기준은 제외)을 충족해야 함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Fail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Fail 등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할 경우 학사원장에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입력
 - ※ 본래 성적이 계속지원기준 통과 시 지원 가능(대학: 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
 - ※ 해당 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대학)

○ 해외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Pass/Fail 과목만 이수 등)할 경우 해외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 Pass/Fail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별 Pass/Fail 총 이수단위 중 80%를 Pass할 경우 지원
 - I / II.1/II.2/III 유형 성적의 경우: II.1(60점) 이상일 경우 지원

□ 일시귀국(해외장학생)

- 해외장학생이 매학기 중간에(방학 제외) 30일을 초과하여 일시귀국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일시귀국요청서’[붙임6]를 장학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다. 장학생 사후관리

□ 장학금 사후 관리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를 변경할 수 없으나,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는 전공학과(부) 1회 변경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미달인 경우 1회 지원 중단, 누적 2회 시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 장학금 반환 및 자격박탈: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수혜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 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환수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에 공문으로 통보)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한국장학재단 공문 접수 후 수혜 포기 취소 불가

6 기 타

가.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

□ 개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2('11.6월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2.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방법·범위·기간·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의무종사: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여야 함

- 대상: '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 의무종사일 산정

총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지급횟수 × 6(개월) × 30(일)

※ 3학기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

- 의무종사 인정분야

-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 산업분야분류표^{*}의 이공계 또는 융복합 분야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 규정 별첨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 그 밖에 재단 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공계 분야 종사로 인정되는 경우
 - ※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 창업의 경우 근무하는 경우에 준하여 적용



- 의무종사 유예: 진학 및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2회 (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 대학 졸업수료 이후 180일 이상 진학 및 취업 준비가 필요한 경우
 - ※ 단, 비 이공계 분야 대학(원) 편입·진학의 경우 의무종사 유예 불가
- 생계 등의 사유로 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이공계에 취업하여 종사 예정인 경우 (이공계 취업예정 확인서 제출)
- 그 밖에 재단에서 의무종사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 입대, 교정 시설 수감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종사 중지가 가능
 - ※ 중지 기간은 의무종사 유예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장학금 환수

- 환수 대상자 지정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장학생
 - ※ 이공계 전공 분야의 판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장학생

- 환수금액 산정

-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	---	---------------------------
-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인 경우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frac{\text{남은 의무종사일}^*}{\text{총 의무종사일}}$
---------------------------	---	---------------------------	---	--

* 남은 의무종사일 = 총 의무종사기간 - 실제 의무종사기간

- 환수방법: 환수 대상자 재단이 환수 통보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 약정서 제출

- 일시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상환일에 환수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함
- 분할상환: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연구장려금을 나누어 상환 가능
 - ※ 90일 이상 미상환시 분할상환 중지, 불성실환수자 지정
 - ※ 약정 상환일 이내에 상환 방법 변경 가능

- 상환유예: 환수대상자가 아래 사항으로 상환약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 유예 신청 가능

-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 ※ 2년의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 그 밖에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장학생은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과 발생일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환수대상자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의무종사 유예신청이 기각된 경우
- 상환 유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그 밖에 의무종사 이행 및 연구장려금 환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장학금 중복지원 상세기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학부과정 졸업 시 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을 신청은 가능하나 타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시 수혜가능

□ 중복 지원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7 사업 추진 흐름도

가. 신규 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장학재단	'16. 2월 중
신청접수	○ 장학재단으로 개별신청 (장학재단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지역추천자의 경우, 시·도교육감 추천 기간(2.17.~3.4.)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학생	'16.2.5(금)~2.25(목) 18:00까지(국내) '16.2.5(금)~5.13(금) 18:00까지(해외)
1단계심사	○ 서류심사 준비 및 진행 (국내 및 해외) ※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실시	심사자	(국내) '16.3.11(금)~3.12(토) '16.5월 중(해외)
2단계심사	○ 심층면접 (국내 및 해외)	심사자	(국내) '16.3.25(금)~3.26(토) '16.6월 초(해외)
최종선발	○ 최종선발 (국내 및 해외)	한국장학재단	(국내) '16.3월말~4월 초 '16.6월 초(해외)
선 정	○ 최종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장학재단	(국내) '16.3월말~4월 초 '16.6월 초(해외)
지 원	○ 장학금 지급 (학기별)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16. 4월 초(국내) '16. 8월 중(해외)

나. 계속장학생

			1학기	2학기
사업공고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장학생 신청안내(학생·대학)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장학재단	'16. 1월 중	'16. 7월 중
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한국장학재단	'16. 1. 19(화)	'16. 7월 중
우선감면 처리	○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소속대학	'16. 1.20(화) ~ 2.19(금)	'16. 7월 중 ~ 8월 중
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및 학적 확인 ○ 대학 추천	소속대학	'16. 1. 20(화) ~ 2.19(금)	'16. 7월 중 ~ 8월 중
심사	○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16.2.22(월) ~ 2.26(금)	'16. 7월 중 ~ 8월 말
지급	○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 대학)	한국장학재단	'16. 2월 말 ~ 3월 초	'16. 8월 말 ~ 9월 말
결과보고	○ 학기별 지원 결과 제출 (소속대학→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 및 반납 학적변동 등 최종 지급 결과보고 제출	소속대학	'16. 8월 중	'16. 11월 중



Ⅲ |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통하여 국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리더로 양성
- 인문사회분야 우수한 석·박사 과정생의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동 분야 연구 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력 증진을 도모
- 대학 인재 상에 맞는 우수인재 선발로 대학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우수장학생 연계를 통한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 추진경과

- 2006.6 : 미래한국 100년 인문학장학금 신설(한국학술진흥재단)
 - ☞ 대학배정방식으로 장학생 선발
- 2009.5 : 한국장학재단 출범에 따라 동 사업 이관(한국장학재단)
 - ☞ 대학배정방식에서 재단자체선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장학생 선발
- 2010.1 :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으로 개편
 - ☞ 인문사회분야에서 사회과학분야로 확대
- 2014.3 :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대학배정방식으로 개편
- 2015.1 : 국가우수장학생(대학 학부)의 국가연구장학생 연계 추진
- 2016.8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로 명칭변경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예산 및 인원 : 50억 원, 700명 내외 선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기당 최고 400만원 한도로 등록금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 선발을 통하여 2개 학기(1년) 이내 지원
 - ※ 단, 중도탈락 및 포기 등으로 잔액 발생 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지원
 - * 대학은 신규장학생 선발 시,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후보자 명단 작성(선정 장학생 선발이 불가능한 경우 후보자 군에서 차 순위 장학생 선발)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대상 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 * 대학원 유형이 일반대학원으로 분류된 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한 한국학대학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울산과학기술대)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원

- ※ 인문사회분야는 '16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인문계열 또는 사회과학계열로 하여,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의 연구 분야를 심사 및 선정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로스쿨, MBA, 교육대학원 등) 등 제외
- ※ 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원은 신청대상대학원 에서 제외('15.8.31. 확정·발표)



- 전일제 확인
 - Part-time제 학생 및 휴학생 지원불가
 - *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원함(추가학기 지원불가)
- 미취업 여부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최종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지원 불가 (R-A 및 T-A로 인한 4대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주의) 지역가입자 중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지원 불가
 - 시간강사 대상 여부(아래 요건 충족시 예외적 허용) : 주 6시간 이내 근무*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은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하여 미취업자로 인정('16. 1. 2 이후 발급분 인정)
 - * 시간강사의 1학기('16.3.1~8.31) 및 2학기('16.9.1~'17.2.28)의 주 6시간 이하(총 출강시간/27주)인 경우, 미취업자로 인정
 - ** 시간강사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 지원대상(정규학기 기준)

- 석사과정 : 2~3학기 재학 중인 자
-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 2~5학기 재학 중인 자
- ※ 지원대상제외 : 해당학교 학칙 수업연한에 따른 정규학기 수업연한의 첫 학기생(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생

[과정별 수업연한]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비고
수업연한	2년	3년	3년	

※ 해당학교 학칙 수업연한에 따라 지원대상 학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성적기준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의 성적기준 충족 시 지원
- 소속대학 평점 산출기준 적용
 - 평점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예 : 4.01/4.5만점기준)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91.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선발기준

○ 지원대상 대학원(Ⅱ.내용 참조) 중 인재육성계획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 배정인원 내에서 대학은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추천
 - ※ 대학원별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 마련 및 투명한 선발추천절차 수립
 - ※ 필수서류 : 4대보험 가입확인서, 학업·연구계획서(기타 선발 필요 서류는 대학별 관리)

- **배정인원과 별도로 우수 탈북 대학원생에 대한 선발을 지원**
 - ※ 사업신청 대학원은 성적요건, 전일제학생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명단을 제출
 - ※ 재단은 인재육성계획 평가 대학원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학원에 대하여 통상 배정인원에 탈북학생 인원을 더하여 배정.
 - ※ 단 모든 최종 사업신청 대학원의 총 신청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는 신청인원 전원 배정
 - ※ 탈북대학원생은 4대보험가입확인서 및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제출
- **배정된 인원 내에서 다자녀(셋째아이이상) 가구 학생에 대한 선발을 권고**
 - ※ 저출산 극복을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계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배정된 인원 10% 이내에서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선발을 권고
 - ※ 다자녀 가구학생은 본인이 셋째아이 이상으로 태어난 경우로 보고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신규장학생은 장학생 추천시 장학금 포기, 휴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배정 인원 내에서 대체선발 가능(대학원)**
 - ※ 단 배정인원 70%이상 추천대학원만 본 선발에 참여가능
- **한 학기 지원유형(대체선발)의 경우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신규선발 시 후보자 위주로 선발하여 학기 1회 지원**
 - ※ 신규추천시 후보자(기존 대학별 배정인원 중 미 추천 인원만큼 선발), 탈북 대학원생, 인재육성계획평가 우수대학원 위주로 지원
- **선발시 유의사항**
 - 두 개 이상의 석사 과정을 재학 시, 1개 석사과정만 가능(박사과정도 동일)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동시 재학 시에는 박사과정만 가능
 - 석사과정 재학 시 동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석사과정을 다시 재학할 경우 추천 불가(박사과정도 동일)
 - **등록금 범위를 벗어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추천 불가**
 - ※ 장학금 수혜기간동안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 포함)로 선정된 경우, 동 장학제도에 지원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하여야 최종 선발 가능.** 단, 학기 당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및 대출 허용(BK21플러스사업 포함)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지원/일부지원) 선발 제외
 - ※ 등록금 전액 및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대학원생지원 장학금(인문사회계)으로 대체 불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 가능
 - ☞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장학금이 아닌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을 선택하더라도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 불가
- 대학별 배정 기준



- 인재육성계획서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에 대해 대학별 대학원생 현원 수 및 장학생 선발실적을 적용한결과에 인재육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원 배정

※ 정책연구결과 “2014년도 국가우수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신중호 연구 책임자 외 4명, 2013년 12월)”에 따라 배정 기준 마련

- 대학별 배정인원 산식(600명 내외)

$$\text{대학별 배정인원} = [\{ (A/\Sigma A) \times 0.5 \} + \{ (B/\Sigma B) \times 0.5 \}] \times \text{'16년 선발인원}$$

* A(대학원생 현원수) : '15년 기준 지원 대학원(인재육성계획 제출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수(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분교인원포함)

* B(선발실적) : '13~'15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선발 실적(신규참여 대학원의 B값은 '16년 배정 대학원의 최소 B값을 적용)

※ 위 배정기준은 “2014년도 국가우수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대학교 2013.12)을 반영하였음

※ 분교(캠퍼스) 대상자 포함하여 본교에서 선발추천 (추천학생이 분교(캠퍼스) 소속일 경우, 본·분교 배정 인원을 분리요하여 공문 요청(대학→재단))

※ 소수점 처리 방식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인재육성계획평가 우수대학 추가 인원배정(80명 내외)

평가등급	대상 범위	배정인원
S	최종 선정 대학원 중 인재육성계획 평가결과 상위 1% ~ 5%	3~10명 내외 추가배정*
A	최종 선정 대학원 중 인재육성계획 평가결과 상위 6% ~ 20%	1~5명 내외 추가배정*
B	최종 선정 대학원 중 인재육성계획 평가결과 상위 21% ~ 40%	0~3명 내외 추가배정*
C	최종 선정 대학원 중 인재육성계획 평가결과 상위 41% ~ 100%	추가배정 없음
D	인재육성계획 평가결과 탈락 대학원	추가배정 없음

※ 소수점 처리 방식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추가배정인원은 최종선정 대학원과, 인원배정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탈락학생 배정인원이 20명이하일 경우 그 잔여인원을 우수대학 추가유형에 포함하여 배정 가능

- 탈락 대학원생 인원배정(20명 내외)

※ 사업신청 대학원은 성적요건, 전일제학생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수를 제출

※ 모든 최종 사업신청 대학원의 총 탈락대학원생 신청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는 신청인원 전원 배정

※ 단 신청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배정

$$\text{탈락유형 배정인원} = (\text{해당대학신청인원} / \text{총 신청인원}) \times 20$$

※ 소수점 처리 방식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3 신규장학생 선발절차

가. 신규 선발

□ 선발절차

- 대학에서 제출한 인재육성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된 대학에게 배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원배정 후 대학자체선발 및 추천



□ 세부선발절차

- **(대학 제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인재육성계획 제출
 - 대학은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재육성계획 제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 배정관리 ➡ “인재육성계획제출관리”에서 제출

※ 인재육성계획을 미제출 할 경우는 지원 대학에서 제외함

- **(인재육성계획 평가)** 대학에서 제출한 인재육성계획을 심사 및 평가
 -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평가위원회 평가

- **(재단 배정)** 인재육성계획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대해 재단 배정기준을 적용하여 장학생 인원 배정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 배정관리 ➡ “배정현황”에서 배정인원 확인



○ (대학 선발) 대학별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및 명단 업로드

- 대학은 선정된 장학생 명단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등록*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 배정관리 → “배정신청정보조회”에서 등록

* 지원자격(Ⅱ.내용 참조)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대학이 자체심사하여 재단으로 등록

○ (학생 신청) 대학추천 대상자(선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PDF, JPG 등 전자파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선택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학생 신청 기간 내에 제출서류(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미제출 시, 선발에서 제외함

○ (대학 추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장학생 최종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 학생신청 및 대학추천 매뉴얼은 별도 공지

○ (재단 심사·확정) 추천학생의 적합성 여부(미취업여부, 성적 등)를 검토하여 장학생 최종 확정

나. 한학기 지원유형(대체 선발)

□ 선발대상 및 기준

○ 선발대상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신규장학생 선발 시 선정된 후보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후보자가 없을 시 대학자체선발기준 의거 선발·추천된 자

☞ 대학원별 객관적·공정한 자체기준 마련 및 투명한 선발·추천절차 수립

☞ 단,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학생은 선발 시 제외

- 신규선발 배정인원 중 미추천 인원만큼 해당 대학원에 배정

※ 단 배정인원 중 70%이상 추천대학원만 본 선발에 참여가능

※ 신규선발시 후보자군 위주로 우선 추천

- 탈북우수대학원생 우선 선발 및 인재육성계획평가 우수대학 우선배정 고려

- 인문사회계 기초 학문(문학, 사학, 철학 등) 전공자 우선 선발 고려

- 기타 잔여 인원의 경우 배정산식을 통하여 신청대학원에 인원 배정

☞ 배정 산식(신규선발과 동일)

$$\text{대학별 배정인원} = \{[(A/\Sigma A) \times 0.5] + [(B/\Sigma B) \times 0.5]\} \times \text{'16년 선발인원}$$

- * A(대학원생 현원수) : '15년 기준 지원 대학원(인재육성계획 제출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재학생 수(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분교인원포함)
- * B(선발실적) : '13~'15년 국가연구장학생(인문사회계) 선발 실적(신규참여 대학원의 B값은 '16년 배정 대학원의 최소 B값을 적용)
- ※ 위 배정기준은 “2014년도 국가우수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대학교 2013.12)을 반영하였음
- ※ 분교(캠퍼스) 대상자 포함하여 본교에서 선발추천 (추천학생이 분교(캠퍼스) 소속일 경우, 본·분교 배정 인원을 분리하여 공문 요청(대학→재단))
- ※ 소수점 처리 방식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선발기준

- '16년도 2학기 재학 중인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정규학기 첫 학기인 자 및 휴학생은 반드시 제외)
- *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인자 선발 가능

구 분	내 용
최소이수평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또는 4.0이상/4.5만점기준 (3.7이상/4.3만점기준)
미취업 여부	-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 '16.9.1이후 발급분 인정)

- **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강사확인서, 출강 6시간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기타 선발에 필요한 서류는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대학별 관리)
- 상기 기준 충족자 중 소속대학의 자체 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장학재단이 최종 확정(단, 신청인 서약서 온라인 동의자에 한함)
- 선발시 유의사항(2개 이상의 학위과정으로 동시 또는 재추천 제한)
 - 두 개의 석사 과정을 재학 시, 1개 석사과정만 가능(박사과정도 동일)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동시 재학 시에는 박사과정만 가능
 - 석사과정 재학 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석사과정을 다시 재학할 경우 추천 불가 (박사과정도 동일)

□ 지원내용

- 추가(한학기지원)로 선발 시 **해당학기 등록금범위 내 최대 400만원 지원(1회)**
- 등록금 범위를 벗어나는 타장학금 수혜자는 추천 불가
 - 소속대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전액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지급 가능
 - ※ 단, 등록금이 최대 지원 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 및 대출 허용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장학생은 선발 및 지급제외



□ 선발절차

○ (대학 선발) 대학별 배정인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및 명단 업로드

- 대학은 선정된 장학생 명단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등록

* 지원자격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대학이 자체심사하여 재단으로 등록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 배정관리 → “배정신청정보조회”에서 등록

○ (학생 신청) 대학추천 대상자(선발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확인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PDF, JPG 등 전자파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대학원생
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선택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대학 추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에서 장학생 최종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 학생신청 및 대학추천 메뉴얼은 별도 공지

○ (재단 심사·확정) 추천학생의 적합성 여부(미취업여부, 성적 등)를 검토하여 장학생
최종 확정

4 지원 및 관리기준

□ 장학금 지급방법 및 절차

○ 최종 장학생 선정 후 장학금을 소속대학으로 지급

※ 단, 재단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재단 내 상환 처리 후 지급

○ 2학기 계속장학금 지급 시 등록금 우선감면 적용

※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가 어려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과 반드시 협의 필요

□ 장학금 계속지원 요건

○ 장학생은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학교담당자는 계속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우선감면

- 제출방식 : 소속대학에 원본 제출 및 재단 홈페이지 파일업로드

○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백분위 92점 또는 평점 4.0이상/4.5만점, 3.7이상/4.3만점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16.7.1이후 발급분 인정)

※ 성적기준 미충족, 확인서 미제출하거나 가입된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지원중단

- 타 장학금(BK21플러스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형사업 연구장학금 포함)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지급의뢰(대학 → 재단)

□ 증명서 발급

- 장학증서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 온라인 발급
○ 수혜증명서 :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온라인 발급

□ 중복지원방지 관리기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400만원 지원
 - * 본 사업은 신입생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입학금 미지원
- 중복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단, 해당 학기 지급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함)
-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 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p>※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p>



□ 장학금 사후관리

- (신규장학생)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선발과정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 반환
- (계속장학생) 장학생이 계속지원 요건에 미충족한 경우(성적 미달, 4대 보험 가입 또는 미제출 등),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금 자격 영구탈락
- (신규 및 계속 장학생)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 지원 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제적, 학사징계, 학교변경, 전과, 휴학(질병,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등에 의한 휴학 포함)의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장학금 반환과 동시 장학생 자격상실
 - ※ 단, 교환학생은 국내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재학생으로 인정하고, 국내 소속대학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당 최대 400만원 지원
 -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실태 모니터링

- 점검내용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심사관련 자료 및 신청학생 제출 서류 등
 - 장학금 지급 실태 : 학생 개인 지급, 학자금대출 상환,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등
 -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및 중간 보고서 보관 상태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사후관리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학금 반환
 - 수혜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예정

□ 대학 협조사항

-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인재육성계획을 제출해야함(미제출 시 지원 대학에서 제외)
- 대학은 자체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투명한 절차로 소속 대학원생 선발 및 추천
- 대학은 장학생 선발·추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 자료의 확인 및 보관
 - ※ 대학의 국가연구장학생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5년간 보존

- 대학은 심사위원 구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이해관계자, 지도교수 등은 제외
- 대학은 장학생 계속지원을 위한 중간보고서 확인 및 관리(권고)
 - ※ 계속장학생은 온라인 신청 시, 중간보고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대학은 관리자포털을 통한 온라인 관리
- 대학은 재단이 장학금 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 대학은 타 장학금(BK21플러스사업, 교내장학금 포함)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 사실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수시로 보고하고, 장학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문의

-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우수취업장학지원부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사업 담당자’
- 전화번호: 1599-2290(대표전화)
-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IV | 전문대학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 개요

가. 목적

- 우수 인재의 전문대 진학을 유도하여 우수 기능인 양성에 기여

나. 추진경과

-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사업 신설('10.9월)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낮고 조기 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지원 강화
- '11년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생 선발('11.3월)
- '12년 국가장학금제도 신설에 따른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사업 폐지
 - ※ 단, 계속장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지원

다.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라. 추진체계

- **교육부:**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 관장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 **대학:**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의 추천 및 지급, 결과보고 등 수행

2 주요 사업 내용

가. 지원규모

□ 지원인원 및 예산

- (지원인원) 신규선발 폐지, 계속장학생 20명 내외
- (예산)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예산 범위 내 활용
 - ※ 2016년도 전문대우수장학금 0.4억 원 이내 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매학기 26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범위 내)
 - 당해 연도 사업시행계획에 의거한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및 장학생 중간평가제도 기준 충족자에 한함(장학생 자격박탈 기준 참조)
 - ※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다. 신규장학생 : 12년 사업중단에 따라 신규선발은 없음

라.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

- '11년도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지원기준 충족자에 한해 정규 과정 중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까지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대학에서 지급받은 학수 포함 (지급학기 학수 및 성적미달 학수의 합)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 단, 정규 이수학기가 4학기(3년제 : 6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
 - 단, 전공심화과정자 지원 대상 제외



□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최소평균평점 : 백분위 85점 이상,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미포함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수학점 기준)

※ 소속대학 공식 평점 산출기준 적용

※ 최소 성적 요건 1회 미달 시 다음 학기 지원중단, 누적2회 미달 시 장학생 자격 박탈

※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 사업의 계속장학생은 '11년도 2학기부터 발생

- 평균평점 :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예 : 3.51/4.5만점기준)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 : 84.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계속지원
- ※ 대학은 평균평점 및 백분위 점수 모두 입력 바람

□ 지원 절차

○ 계속장학생은 아래 절차에 따라 장학생 선정·지원

구분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내용	우선감면대상자 통보	장학생 추천 온라인 지급의뢰	- 선정자 확정·통보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일정	1학기 : 1.20(수) 2학기 : 7월 중	1학기 : 1.20(수)~2.19(금) 2학기 : 7월 중~8월 중	1학기 : 3월~4월 중 2학기 : 9월 초

○ 온라인 학생신청 및 제출서류 : 필요없음

○ 대학추천

- 소속대학은 장학생 추천기간 내에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및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하단 메뉴 1. ~ 5. 제출완료 클릭

- 소속대학은 우선감면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학사정보 및 수납 정보 업로드 후 장학생 추천

마. 장학생 중간 평가제도(1+1제도(2년제), 1+2제도(3년제))

□ 평가 대상

- '11년도 신규 장학생(신입생 기준)으로 선발 된 상위 2학년(3학기 차) 진급 학생

□ 평가 기준

- 직전 2개 학기 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최소 종합평균 백분위 85점 이상(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졸업 학점의 **40%(2년제) 이상 이수** (3년제의 경우 **30%** 이상, 4년제 학과의 경우 **20%** 이상) 시 잔여학기 계속지원

□ 평가 절차



○ 대학정보 업로드

- 소속대학은 **장학생 중간평가 대상자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업로드

* 학사정보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학사정보관리 ➡ 학사정보관리 하단 메뉴 “일괄등록” 또는 “개별등록” 활용 등록
* 수납원장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공통 ➡ 수납관리 ➡ 수납원장 관리의 하단 메뉴 “일괄등록” 또는 “개별등록” 활용 등록

○ 학생신청

- 장학생 중간평가제도 대상 장학생은 온라인 학생신청 완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성적우수장학금 ➡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생 ➡ 신청하기버튼 클릭
※ 장학금 신청 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를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학생제출서류(신청서, 서약서 등) 생략**
※ 학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박탈

○ 대학추천

- 소속대학은 학생신청 완료 학생에 한하여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장학생 중간평가제도 선발기준 및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및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하단 메뉴 1. ~ 5.제출완료 클릭



바.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지원 금액 및 내용

구분	지원금액	비고
1인당 지원금액	학기당 최대 260만원(연간 520만원 이내 지원)	등록금범위내 지원

※ 참고(장학금 지원 금액 예시)

- 학기당 최대 지원금액 26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타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등록금 범위 내 부족분 지급
 예) 등록금이 400만원이며, 타장학금 250만원수혜 받은 경우
 → 등록금 범위내 부족분인 150만원에 한하여 전문대우수장학금 지원
 - 해당학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전문대학우수학생 장학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처리 후 장학금 잔액 지급
 - 재단 외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학에서 대출상환 처리
- ※ 생활비는 상환 대상 아님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소속대학으로 지급함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 장학금 입금 시기

- 대학(교)의 해당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금 완료 후 대학 담당자 SMS로 입금완료 통보)
- 장학금 온라인 지급의뢰 청구하는 대학(교)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

3 장학생관리 주요사항

가. 장학생 자격박탈 및 환수규정 등

□ (장학생 자격박탈) 장학생이 아래 계속지원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 ① 입학 이후 1년(2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시
- ② 장학생 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 성적기준 미달 시('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③ 장학생 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기간 동안 성적미달 1회시('11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④ 장학생 중간평가제도(1+1제도, 1+2제도) 대상자 학생 미신청시

□ 장학금 환수규정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한 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 ② 장학금 수혜 후 정규과정 미 수료 후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진급(입학·편입)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제적의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④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중복(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①~④의 경우 대학이 장학금 회수하여 재단에 반납, 미반납 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전문대우수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전문대우수 장학금 지원 가능

※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장학금이 아닌 전문대우수장학금을 선택하더라도 전문대우수장학금 지원 불가

2016 한국장학재단 사업 정책

chapter | 3

취업연계
장학금

- I. 국가근로장학금
- II.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
학금)



I | 국가근로장학금

1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 주요경과

-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반 마련
 - * ('05년) 지방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신설
 - * ('06년) 전국 전문대학 대상으로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확대
 - * ('09년) 4년제 대학 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설(한국장학재단)
 - * ('10년)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통합
 - * ('12년)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까지 확대
- 국가근로장학사업 내실화
 - * ('13년) '방학중 교외근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 ('14년) 국가근로장학사업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구축
 - * ('14년) 우수근로장학기관 인증제 도입
 - * ('1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 예산 통합 / 취업연계중점대학 운영

2 지원방안

□ 지원대상

- 대상 대학: 국내 전체 대학
- 지원대상 학생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우선 선발 권장
 - ※ (소득분위 적용배제)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의 배제가 가능

□ 지원내용

○ (장학금 산정) 대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장학금 지급

○ (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근로: 8,000원 / 교외근로: 9,500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 장학금의 20%(전년 동일), 교외 : 대학 자율

※ ('16학년도 교외근로 의무비율) 4년제 25%, 전문대 30%

[근로지별 근로유형]

구분	정의
교내근로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근로지에서 근로활동 진행
교외근로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근로지에서 근로활동 진행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일반기업체 등)

○ (근로시간) 학기 중 주당 20시간(단, 방학 중 주당 40시간 가능)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산정 및 지원대상 공지 ③ (대학) 대학별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 선정(지원 대상 내)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대출자 우선 선발

-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우선선발 권장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4분위 이하*	소득 5분위 이상~6분위 이하	소득 7분위 이상~8분위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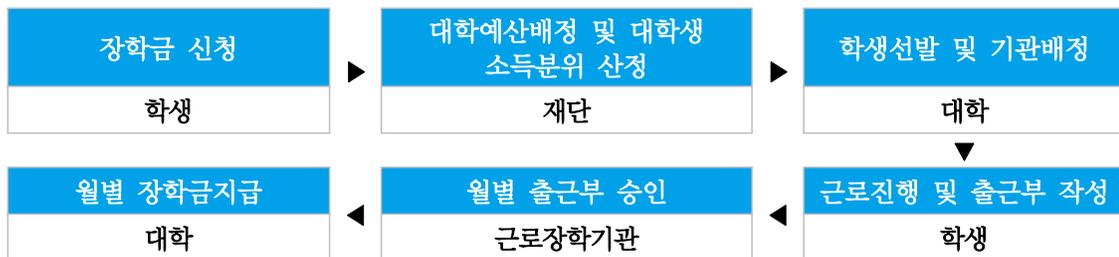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지급방식) 대학이 대학생의 월별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지급

- 월별근로시간은 대학생이 작성하는 온라인 출근부를 기초로 함
- 온라인 출근부는 대학생이 근로 후 5일 이내에 작성하며, 매월 근로기관 담당자 승인 필요

<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1. 출근부는 5일 이내에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근로장학사업 운영 절차]

□ 근로 활동

○ (내용) 국가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하는 모든 업무

- ※ 단, 단순 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제외
- ※ 근로시작 전 근로장학기관·대학·근로장학생은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업무계획서 작성하는 등 반드시 합의절차를 거쳐야 함

[근로활동별 참여 유형]

구분	내용
일반 근로형	·교/내외의 근로장학기관에 배정되어 근로활동을 진행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형	·교내근로형으로 장애학생 이동 지원,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 소통 지원 등의 활동 수행 ·예외사항: 선발 시 소득분위 배제
취업연계형	·교외근로형으로 재학생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근로장학기관에서 근로 활동을 진행 ·예외사항: 선발 시 소득분위 배제, 학기당 제한시간 미적용

- (근로장학기관) 대학생에게 직업체험과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학 또는 재단과 협약한 기관

□ 사업 참여자 관리

○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

- 장학생에게 “**학적변동 시 국가근로진행 불가**” 사항을 공지하고 매월 장학금 지급 전 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학적변동 이후 근로 내역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근로장학생 자격해제 사유]

- ①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②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③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④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⑤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분서로 해당 학생의 불성실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 ※ 근로장학생의 자격 해제 시, 사전 충분한 검토(학생 면담 등)가 이루어져야함

○ 근로장학생 활동 관리

- 대학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교육** 및 활동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활동 현황 점검 권장**

○ 안전 관리

- **(대학)** 매 학기 근로장학생 전체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장학생 안전교육 실시(권장)** 하고 장학생의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 작성 안내**
- **(근로장학기관)** 교내 및 교외 근로장학기관 담당자는 장학생 근로 시작 후, 직무별 안전교육 의무 실시
 - ※ 장학생의 근로 시작일 이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 근로시작일 포함)에 안전교육 실시
 - ※ 안전교육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장학생)**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부득이 안전교육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안전관리 자가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 **(재단)** 교외근로학생 단체상해보험가입 및 긴급전화 운영(☎1599-4920)



〈 학생 신고 절차 〉



-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사고 발생 대응절차 〉

구분	내용
사고접수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장학생 비상신고 접수(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즉시대응	· 안전사고 신고 접수 후 권역별 학자금지원센터는 근로장학기관에 즉시 방문하여 사고 내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보고	· 권역별 학자금지원센터는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기관점검	· 안전사고 발생한 근로지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점검 시 우선점검 대상 및 근로지 배정 배제
정보공유	· 안전사고 조치 및 근로지 점검 결과 타 부서와 정보 공유

○ 근로장학기관 자격관리

- 대학과 재단이 주기적으로 근로장학기관을 점검하여 근로장학기관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근로장학기관 Pool을 마련하기 위함

[근로장학생 자격해제 사유]

- ① 지속적인 안내에도 근로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장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② 근로장학생의 대체근로를 조장하는 경우
 - ③ 재단의 근로장학기관 점검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④ 근로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근로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⑥ 배정된 근로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⑦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로장학기관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 ※ 근로장학기관의 자격 해제 시, 사전에 충분한 진위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기관에 자격 해제에 대한 공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우수근로장학기관 지정: 근로장학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분야별* 우수 근로장학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근로지 확대하기 위함(공공부문, 사회복지부문, 교육부문, 기업부문 등)

[우수근로장학기관 지정기준]

- ① 장학생의 전공 및 취업연계 노력
- ②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도
- ③ 근로지 환경 및 장학생 처우 개선 노력 우수
- ④ 장학생 및 대학 만족도 우수
- ⑤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등

- 근로기관 점검: 집중점검(대학현장협업부)과 상시점검의 이원화 추진

① 집중점검: 상·하반기 방학 중 근로지 연중 2회(1월, 7월) 실시하여 근로지 안전사고 예방

〈집중점검 업무절차〉		
주체	구분	내용
우수취업장학 지원부	점검기관 선정	· 위험 또는 부적합 직무 해당 기관 선정
대학현장협업부	일정협의	· 집중점검 대상 근로지기관과 점검일정 협의
대학현장협업부	점검실시	· 장학생 근로진행 현황파악 및 근로지 운영·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대학현장협업부	결과보고	· 근로지 점검내용과 의견수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우수취업장학 지원부	지적사항 공유	·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주요 점검내용 공유
대학현장협업부	사후관리	· 부정근로 반환조치, 지적사항 이행조치 등의 관리를 통해 추가 점검 또는 근로지 배제 등 고려

② 상시점검: 대학현장모니터링 시 해당 권역 근로지 불시점검과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근로지에 대한 우선점검 실시

〈상시점검 업무절차〉						
구분	점검사유	일정협의	점검실시	결과보고	결과공유	사후관리
불시 점검	대학현장모 니터링	없음	근로장학 전반에 대해 점검	모니터링 결과보고 포함	결과보고 지적사항 내용 공유	지적사항 이행관리
우선 점검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없음	민원 및 안전사고 중심 점검	별도의 결과보고 작성	별도 통보 통한 내용 공유	민원 및 안전사고 처리



□ 부정수급 관리

○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하는 경우

○ 부정근로 제재

- (허위근로) 해당 장학금 환수 및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 국가근로 참여제한 :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2년(4개 학기)
- (대체 및 대리근로)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 국가근로 참여제한 : 확정시점의 다음 학기부터 1년(2개 학기)
 - ※ 대체 및 대리근로는 국가근로 참여제한만 실시
 - ※ 대리근로의 경우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부정근로 업무처리

- (재단이 부정근로 의심사례 발견 시) 법무부, 병무청 등과 연계한 정기점검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한 상시 근로 모니터링 실시
 - 부정수급 의심자 발견 시 대학 통보 및 증빙서류 요청
 - 증빙서류 검토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주체	세부내용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직전학기 근로장학생 출입국 기록 및 병무기록 수집 ○ (상시) 근로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사례 적발
재단→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제출 요청
대학→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제출
재단→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검토 결과 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 (대학이 부정근로 의심사례 발견 시)

- 부정근로 의심사례 발견 시 증빙서류 요청 및 검토
- 부정수급 확정 시점부터 근로 중단 및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 허위근로의 경우 해당 장학금을 국고 및 교비로 분류하여 환수 처리
 - ※ 환수한 장학금이 ①당해 연도 사업비인 경우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사업비로 사용, ②이전 연도 사업비일 경우 재단 협의 후 반환 필요

주체	세부내용
대학	○ 부정근로 의심사례 적발
대학→학생	○ 증빙서류 제출 요청
학생→대학	○ 증빙서류 제출
대학→학생	○ 증빙서류 검토 결과 안내 및 부정근로 형에 따른 제재처리

- (근로장학기관이 부정근로 의심사례 발견 시) 부정근로 발견 시 장학생 소속대학 및 재단에 즉시 통지하여야 함



Ⅱ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취업지원 유형

가.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나. 제도의 주요 경과

- '12. 4. 새누리당 19대 총선공약 발표
 - ※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취업 해소 :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 도입
- '13. 3. 교육부 '13. 대통령 업무 보고('13. 3. 28.)
- '13. 5.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시행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15. 2.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유형 신설
- '16. 2. 희망사다리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가능 대학(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한 대학)

< 사업참여 가능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제외 대상 대학 >

- 기술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
- ※ 근로자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마 교육 목적 및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 등

□ 학생 지원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 일반대 5년제는 3~5학년, 전문대 3년제는 2~3학년이 지원 대상임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원 미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 단, 대학에서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참여자, 기업 추천서 제출자, 대학의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자, 잔여학기 많은 자는 우선 추천
- **상시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는 제외 대상**이며 단기 근로자(시간제근무자, 아르바이트 등)는 참여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교육형 계약학과 대학생,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생 등도 **제외 대상**

라.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 기간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 '16년부터 신규로 발생하는 전공심화과정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며 다만, '15년까지 동일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에 한해 계속지원

□ 지원 금액

- **(신규장학생)**
 - (등록금)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
 - (취업준비장려금) 매 학기마다 **200만원 지원**
 - ※ 취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계속장학생)**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지원**
 - ※ 취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마. 장학생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신규장학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은 대학별 **인원배정** 후, 대학이 추천한 학생을 심사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명단을 대학에 통보**
- (선발조건)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학생 추천(대학)

- 장학금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 받은 인원 내에서 추천***

* 최종 추천 시 자체선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

- 대학은 추천자 중 **결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 확보**

※ 학생에게 선발기준을 공개하고 추천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진행 권장

※ 특히, 중소기업 취업의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추후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근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장학금 환수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확인시킴

○ 대학 자체추천기준 가이드라인(우선 추천기준)

- **장기현장실습(12주이상) 참여자, 기업의 추천서 제출자, 대학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예정)자***, 잔여학기 많은 자를 우선 추천

※ 장학생 추천 우선순위: ① 장기현장실습 참여자(12주 이상)참여자 ②기업의 추천서 제출자 ③대학의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자(예정자) ④잔여학기 많은 자

*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의 예
- 시간제 근무, 인턴 등 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회사에 근무하였고, ② 근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됐으며, 관련 활동에 대한 ③ 증빙이 가능한 경우
- 현장실습에 준하는 활동에 대한 ④ 기업의 평가의견서 및 추천서(졸업 후 채용을 희망)를 제시하는 경우

○ 대체 후보자 추천

-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 자진 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대체 후보군에서 자체기준으로 추천

□ 계속장학생

○ 계속지원기준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학점 기준)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 이수
- (지원 중단) 지원기준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중단
 -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시 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장려금 포함) 반환 중 선택
- (교육이수) 학기당 40시간의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 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및 해당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반환 의무 발생

※ 다만,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16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선정)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 재단은 이를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 졸업 또는 수료 이후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3년 기간 설정
 -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 별도설정
- (의무 미이행)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의무를 미 이행 할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보상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바. 사업 추진체계(업무흐름도)

-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연도별 업무처리기준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지원 관리 및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 수행
 - ※ (운영위원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사업참여대학 및 유관기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협조체계 구축
- (대학) 해당대학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등 수행



사. 취업 인정 기업 범위

□ 지원대상 기업규모 및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대기업 제외
 - * 비영리기관 중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 사회적 기업은 인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 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 (중소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참고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 (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또는 기업 신용평가사 신용보고서(상시근로자 수, 평균매출액 등 포함)
 -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발급 가능
 - ※ 기업신용평가사는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 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와 매출액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후 재단의 최종 승인이 필요

- **(중견기업 판단기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중견기업 범위해설서 참고
 -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연매출 2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 중견기업정의 > 중견기업범위해설
- **(확인서류)**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자공시시스템) 또는 기업 신용평가사 신용보고서(상시근로자 수, 평균매출액 등 포함)
 - ※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 에서 발급 가능
 - ※ 기업신용평가사는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 ※ 매출액 증빙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등록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확인 가능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개인)사업자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철도공사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외국법인(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 출처: 중소기업청(2015년 개정판 알기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아. 사후관리

□ 장학금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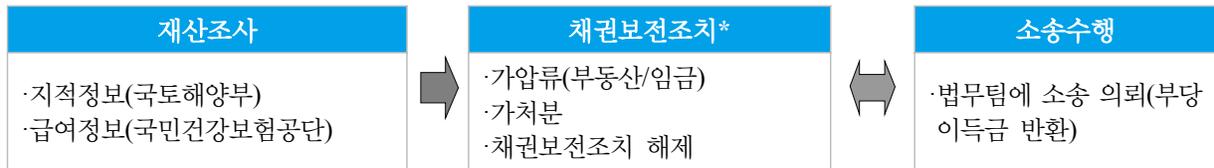
- **(자진 포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 (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 **(학적 변동)** 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 * 다만,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제외(증빙필요)
- 해당 대학은 장학금 포기,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한국 장학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 장학금 포기자의 경우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전자공문)
 - 자진 포기 및 수학중단의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불가



□ 환수자 등 조치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 이직 또는 퇴사 등 의사를 밝힐 경우 의무종사유예자(6개월)로 전환
 - * 주소지 이전 및 거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주소보정 작업
- (2단계) 환수 미 이행자(90일 이상)는 불성실환수자 지정 및 통보(예정)
- (3단계) 불성실환수자 중 환수 미이행자(30일 이상) 대해서 최고장 2회 이상 통보(예정)
- (4단계) 환수절차에 따라서 불성실환수자 대상으로 환수 실시
 - * 신용지원부의 부실채권관리 표준업무처리절차(SOP) 준용

〈4단계 불성실 환수자 환수절차〉



〈환수규정〉

- (환수자)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해 3개월 내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지정
- (불성실환수자) 제33조 및 34조에 의해 환수자 지정 후 3개월 내 환수 미 이행 시 지정하게 되고 제39조 제1항에 의해 민사소송 등으로 장학금 환수 이행 가능

□ 의무종사 제도

- ◎ **의무종사 보고란?**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수료) 후에 중소·중견 기업에 근무(창업 후 창업기간 유지)하고 재단에 보고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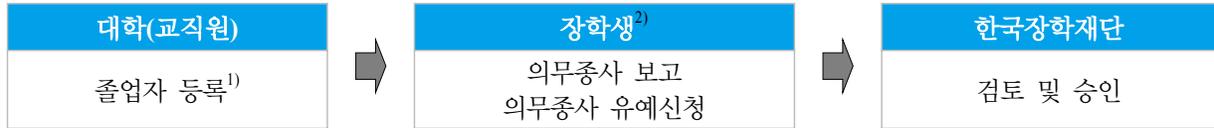
희망사다리장학생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미만)에 근무(창업 후 창업기간 유지)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졸업생이 근무 등 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법적조치 등을 통해 수혜 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의무종사 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개시 기간: 졸업(수료)일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시작 보고: 졸업(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 관련 의무종사 부정사례 적발 예시〉

- 의무종사지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 기관 경우
- 장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 고의적으로 주소지와 연락처를 재단에 통지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보고 절차



- 1) 한국장학재단 관리자포털 접속>공통>학적상태관리>학적정보대상자관리
-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금환수관리>의무종사보고

〈의무종사 보고 시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4대 보험 미 가입자
<취업유형>	<취업유형>
<시작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추가제출 <종료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중 1부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추가제출 <종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창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시작보고> 1)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종료보고> 1)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3)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4) (해당 시)지식재산권 등록서류 등	인정불가

* 기타 증빙: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사 등 기업 신용평가사가 발급 또는 인정한 서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기준>

- 최소 3건 이상(6개월)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최소 매출액 기준*)
 - 재무제표,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 * 최소 매출액 기준: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16년 기준 약 65만원/월)



○ 의무종사 인정기간 참고사항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종사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ex1) 입사('13. 11. 15), 졸업('14. 2. 14) ☞ 의무종사 시작일 : '14. 2. 15 ex2) 졸업('14. 2. 14), 입사('14. 7. 1) ☞ 의무종사 시작일 : '14. 7. 1 ◦ 현재 미취업이지만, 졸업 이후 근무 사실이 있으면 근무내용 보고 후, 의무종사 유예 보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종사기간 추가인정 기준 : 지식재산권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1건 이상 등록 : 창업유지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 창업유지 3개월 인정 ※ 장학생 선정 이후, 창업기업 관련 있는 경우만 인정

○ 유예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재단 유예 승인 필수)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유예불가 사유: 대학원진학, 어학연수(워킹홀리데이 포함) 등
- 필수서류 : 유예신청서

〈유예관련 증빙서류〉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택 1)	◦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택 1)
◦ 질병·상해	진단서(장애인 등록증)	◦ 질병·상해	진단서(장애인 등록증)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진단서(택 1)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진단서(택 1)
◦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구직활동 증빙서류(택 1)	◦ 미창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창업활동 증빙서류(택 1)
◦ 전공심화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 전공심화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 이직·퇴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 취업 예정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 폐업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유예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4개월 이내(단, 천재지변과 질병·상해 사유는 추가 요청 가능)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창업지원 유형

가. 사업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기여

나. 제도의 주요 경과

- '15. 2.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유형 신설
- '16. 2. 희망사다리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다.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가능 대학(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한 대학)

- 창업강좌 및 대학 내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

* 창업동아리 지원조건: ①지도교수가 있어 학기별로 학생지도 ②다수의 참여학생 ③구체적 결과물 제출·평가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 일반대 5년제는 3~5학년, 전문대 3년제는 2~3학년이 지원 대상임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 학점교류를 활용한 창업 강좌 수강내역도 인정

라.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 기간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지원 금액

○ (신규장학생)

- (등록금)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
- (창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지원
 - ※ 창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계속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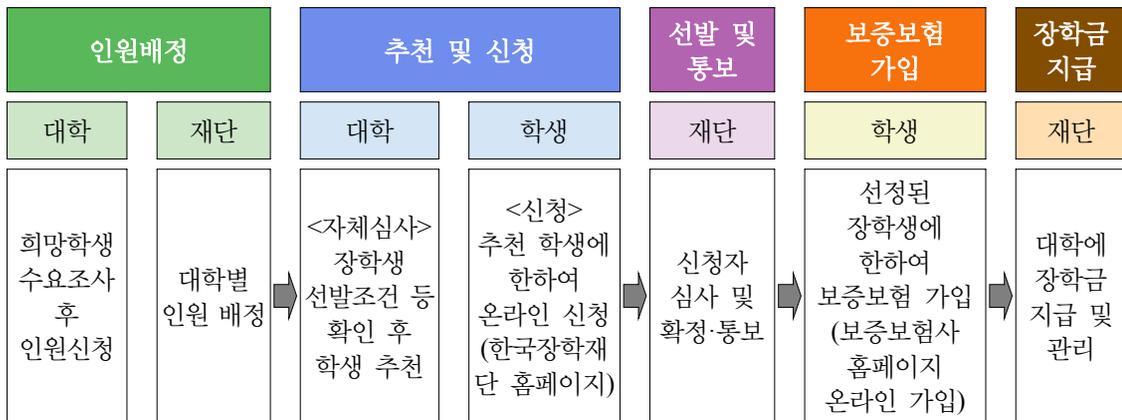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창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지원
 - '16년부터 창업준비장려금은 외부기관의 창업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 '15년 장려금 미수혜자는 '16년부터 수혜가능(다만, '15년은 장려금 미수혜에 따라 학기별 교육이수 40시간의 의무가 없었으나, '16년부터는 교육이수 필요)



마. 장학생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신규장학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은 대학별 인원배정 후, 대학이 추천한 학생을 심사하고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명단을 대학에 통보



- (심사기준) 창업지원유형 교수 추천서 제출자 및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이수자(또는 이수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붙임4)의 창업 아이디어 적정성 및 창업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 마련

《 창업지원유형 장학생 선발 절차 》

- ① (대학) 창업 전제 사업아이디어 및 창업 태도에 기반하여 선발 추천 대상자 업로드
- ② (학생)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이수서약서(이수자는 증빙서류) 제출 및 장학금 신청(졸업 후 창업)
- ③ (재단) 추천자에 대한 자격조건 검증 후 장학생 선발
- ④ (대학) 장학생에게 창업 기초 교육 프로그램 우선 배정(해당학기 중 정규과목 이외)
- ⑤ (학생) 해당학기 내 창업 기초 교육 이수 및 창업 아이디어 활동 수행

○ 학생 추천(대학)

- 장학금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 받은 인원 내에서 추천*
 - * 최종 추천 시 자체선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
- 대학은 추천자 중 결격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자 확보
 - ※ 학생에게 선발기준을 공개하고 추천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진행 권장
 - ※ 특히, 창업의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추후 부적격자 적발 및 의무창업기간을 유지하지 못할 시 본인에게 장학금 환수 등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지·확인시킴
- 공동창업(예정)자 1인은 동반선발 가능하나, 최초 창업에 속한 인원이 아닌 경우 선발 불가

○ 대학 자체추천기준 가이드라인(추천 우대)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다음 분야에 대한 창업 학생에게 대학 자체추천 시 우대

〈 선발 우대 대상 창업 분야 〉

- 학생의 전공연계 분야 창업기업 우선 선발
- 중소기업청 고시 전략산업* 창업기업, 장학생 소속 대학 특성화 분야, 기타 아이디어·지식서비스·IT·기술·융합 등 관련 분야 기반 창업기업 우선 선발
-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 대체 후보자 추천

-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 자진 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대체 후보군에서 자체기준으로 추천

□ 계속장학생

○ 계속지원기준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 대학 학칙에 의거 한 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예 : 6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학점 기준) 각 대학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 이수
- (지원 중단) 지원기준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중단
 -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시 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장려금 포함) 반환 중 선택
- (교육이수) 학기당 40시간의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및 해당학기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반환 의무 발생

※ 다만,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16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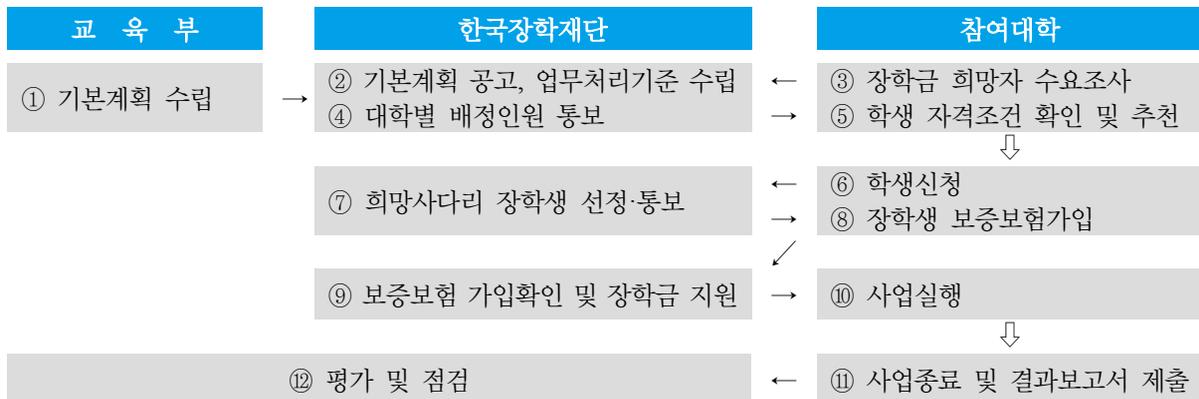
- (장학생 선정)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 재단은 이를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 졸업 또는 수료 이후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3년 기간 설정
 -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 별도설정
- (의무 미이행)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의무를 미 이행 할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보상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바. 사업 추진체계(업무흐름도)

- (교육부)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연도별 업무처리기준 수립, 사업안내, 장학생의 선발·지원 관리 및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 수행
 - ※ (운영위원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사업참여대학 및 유관기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협조체계 구축
- (대학) 해당대학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장학금 지급 및 결과보고 등 수행



사. 창업 인정 기준

□ 창업 인정기준

- 희망사다리 창업대학생은 관련법률*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서 정한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원 기간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지원 금액

○ (신규장학생)

- (등록금)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
- (창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지원**
 - ※ 창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계속장학생)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창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지원**
 - '16년부터 창업준비장려금은 외부기관의 창업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 '15년 장려금 미수혜자는 '16년부터 수혜가능(다만, '15년은 장려금 미수혜에 따라 학기별 교육이수 40시간의 의무가 없었으나, '16년부터는 교육이수 필요)

아. 사후관리

□ 장학금 반환

- (자진 포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 (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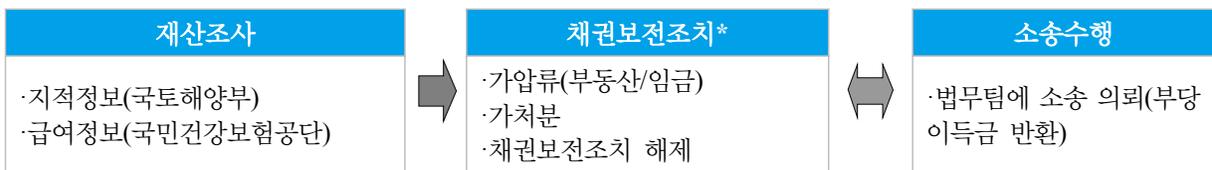


- **(학적 변동)** 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 * 다만,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제외(증빙필요)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장학생 소속 대학 학사제도 규정상 **창업 휴학제**를 통해 휴학한 경우 **장학생 자격 유지** 가능(일반휴학은 불인정)
- 해당 대학은 장학금 포기,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 장학금 포기자의 경우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포기확인서 제출(전자공문)
 - 자진 포기 및 수학중단의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불가

□ 환수자 등 조치

- (1단계) 중소·중견기업 외 취업자(불이행) 환수자 지정 및 통보
 - * 이직 또는 퇴사 등 의사를 밝힐 경우 의무종사유예자(6개월)로 전환
 - * 주소지 이전 및 거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주소보정 작업
- (2단계) 환수 미 이행자(90일 이상)는 불성실환수자 지정 및 통보(예정)
- (3단계) 불성실환수자 중 환수 미이행자(30일 이상) 대해서 최고장 2회 이상 통보(예정)
- (4단계) 환수절차에 따라서 불성실환수자 대상으로 환수 실시
 - * 신용지원부의 부실채권관리 표준업무처리절차(SOP) 준용

〈4단계 불성실 환수자 환수절차〉



〈환수규정〉

- (환수자)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해 **3개월 내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지정**
- (불성실환수자) 제33조 및 34조에 의해 **환수자 지정 후 3개월 내 환수 미 이행 시 지정하게 되고 제39조 제1항에 의해 민사소송 등으로 장학금 환수 이행 가능**

□ 의무종사 제도

◎ **의무종사 보고란?**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수료) 후에 중소·중견 기업에 근무(창업 후 창업기간 유지)하고 재단에 보고하는 제도

희망사다리장학생은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미만)에 근무(창업 후 창업기간 유지)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졸업생이 근무 등 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법적조치 등을 통해 수혜 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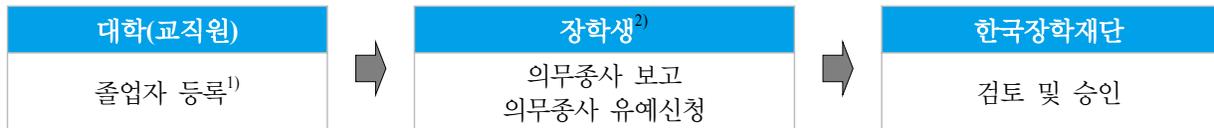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의무종사 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개시 기간: 졸업(수료)일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시작 보고: 졸업(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 관련 의무종사 부정사례 적발 예시〉

- 의무종사자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 기관 경우
- 장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 고의적으로 주소지와 연락처를 재단에 통지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 의무종사보고 절차



- 1) 한국장학재단 관리자포털 접속>공통>학적상태관리>학적정보대상자관리
-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금환수관리>의무종사보고

〈의무종사 보고 시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취업유형>	4대 보험 미 가입자 <취업유형>
<시작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중 선택 1부 2) 본인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3)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추가제출 <종료보고>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중 1부	<시작보고> 1) 고용계약서(재단 홈페이지 양식 활용)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4) 본인명의로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당시 제출자는 면제) 1부. 5) (최초 1회)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기타 증빙* - 중견기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추가제출 <종료보고>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또는 급여 이체내역)
<창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시작보고> 1)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종료보고> 1)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선택 1부. 3)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4) (해당 시)지식재산권 등록서류 등	인정불가

* 기타 증빙: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사 등 기업 신용평가사가 발급 또는 인정한 서류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 기준>**

- 최소 3건 이상(6개월)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최소 매출액 기준*)
 - 재무제표, 매출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 * 최소 매출액 기준: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연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16년 기준 약 65만원/월)

○ 의무종사 인정기간 참고사항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종사일수는 졸업 이후 입사일로부터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1) 입사('13. 11. 15), 졸업('14.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종사 시작일 : '14. 2. 15 ex2) 졸업('14. 2. 14), 입사('14.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종사 시작일 : '14. 7. 1 ◦ 현재 미취업이지만, 졸업 이후 근무 사실이 있으면 근무내용 보고 후, 의무종사 유예 보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종사기간 추가인정 기준 : 지식재산권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1건 이상 등록 : 창업유지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 창업유지 3개월 인정 ※ 장학생 선정 이후, 창업기업 관련 있는 경우만 인정

○ 유예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재단 유예 승인 필수)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유예불가 사유: 대학원진학, 어학연수(워킹홀리데이 포함) 등
- 필수서류 : 유예신청서

<유예관련 증빙서류>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신청사유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택 1)	◦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택 1)
◦ 질병·상해	진단서(장애인 등록증)	◦ 질병·상해	진단서(장애인 등록증)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진단서(택 1)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진단서(택 1)
◦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구직활동 증빙서류(택 1)	◦ 미창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창업활동 증빙서류(택 1)
◦ 전공심화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 전공심화	전공심화대학 입학증명서
◦ 이직·퇴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 취업 예정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서류	◦ 폐업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유예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4개월 이내(단, 천재지변과 질병·상해 사유는 추가 요청 가능)

Section 03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상환관리

I. 학자금대출	158
II.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189
III.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194
IV. 농촌학자금 용자	210



I |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대상자 단계별 절차 현황

대출단계	재단	학생 / 학부모	대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발급 - 가구원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제출(서류 징구 대상자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 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대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계좌 잔액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대출 등)

1 대출제도 주요내용

가. 정부학자금대출 제도

□ 사업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16.2학기 금리) 연 2.5%

○ 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 상품	상품 특징	대출 한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한도: p179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2 대출 준비

가. 대출 금리

□ 관련 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대출금리)

□ 금리 결정

- 위 관련 법률에 따라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재원조달금리 등 감안
- 매학기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매학기 ‘변동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나. 신청 전 준비사항

□ 준비 단계

-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를 필히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단,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기 가구원동의 바로가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가입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취업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신고**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기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당해년도 채무 미신고자만 해당

3 대출 신청

가. 신청 자격

□ 공통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대학별 최저이수학점(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단,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교)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따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 * 단,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허용(취업후 상환 학자금 시범 실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 55세 초과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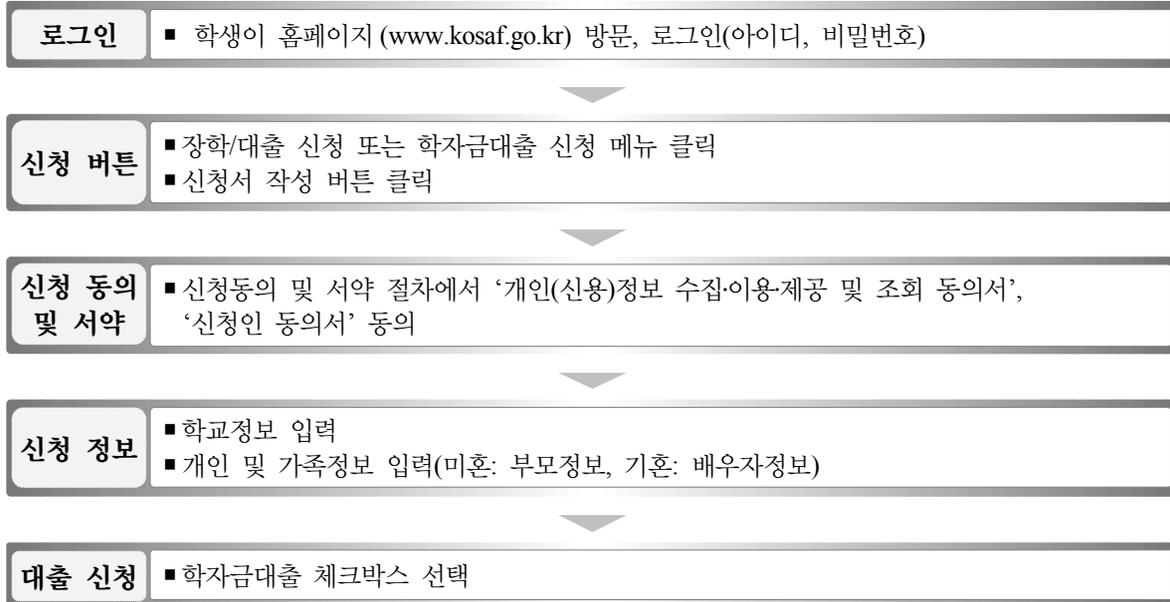
□ 분할납부 연계 대출

- 등록금 분할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납 대출과 동일하게 신청
- 대학에서 수납원장 정보 업로드 시 분할납부 정보로 구분 및 확인
- 분납대출 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학교에서 반드시 분납정보 등록



나.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단,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 신청 접수

- 재단 홈페이지 가입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익일(휴일 제외)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 가구원 동의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가능 (콜센터 1599-2000)
 -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신청 기한

-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 필요
-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 자격자는 추후 기간 내에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유의사항: 학교별, 은행별로 수납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16시 이후 대출 불가)

다. 서류 제출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 서류제출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 ※ 제출 기한 내에 서류 미 접수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 해당자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 ※ 모든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소득분위산정 관련 내용은 재단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 ※ 방문·전화 등으로 대출심사 관련 기망을 시도한 경우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자료, 녹취내용 등)가 있는 경우 대출제한이 될 수 있음



□ 가족정보 확인

-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 학생 기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및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한 확인
-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서류정보 확인 (전산정보로 확인 불가 시)
 - 표준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4 대학 추천

가. 대학 추천 및 정보 제공

□ 대학 추천

- 대학은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대출 신청자의 학점, 성적, 및 대학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 대상자 확인 및 학사정보 제공

□ 추천 시기

- 등록금, 생활비대출 및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이후 실행기간 내에 추천완료

□ 정보 제공방식

- 대학 교직원포털(관리자포털)에서 신청자 조회 후, ‘대상자’ 다운로드(엑셀)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입력 후 [학사정보관리]에서 개별 등록 또는 일괄 등록 처리
- 학사정보 오류 수정은 대상자 ‘대출실행’ 전 단계까지만 가능

□ 정보 제공범위

- 대학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등) 및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 대학 해당학기 등록금 및 장학금 등 개인별 수납정보

나. 성적 및 학점 기준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시간제, 전일제)

* 직전학기

-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1)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입력

2)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 학사정보 상 직전학기이수학점, 직전학기이수평점, 직전학기백분위점수,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 백분위점수 모두 입력

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산출 불가 시, 활용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 성적 및 학점기준

- 대학 학칙에 의거 한 학기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국내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아래조건 충족 시 추천 가능하며,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 산출

- 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 추가 유의 사항

○ 초과 학기자* 및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대출 제한

* 초과 학기자 :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소속 학제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기)를 초과한 학생

예시) 추가 학점 취득(복수전공, 재수강 등)을 위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에 등록하는 경우

** 단순 졸업유예자(수료) : 졸업기준 학점을 이미 충족하고, 해당학기 학점취득 없이 취업준비 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 학점취득을 위한 초과 학기자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업로드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허용하되,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으로 대출제한

* 전문대(2~3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4~6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 단순 졸업유예자 학적상태 “수료”로 업로드 및 대출 불가

○ 이연복학자* 재학생 기등록 특별추천 금지

* 휴학자가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연처리를 한 자

- 학적상태 “재학(복학)”, 등록대상 구분 “기등록”, 등록금액은 “휴학당시 기준 금액”으로 업로드 시 기등록 특별추천 불가

※ 단, 자비로 등록금 납부한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추천 가능

○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심화과정 첫 학기 ‘편입’ 학적 입력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첫 학기 “편입생”입력, 학년은 연차로 입력

예)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 업로드

약학대학 2+4년제 3년차 첫학기 “편입생”입력 및 3학년으로 업로드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추천 대상 아님

다. 특별 추천

□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 추천 시기: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 대출실행 이후에는 특별추천 불가

○ 추천 방법: 특별추천 일반/취업후 상환 메뉴에서 대상 학생 특별 추천

- 추천 기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고] 참조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 전문대(2~3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4~6년제):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 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 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각 사유별 가능 횟수 참조
-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라. 수납원장 등록

□ 학생 개인 수납원장 등록

- 등록금대출 수납원장은 필수경비 및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 (필수경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경비
 - (선택경비) 학생회비, 실습비 등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
 - ※ 졸업앨범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대출 성격의 대출은 선택경비항목 대출 불가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에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수납계좌, 등록금, 장학금, 예치금 등을 기입

【수납 원장】

항 목	내 용
학생 정보	▪ 학과, 학번 등 학사정보, 수납은행 및 수납계좌, 등록금 마감일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예치금
등록금 정보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선택경비(자율납부금 등)

□ 수납계좌 등록(대표계좌)

- 대학은 필요 시 수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재단에 별도로 발송 필요

□ 가상계좌 채번

- 학생이 선택경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계좌는 반드시 선택경비를 포함한 “고정값”이 아닌 최소 필수경비 이상의 “범위값”으로 입력하여 채번 요망
 - ※ 필수경비만 학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도 대출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마. 분납정보 등록

□ 분할납부 연계대출 대상 범위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 포함)
- 분할납부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정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 납부 회차는 학기중 최대 6회까지 설정가능(학기중 최대 5회 대출 가능)
- 선택경비는 일시납으로 대출하고, 필수경비만 분할납부 대출 지원

□ 학생 개인 분납정보 등록

- 분할납부 학생은 기존 수납원장 외에 분납 일정 및 금액 등을 관리하는 분납정보 (보조 수납원장)를 별도 등록 관리
- 학생의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은 분납정보 등록 여부로 판단

【분납정보】

식별정보	분할납부 1회차				...	분할납부 6회차			선택경비 수납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수납 계좌	수납 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	
성명 주민번호 등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은행, 계좌, 예금주	수납 마감일	생략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생략	선택경비 수납 마감일



5 대출 심사

가.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고등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및 재단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35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 이상 •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p>-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 곤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p>	
이수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주3)} (다만,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주4)}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소득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주5)} 포함) - 다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분위 이상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가능 *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가능자는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 상환 학자금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제도 선택 가능 <p>-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실행 가능</p>

주1)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다만, 예약신청자는 '16.7.11 기준으로 연령 계산)

* 만 45세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한정) 재학생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시범 실시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재학생 및 편입생 포함)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5세 초과 만 60세 미만자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 입학하여(재학생 및 편입생 포함)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1학기의 성적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주3)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주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상세내용은 ‘제출서류안내’참조)

□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은 등록금대출 기준과 동일
 - 방송통신대 등 온라인 수업 중심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 (신입생군) 등록금 납부 완료자에 한해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자 및 기등록자
 - (재학생군) 해당 학기 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16년 8월 초 예정)
 - 재학생 중 소득분위 및 학사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비 대출 사전 실행 가능
 - ※ 생활비 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즉시 상환 및 향후 대출 제한 예정
- 생활비대출 금리: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와 동일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한도	• 학기당 1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 학기당 10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이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 다만, 대출실행시점 기준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고, 현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

나. 대출 제한 심사

□ 대출 제한 대상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구분	대출 제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학자금대출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적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기타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그 밖에 대출 부적격자(신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학자금 대출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구분	대출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어촌학자금 대출·신용보증과 관련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주1)} 등

주1)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다.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리 기준

-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 운영원칙
 -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은 중복지원범위에서 제외
 - 학자금대출은 한 기관에서만 가능

□ 학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

- 대출 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항 목	내 용
학자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국가장학금 I·II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대학원생지원 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 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 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 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항 목	내 용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대출도 제한됨

라.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한

□ 추진 배경

- 학자금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평가를 통해 학자금대출 한도를 제한
- '16년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등급(D~E)별로 학부 신·편입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

- (평가결과에 따른 제한) '16년도부터 단일 평가(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D~E)별로 학자금대출 제한
 - (A~C등급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없음
 - (D등급 하위 대학)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 (E등급 대학)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제한기간 및 해제) '15년도 평가 결과 D·E등급 대학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지속 여부는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결정
 - '16년도에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경우 '17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 D등급 대학 중 '16년도 컨설팅 이행 등의 결과 '17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 되지 않으면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50% 제한 예정

□ (평가제외 대학 제한) '15년도 평가제외 대학 31개교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15년도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8개교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대출 가능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별 학자금 지원 제한수준(안)】

구 분	D등급		E등급
	D등급 상위 (일반대 80점 이상, 전문대 78점 이상)	D등급 하위 (일반대 80점 미만, 전문대 78점 미만)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만 50%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D등급 하위 대학 신입생 학자금대출 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 가구인 재학생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음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등록금수납원장상의 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 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기존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0~'15학년도 당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입생은 기존 제한과 구조개혁평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

○ A~C등급 대학은 '16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 해제

○ D·E등급 대학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지속 여부는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결정

※ '16학년도 이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16년 대출제한대학의 재학생일 경우, 입학 이후 제한 비율('제한해제' 제외) 중 가장 유리한 제한비율과 '16년 제한비율 중 유리한 방향으로 제한이 적용됨

〈기존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예시〉

- 1)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70%제한)
→ D등급 하위: 50%제한 (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2)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70%제한)
→ E등급: 70%제한 (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3)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30%제한)
→ D등급 하위, E등급: 30%제한 (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4) 입학 당시 제한 또는 최소대출 → A~C등급 : 제한 해제(당해연도부터 계속)
- 5) 입학 당시 제한 또는 최소대출 → D~E등급 : 조건부('16년도 컨설팅 이행 결과 반영) 제한 해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 가구인 재학생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음 (단, 소속 대학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까지 제한될 시에는 제한)

○ 대출제한대학 확정 발표 이전('15.8.31) 수시모집으로 '16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단, 본인 신청 및 증명 필요)

【 '16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대 학 명
4년제 (16개)	일반 상환 학자금 50% (10개)	강남대학교, 경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동대학교, 청주대학교, 호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100% (6개)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21개)	일반 상환 학자금 50% (14개)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100% (7개)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응지세무대학교

마. 일반 상환 학자금 사전 승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선 취급 가능

- 등록(예정)대학 최종 등록 마감 시점 또는 대출실행 마감시점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 ※ 상기 내용 이외에도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자격자는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가능

사전승인 기준

- '16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자로,
- 소득분위 미산정 또는 재산정자 중 정규 또는 추가등록 마감시점 및 실행시점에 임박한 자로서
- 서류확인 및 대학추천을 완료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바. 대출 승인 및 통지

□ 대출 승인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중복지원심사 등 모든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대출 승인자 통지

-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SMS통보
- 각 대학은 대출결과를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신청학생 조회 및 추천]에서 확인 가능



-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 대출관리>학자금대출 현황>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사. 기타(용어설명)

□ 신입생(군) 추가대출

- 추가대출: 신입생/편입생이 입학예정(또는 기존)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학교변경(타 대학 합격) 및 등록금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에서 등록금 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재학생 및 재입학생 이용불가)

※ 단, 학자금대출 기간 이자, 지연배상금분 및 잔액원금은 학생이 반드시 상환처리 필요하며,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 동의서(별첨9)에 따라 대학생이 등록한 지정납부계좌에서 반환 후 잔액 이체출금 처리

○ 유의 사항

- 학생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포기’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대학에서는 해당 대학생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재단 반환처리 필요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금지, 재단 반환 원칙
- ※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15.2학기 신입생군 추가대출에 대한 미 반환 사례 안내 >

◆ 총 1,830명 신입생 및 편입생 추가대출자 중, 대학에서 59명에게 개인계좌로 대출금을 반환하고 이 중 최종 6명이 대출금을 미 반환하여 해당 건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및 재단에서 상환 촉구 중 (총 6명, 13백만원)

< 학자금대출 반환 관련 대학 유의사항 >

◆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 대학에서 등록 취소를 한 뒤, 추가 합격대학 입학에 대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등록 취소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학자금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예) 신입생 및 편입생이 기존 대학에서 대학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 합격대학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대학에서는 특히, 원서 접수 대행사(유웨이, 진학사 등) 등에 기재된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하기 전, 반드시 재단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필요

- i)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재단으로 반환
- ii)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없는 경우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 기등록자/기분할납부자 대출

-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원)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 대출을 실행

- 기분할납부자: 분할납부 대상자 중 자비로 선(先) 납부한 재학생에게 등록금 대출을 실행
- 대출방법: 대학이 관리자포털 [학사정보관리] 및 [수납원장관리] 메뉴에 등록*
* 기등록/기납부자 여부를 정확히 등록
- 대출지급: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유의 사항
 - 재학생이 기등록/기납부한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추천 대출 가능
 - 대출 실행(승인) 시, 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 등록금 중 필수경비*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단의 기등록 판단여부와는 관계없이 등록금대출 불가(생활비대출만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 대출이 가능

□ 재대출

- 재대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 신입생군(신입, 편입, 재입학) 학자금대출자가 대학(원) 추가합격 시
 - 재학생 오류정보(성적, 학사, 소득분위 등)로 대출 심사 및 실행 완료 후, 다시 대출을 받고자 할 시
- 대출방법: 학생이 기대출금 전액상환 후 대학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 등록금 반환 시 유의사항(신입생군)
 - 재대출을 위해 대학에서 대출금 반납 시 개인계좌가 아닌 재단체좌로 반환해야함



6 대출 실행

가. 지급 신청

□ 대출금 지급신청

- 대출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입력 → 대출조건 입력 → 사후관리 약약 → 대출약정 체결 → 대출실행
- 일시납 및 분할납부 대출 방식
 - 일시납 학생은 기존대로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 분할납부 학생은 분할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한도 대출

【등록금 납부방식별 대출 방식 구분】

납부방식	일시납	분할납부
수납원장 (대출형식)	총등록금 기준 (개별대출)	분할납부스케줄 기준 (한도대출)
대출횟수	학기당 1회	등록금 한도내, 분할납부 스케줄대로 분할 대출
계좌관리	대출 횟수 관계없이 1학기 1개 계좌로 통합 관리	

나. 대출 조건

□ 입출금 계좌 선택

-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 대출 원리금 상환/반환, 이자 환급, 생활비 수납, 본인 부담금 및 본인 의무부담금 납부
용도

□ 대출금액 선택

-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
- 등록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 자비부담 + 대출” 방식)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2회까지 실행 가능
 - ※ 단,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기간 이후 신청 및 실행 가능
 - ※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같은 학기라도 생활비대출 가능 (단,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사유는 불가함)

□ 최소 대출 금액 및 등록금 대출 한도

○ 최소대출 금액

(등록금 + 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60만원 이상 (등록금+생활비(10만원이상) = 6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경우 최소 등록금액 10만원 이상 적용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대출 잔액 기준)

구분	대학 (전문대포함)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정보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을 하지 않음

□ 상환방법 선택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선택사항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 대출기간 선택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선택사항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분할납부 연계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자동이체계좌 등을 최초 대출 실행시 결정하며, 추가 대출시 기 약정 조건내에서 대출금액만 증액



○ 대출기간의 구성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 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장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대학원생 : 20년 (최장10년거치, 최장10년상환) •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17년 (최장7년거치, 최장10년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 - 출생연도 - 1]로 계산(연, 월, 일 계산 제외)
거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주¹⁾ + 3년주²⁾ 주1) 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2) 연수 1년 +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 다만, 대학원(전문대학원을 제외)의 경우 졸업 후 유예 1년만 인정 •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존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최장거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p> <p>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p> <p>[ex] '16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55세(1960년 생)일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5년^{주1)}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주2)} 이내에서 선택</p> <p>주1) 60 - [2016(대출연도) - 1960(출생연도) - 1] 주2) 최장대출기간 - 1</p> </div>
상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①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최장상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p> <p>②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 [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차주선택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p> <p>[ex] '16년 2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55세(1960년 생)일 경우, 거치기간 3년 선택 시 상환기간은 2년^{주1)} 이내에서 선택</p> <p>주1) 5년(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 - 3년(차주선택 거치기간) < 10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60 - [2016(대출연도) - 1960(출생연도) - 1]</p> </div>

【대출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구분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주3)}	
군필 여부	학년제 학년	2	3	4	5	6 ^{주1)}	석사 (2)	석사 ^{주2)} (3)	박사 (4)	석·박사 통합(5)	의·치·의· 한의	경영, 법학 등
	미필자	1	8	9	10	10	10	6	7	8	9	10
2		7	8	9	9	9	5	6	7	8	10	7
3		-	7	8	8	8	-	5	6	7	10	7
4		-	-	7	7	7	-	-	5	6	10	7
5		-	-	-	6	6	-	-	-	5	10	7
6		-	-	-	-	5	-	-	-	-	10	7
군필자 (여학생 포함)	1	5	6	7	7	10	3	4	5	6	10	7
	2	4	5	6	6	9	2	3	4	5	10	7
	3	-	4	5	5	8	-	2	3	4	10	7
	4	-	-	4	4	7	-	-	2	3	10	7
	5	-	-	-	3	6	-	-	-	2	10	7
	6	-	-	-	-	5	-	-	-	-	10	7

주1) 6년제 학과 대출신청자는 군복무기간 미고려

주2) 대학원 중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년' 과정으로 적용

주3) 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신청자의 경우 최장거치기간 동일 적용

*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

다. 대출 약정

□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체결
-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별도 약정(2건)
 - 다만, 등록금, 생활비를 동시에 약정 시 동일조건으로 한번에 약정 가능

□ 대출 신청내역 변경

- 대출 신청자의 등록(예정) 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등록된 등록금 수납원장 상의 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변경은 불가

□ 대출 거절 간주 처리

- 대출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 후 대출 거절 처리함



□ 약정체결 관련 유의사항

- 대출약정 시, 약정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체결하여야 함
- 대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출제도 선택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중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라. 대출금 지급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 등록금 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 생활비 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기등록자 대출(신입생군에 한함, 재학생 1회 특별추천에 한함)

-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등록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 기분할납부자 대출(재학생군으로 1회 특별추천에 한함)

- 대학이 등록금을 분할하여 수납할 경우(분할납부 연계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에 한해 등록금 기분할납부자의 등록금대출금을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하고, 기납부한 등록금액 해당액은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 대출금 지급 통지

- 대출신청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재단에서 대출실행 완료 여부 통지
- 기등록자대출의 경우, 등록금대출자에 한하여 대출 실행(승인) 시, 동 사실을 대출자 부모에게 통지(기혼자 및 만 30세 이상인 자 미통지)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미반영 안내

- '16년 7월 말 이전 국가장학금 선정되었으나 수납원장 상 지원금액이 없는 재학생에게 안내
 ※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시 학자금대출 원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 안내

마.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을 대출실행 한 자가 추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으로 전환하여 대출하는 것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용기간 동안의 지연배상금 및 이자발생분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승인조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잔액 : 10만원 이상
 - 일반 상환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 : 각 10만원 이상
 - * 단,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만 실행한 경우, 전환대출이용 불가
-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연, 월, 일까지 계산)일 것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생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 대출자 부담
 -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상환 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대출기간: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동안 신청 및 실행 가능

- 대출금액: 기존 대출금액 잔액 이내 전액

- 대출 지급

-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은 기존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 처리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승인시점과 대출금 지급시점 사이에 기존 대출 잔액이 감소(대출금 상환 등)할 경우, 대출금은 자동으로 동 잔액의 범위 내로 감액하여 지급

- 대출 방법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서 작성 > 전환대출 선택 → 전환대출 관련 내용 확인 및 전환대출 신청 → 전환대출 승인 확인 → 본인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전환대출 약정 체결

- 유의 사항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소득분위 이의 신청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당시 본인 소득분위 기준으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가능



7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

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상환 기간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매월의 상환금액이 다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 ① 신청인은 “학자금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후 동 신청서 및 관련서류들을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 * 제출방법
 - FAX: 02)3419-8805(일반/농어촌)
 - 우편: 41200,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일반학자금대출부 담당자 앞
 -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확인 후 가상계좌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기한의 이익

-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 대출금 반환 등

- 대학은 학자금 대출금 반환사유 발생시 재단에 동 금액 직접 반환
 - 반환사유: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 대학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타 상황(등록금 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동 사항 대출약정서 명기(제3조) 및 대출신청자로부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재단이 징구
-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부담
- 신입생의 등록금 반환요청
 - 신입생이 타 대학 추가합격 시 재대출기준에 의해 처리



나. 대출 조건변경

□ 조건변경

조건 변경 항목	대출기간변경		납입일변경			상환방법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변경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월균등분할
해당 상품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일반방식)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일반방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유예 대출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일반방식)	일반 상환 대출	유예대출
가능 회수	계좌별1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1회	계좌별1회
잔액 제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비고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 조건변경 절차



□ 조건변경 관련사항

- 신청 및 약정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9:00
- 1개 대출 이상이 대출제한대상인 경우 조건변경 불가
 - 신청시 제한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약정 단계 중 제한 대상으로 되면 약정 불가
 - 승인정보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 경과 후 약정 시 거절
 -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이 종료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취소 후 재신청

다.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면제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09.2학기 이후, 취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면제이자: 군복무기간동안 청구되는 약정이자
 - 재단법 개정일('13.5.10)이전 입영자는 법 개정일부터 이자를 면제함
 - ※ 다만,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 ※ 전역예정일 경과 시 임의로 제외할 수 있음
 - 이자율: 매학기별 적용된 고정 이자율(소득분위별 이자지원 대상인 경우는 차감금리)
- 면제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면제
 - 병역정보 제공기관(병무청)을 통하여 이자면제 대상자 선정 후 복무 기간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미청구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면제대상: 보증부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면제이자: 군복무기간동안 납입한 약정이자
 - 재단법 개정일('13.5.10)이전 입영자는 법 개정일부터 이자를 면제함
- 면제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면제
 - 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자의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납입 내역을 확인 하여 심사 및 금액 지급
 - ※ 그 외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함

라. 특별상환유예제도

□ 특별상환유예제도

- 대학(교)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예(최대 3년)하는 제도
 - 대학졸업자 중(2년이내)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 지원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상환)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 지원대상: 대학(교)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 대상대출: 재단 취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취급분)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 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상환유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 해당 관련서류 FAX(02-3419-8805) 통해 제출
-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기본자격요건과 추가자격요건으로 구분
 - 기본자격 요건

기본자격요건	제출서류	확인사항
▶대학(교)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 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전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만 35세 이하	■ 졸업(학부) 증명서	■ 학부졸업 여부(단, 유형9, 10의 경우 졸업여부 무관) ■ 유예대상 대출보유 확인(만기경과 대출 유예불가) ■ 부실채권 보유여부 및 보유 시, 분할상환 약정체결 여부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여부 및 나이는 전산으로 자동확인

- 추가자격 요건

추가자격요건	제출서류	확인사항
[유형1] 부/모의 사망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원 1부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사망일자 확인)	■ 가족관계 ■ 신청일 기준 사망일자 2년 이내 여부
[유형2]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원 ■ 파산면책 또는 개인 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각 1부	■ 가족관계 ■ 파산면책: 신청일 기준 파산선고일자 5년 이내 여부 ■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일자 5년 이내 여부
[유형3] 본인의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단 교육급여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유형4] 본인의 장애	■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유형5]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 가족관계증명원 ■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각 1부	■ 가족관계 ■ 질병 해당여부(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12주이상 상해)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의 상실예정자(연체6개월) ※ 단, 취업성공패키지진행자 및 출생1년 이내인 자는 졸업년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증명서, 출생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졸업 2년 이내 여부 ■ 심사일 기준 연체6개월 이상 여부(미 연체시 유예불가)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	■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접수 확인원) 및 법원판결문 중 택1	■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및 법원 판결문 중 택1
[유형8] 특례조치(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증명서, 출생증명 가능 서류 (해당자 한함)	■ 2015.12.31. 종료
[유형9]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 군복무자: 복무증명서, 기타 군복무 확인가능 서류 등 ■ 군복무예정자 : 입영통지서	■ 군복무(예정) 여부, 졸업여부 무관 ■ 심사일 기준 연체3개월 이상 여부(미 연체시 유예불가)
[유형10] 대학생 창업자	■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 가능서류(졸업무관)	■ 졸업여부 무관
[유형11] 차상위 계층	■ 본인이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Ⅱ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1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개요

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 중복지원방지 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주요 경과

- ('10.1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조항 제정
- ('10.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2(중복 지원의 방지) 조항 신설
- ('11.2월)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시행
- ('12.10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 제정
- ('14.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조문 이동(제50조의2→5)
- ('15.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16.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6.5.29.)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대상 기관

- 대학
-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업무 절차

〈단계별 업무절차〉

단계	업무내용	관련대상
시스템 접속 사전준비	개인 인증서 발급 및 eduman.kosaf.go.kr 시스템 접속	기관 및 대학
시스템 접속 권한 신청	(기관)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송부 (대학) '학자금포탈 관리자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송부	기관 및 대학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1일 이내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정보 입력	기관 및 대학의 학자금 지원 정보 (명칭, 종류, 목적 등) 입력	기관 및 대학
학자금 지원 정보 승인	재단 승인 후 사용가능	한국장학재단
심사 수행	학자금 지급예정인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여부 확인	기관 및 대학
지급정보등록	최종 학자금지원자의 지급 정보 업로드	기관 및 대학
사후관리	기관별 중복지원자 현황 확인 및 문의사항 응대	기관 및 대학
	중복지원자에 대한 SMS발송 등 중복지원 해소 안내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중복지원 현황 확인 및 초과금액 즉시 반환	학생
제한조치	중복지원 미 해소자는 재단 학자금 이용 제한 미 반환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한국장학재단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운영기준

가.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른 중복지원방지 범위

□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금 : 학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비용
 - 필수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학생회비, 실습비 등)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원 가능

(예) 홍길동 학생 한국대학교 등록금이 500만 원일 때,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300만원 + B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원
 = 총 500만 원 수혜가능

□ 중복지원 제외 학자금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 감사원 유권해석에 따라 생활비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 또는 선발공고문 등에 ‘생활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생활비로 인정
 - 대가성장학금 :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장학금, 공로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나.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등록금 수납정보 수집

- 중복지원 심사 시 사용하는 등록금 기준은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한 등록금 수납정보 활용

다. 심사기준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에 따른 중복지원 심사기준

-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

라. 학자금 지급내역 등록 기한

- 등록금은 학기 단위로 납부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의 지급정보 등록은 학기 단위로 운영
- 각 기관은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지급내역을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즉시 입력 (5영업일 이내)

마. 해소 순서

-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대출 우선 상환하도록 안내
 - 장학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 조기 상환 유도

바. 해소기한 및 제재조치

- 중복중지원자는 중복지원 발생 즉시 초과금액을 반환
- 중복지원 초과금액이 반환될 때까지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포함) 및 장학금 지원이 제한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발생 예방 및 조치 과정]

재단 학자금(대출/장학) 신청 시 서약서를 통해 중복지원 받지 않을 것과 중복지원분에 대해 즉시 반환하도록 안내하여 자발적인 반환 유도 → 학기 중에는 대학 등이 학자금 지원내역을 등록하는 즉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 실시간 확인하여 자발적 반환 가능 →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대학, 민간재단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SMS 등을 통해 공지 및 반환 안내 → 최종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재단 학자금 이용 제한 조치

사. 외부기관 학자금 지원정보 대학 공유

- 각 외부기관은 학자금 지급 이후 해당 지원정보를 수혜학생의 소속 대학(원)으로 5영업일 이내 안내 및 통보
 - 외부기관은 학자금 지원정보를 수혜 학생의 소속 대학(원)으로 안내함으로써 한국 장학재단·대학·외부기관 상호간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지원자 사전 예방 가능



Ⅲ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1 대출원리금 상환

가. 상환의무

□ 상환의무의 발생 및 유예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
- 상환유예기간 중에도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나,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자발적 상환 제한
 - ※ 단, 대학의 학적 상실 등에 따른 등록금 반환, 장학금지급 반환 및 중복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환은 제한하지 않음
-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의무 상환금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상환유예

□ 상환의무의 면제

-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16.6월 기준 1,856만원)인 경우에는 면제
-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나. 대출원리금

□ 정의

-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매학기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 종류

- 등록금 대출원리금
 - 대출잔액 및 그에 대하여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 및 연체금, 연체 가산금을 합한 금액
 -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 시행('14. 5. 14.)에 따라 복리 적용 중이던 의무상환자의 이자계산은 '14. 5. 14.부터 단리적용

○ 생활비 대출원리금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3분위자
 - 의무상환개시 전 : 무이자
 - 의무상환개시 후 : 최초 개시 이후부터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소득4~10분위자
 -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상환금 충당순서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분		충당순서	비고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전)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 또는 이자를 지정하여 상환 ② 이자 → 대출원금 *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환(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채무자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후), 자동이체방식	이자 → 대출원금 *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환(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분할상환(자동이체 포함)		대지급금 → 과태료 → 연체금 및 가산금 → 이자 → 대출원금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 → 원금 → 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의무상환액		수개의 건이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건부터 충당 이자 → 원금 → 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 상환

○ 연체 중인 학자금 대출금 > 대출실행일자가 빠른 학자금 대출금 > 대출잔액이 적은 학자금 대출금인 순서로 상환 처리

※ 의무상환 개시 후 자발적 상환거래가 발생한 경우 대출잔액 변동에 의해 충당순서가 변경 될 수 있음

다. 자발적 상환

□ 정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

□ 상환 방식

○ 1회성 상환 : 대출중도상환

○ 매월 자동이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이체약정 등록

- ※ 의무상환 개시 등에 따라 자동이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가능(본인)
- ※ 의무상환 체납한 채무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해지
- ※ 체납금액을 완납 한 채무자가 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이체 약정을 원하는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 상환 절차

- 채무자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상환방식 선택
 - 대출중도상환 : 1회성 상환 방식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에서 상환방식 (일부상환, 전액상환) 선택 하고, CMS출금상환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법 택 1
 - 중도상환이체신청 : 매월 자동이체 방식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 자동이체 계좌등록 후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
※ 다만,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단을 방문하면, 재단은 신청자 본인을 확인하고 이체등록
- 제3자 중도상환이체 신청 : 매월 자동이체 방식
 - 채무자가 군복무, 유학,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본인이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부모, 형제 등 제3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상환 가능
※ 신청자 및 채무자의 실명 및 의사를 확인 후 이체등록(변경)

라. 의무적 상환

□ 정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2016.6월 현재 1,856만원

□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에 대한 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연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을 말하며,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구 분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퇴직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 퇴직소득금액 × 상환율(20%)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부터 적용
- 퇴직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에는 포함되나,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퇴직소득의 20%를 원천공제

○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20%)

□ 상환율

- '16.6월 현재 상환율은 20%이나,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 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상환기준소득

-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상환유예 후 상환의무 재개시를 포함)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연 36만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 ③에 의함
 - 상속·증여의 경우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 재학 중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청시 상환유예 가능

□ 소득별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소득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종합소득*	· 국세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납부 고지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 5월~6월에 1년분 선납 · 매월 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방법 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선납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 가능
퇴직소득	· 퇴직소득 발생	· 원천공제
양도소득	· 국세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납부 고지서
상속·증여 시	· 국세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납부 고지서

*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합산

□ 상환금액 경정

- 의무상환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착오 신고하거나, 과다 납부에 따른 상환경정 등은 국세청 요청에 따라 정산
 - * 국세청의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경정처리 요청 등은 의무상환 입금액과 상환금명세서의 불일치로 발생하며 2~3주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문접수로 진행
- 원천공제 종료 후 일시적으로 초과 상환된 금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재단에서 상환금 명세서와 원천공제의무자가 입금한 의무상환액을 대사하여 정산

□ 의무상환금의 납부인정액 정산

-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
-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은 원천공제의무자에 추가 납부 또는 경정을 고지

□ 근로소득(원천공제) 의무상환 처리절차

- 원천공제의무자는 급여일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및 명세서 제출
- 국세청은 익월 말일 상환금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송부
- 재단은 수신된 명세서상 채무자의 원천공제을 기준으로 상환처리

마. 반환금 상환

□ 정의

- 대학에서 등록금반환 또는 대학 및 재단에서 장학금지급반환에 따른 상환
 - 등록금반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등록금인하, 학적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대학이 등록금 반환금액을 재단으로 상환
 - * 학자금(등록금)대출 반환동의서에 의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사망, 기타)으로 등록금반환액 발생시 대학은 학생에게 반환하기 전 재단대출여부 및 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우선 상환처리 하여야 함
 - 장학금지급반환 : 해당학기 재단대출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외장학금 등을 지급할 경우 대학 및 재단이 채무자 대출을 우선 상환

□ 반환금 상환취소 및 반환처리

- 대학이 가상계좌를 생성 하여 상환한 금액에 오류(대학 오상환, 학적변동·중복수혜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등)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상환취소 및 반환
- 등록금 또는 장학금을 가상계좌에 상환처리하고 상환을 취소 하고자 하는 대학은 상환취소공문을 작성 하여 재단에 요청하여야 함
(대학요청(공문)¹⁾→공문접수²⁾→상환취소³⁾→송금처리⁴⁾)

구 분	단계별 유의사항
대학요청(공문)	재단장학금 이외 장학금의 취소일 경우 통장사본 첨부 필수
공문접수	재단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금 관할부서에서 접수, 그 외 교내/외 장학금의 경우 대출 상환부에서 직접 접수
상환취소	부분금액의 상환취소 불가, 전환대출자의 전환 전 대출계좌의 상환취소 불가
송금정리	반환금 상환취소분을 대학 또는 재단가상계좌*로 송금처리 * 국가장학금 1유형 등 재단 내 직접 상환분의 상환취소는 가상계좌 입금예정액과 일치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가상계좌로 직접 송금가능

□ 초과입금시 환급처리

- 대학이 반환금 상환처리시 대출잔액보다 초과 입금하였을 경우 대학은 관리자포털 내 ‘학적변동반환금관리’화면을 통해 입금결과내역(초과입금여부, 초과입금액)을 확인하고 재단으로 초과입금액을 환급 요청하여야함(공문요청)
- 재단은 초과입금액 확인 후 공문 요청 내역에 따라 대학 계좌 또는 재단에 등록된 고객 본인 계좌로 환급



2 사후 관리

가. 채무자 신고의무

□ 신고 절차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등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 ※ 이 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 확인 병행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이외 주소, 직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시신고 가능

□ 신고 기간

- 정기 신고기간(매년 12월) 또는 수시신고(연중)

□ 신고의무 제외 대상자

- '12년 이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 자('10년 대출자는 6~7분위도 해당)*로서, 해당 대출 외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없어야 함
 - * 상기 조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 기간을 설정하여 상환

나.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해당 요건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의 범위
 -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함
 - 중퇴, 자퇴 등(제적사항발생)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 졸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졸업 정보 파악
 - 매년 2회 대학으로부터 학적 정보를 수신
 - 관리자포털을 통한 졸업정보 업로드 대상자 파악 및 졸업정보 입력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 상환 개시일
 - 졸업 전 : 의무적 상환 개시일
 - 졸업 후 :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채무자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장기미상환제도에 관한 사전 안내 활동 실시

다.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자의 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제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고 가능
 - ※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를 말하며,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 후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 해외로 이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채무자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이주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 일반여권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장기 미상환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전액상환하여야 함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가능

○ 거주여권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미상환자는 여권발급 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
 - 외교통상부는 거주여권 발급 시 채무자로 하여금 재단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대출로 전환가능

□ 해외이주자 파악

○ 채무자의 신고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 또는 출국 후 재단이 출국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재단에 신고하는 경우

○ 대외기관에서 제공받은 해외이주 정보 및 출입국정보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외교부 해외이주신고자 DB 및 법무부 출입국정보 DB 등 공적자료를 조회 또는 제공 받아 확인

라. 해외유학생

□ 해외유학생의 신고의무

○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

※ 해외유학: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 담보 제공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

- 신고 및 담보 제공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국내 대출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신고한 해외유학생이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함
 - 다만, 유학계획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음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 또는 출국 후 재단이 출국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재단에 신고하는 경우

○ 대외기관에서 제공받은 출입국정보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이주신고자 DB 및 법무부 출입국정보 DB 등 공적자료를 조회 또는 제공 받아 확인

□ 해외소득 발생 시 상환

-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4조2항의 무연고 이주 중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로 보아 해외이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환

마. 연대보증인 입보

□ 자격요건

- 보증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민법 제4조 연령기준)의 성년으로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업무처리기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다만, 장학금 신청자 관련 제한 사유는 제외)
 -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 등이 결정된 자
- ※ 신고한 해외이주자·해외유학생의 경우 상기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입보가능

□ 보증의 운용

○ 보증은 특정채무보증*으로 운용

*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특정여신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불필요하며 이 경우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 보증의 성립

○ 보증약정은 채권자인 재단과 보증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증인으로부터 별개의 보증서를 받는 것으로 보증에 따른 피보증채무, 보증금액,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보증서를 받아야 함

○ 보증서는 본인확인 후, 자필서명을 받음으로써 보증효력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함

- 다만,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작성 및 제출은 『<별첨1>보증인 보증취급기준 3.보증인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 참조

□ 보증약정 유의사항

○ 채무자의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인과 보증약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보증인과의 법률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

○ 보증인의 의사확인

- 보증인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보증서를 받는 등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

○ 행위능력의 확인

- 보증인은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이어야 하나 부득이 한정자산자,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대상 및 사유

- 신고 및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한 해외유학자가 신고서 상의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학을 종료하고 귀국한 경우 기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해지

○ 해외유학자의 유학종료에 따른 입국 여부 확인

- 법무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출입국정보와 신고서 상의 유학계획종료일을 대사 또는 채무자로부터 입국확인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하여 입국사실 확인

바. 담보제공기준

□ 담보종류 및 담보인정비율

담보종류	정규담보 취득대상	담보인정비율
부동산	재단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금융기관예금	원화예금	납입원금의 100%
	신탁	납입원금의 90%
	외화예금	(납입원금*기준환율)의 80%

□ 담보권의 운용

담보제공자	피담보 채무의 범위	설정최고액	결산기
채무자	포괄근담보권	대출금액의 130% 이상	장래지정형
제3자	한정근담보권		

- 포괄근담보권 : 현재 및 장래의 재단과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 한정근담보권 :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특정종류의 거래에 의하여 정해지는 현재 및 장래의 1개 이상의 일정 중별 여신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 장래지정형 : 설정계약시에는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설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담보제공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 담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채무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제공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담보제공자와의 법률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
- 담보제공자의 의사확인
 - 담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본인임을 확인하고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
 - 설정계약서는 본인 확인을 하고, 자서날인을 받음아 담보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함
 - 다만, 본인의 자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재단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대필, 날인하고 본인의 우무인(右拇印)을 받음
- 행위능력의 확인
 - 담보제공자는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 이어야 하나 부득이 한정재산자,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담보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
- 금융기관의 예금 담보 취득 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예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징구하고, 담보제공자와 재단이 연서한 질권설정 의뢰서에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야 함
 - ※ 근질권설정계약서와 질권설정 승낙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 ※ 금융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직접 승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권설정의뢰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승낙서가 재단에 도착하면 유선확인 등의 방법으로 승낙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담보로 취득하는 예금은 증서의 점유여부에 불구하고 예금주, 계좌번호 등이 있는 당해 예금증서면 여백에 ‘00년 00월 00일, 00원 한국장학재단 질권설정’이라 기재

사.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임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전환절차

- 채무자가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과태료를 납부한 후 담보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 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 분할상환약정 최초 납입일 이전까지 보증인 입보가 미완료된 경우 분할상환약정 승인 거절

□ 분할상환 금액

-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는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할상환 전환시 전환대상 대출원리금은 징수처분비와 과태료를 제외한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전환)

□ 분할상환 종류 및 기간

- 분할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매월의 상환금액이 다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분할상환 기간 중 중도상환
 - 분할상환약정 후에도 대출원리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원리금만 줄어들고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

아. 신용유의자 등록 및 유예

□ 신용유의자 등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방식으로 상환되는 대출의 경우 이자 또는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유의정보 등록
 - ※ '12년 이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중 소득8분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 자('10년 대출자는 6~7분위도 해당)로 대출받은 경우



□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자. 사망자 및 심신장애자의 채무 면제

□ 사망자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처리

-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 상환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단에 상환의무 면제 신청.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할 수 있음
- 상환의무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진료소견서 포함),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가족관계증명, 상속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

차. 가계정 환급 처리

□ 가계정 잔액 발생 사유별 처리

- **(초과입금)** 등록금반환금이 입금시점에서의 대출원리금잔액보다 초과입금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학에서 입금결과(초과입금액) 확인 후 재단에 환급 요청
- **(고객환급)** 전산장애 등으로 고객계좌에서 이중 출금된 경우, 고객이 의무상환(국세청 가상계좌로 납부 필요)을 자발적 상환 방법으로 납부 하는 등 고객환급 사항 발생 시 고객 계좌로 환급처리
- **(수납 후 미상환)** 가상계좌를 통한 중도상환시 ‘원금방식’으로 입금된 경우 앞선 거래의 상환취소 등으로 인해 대출잔액 변동으로 수납 후 상환처리 불가한 경우 재단 등록된 고객 계좌로 환급 후 재상환 처리

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
 - (면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10년부터 취급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병역법 16조에 따른 현역병, 제 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 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면제 이자)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한 대출이자
 - ※ 다만,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 ※ 전역예정일 경과시 임의로 제외할 수 있음
 - 이자율 : 매학기 고시하는 변동 이자율 적용
 - (면제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면제
 - 병역정보 제공기관(병무청)을 통하여 이자면제 대상자 선정 및 면제처리

타. 사고채권의 처리(개인회생, 사망)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 되었을 경우, 재단은 국세청 의무상환 중단을 재개 요청
 - 동 사고채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서 의무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 처리 가능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상환의무가 규율
 -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



IV | 농어촌학자금 용자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관련 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사업 연혁

- ('94.06월) 교육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계획 수립
- ('94.09월) 한국장학회 학자금용자 집행 개시
- ('99.05월) 위탁기관 명칭변경(한국장학회 -> 한국학술진흥재단)
- ('03.12월) 담당부처 이관(교육부 -> 농림축산식품부)
- ('09.05월) 한국장학재단으로 업무이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 지원 방향

-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지원 규모(2016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목 표	1학기	2학기
인 원	42,000	25,200	16,800
금 액	96,000	57,600	38,400

2 사업 내용

가. 지원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용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①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 ② 2순위: 조부모
 -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지원 대학 범위

- 대학생은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③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은 학자금 대출 2. 성적 및 학점 기준을 참고



나. 대상자 선정

□ 지원 순위

-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순 위	자 격 요 건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 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분위 이하)
3 순위	▷ 특별 추천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 (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 이혼, 사별 포함
-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 특별 추천

-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후 재단으로 추천 (관련 서류 대학 보관 필요)

【특별추천 기준】

특별추천 대상자	추천 횟수	내 용
성적 미달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1학년 1학기 재학중 휴학 후 군입대로 인한 성적 미산출자도 추천 가능
이수학점 미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추천 방법 : 관리자 포털에 대상자 입력
- 추천 횟수 :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용자만의 특별 추천 횟수
- 재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추천자 심의 가능
- 특별추천 된 대상자는 1,2순위에 해당하더라도 3순위를 적용함
- 특별추천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충족, 소득조건 등)이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 선정 방법

○ 서류 확인 및 심사

-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전산자료,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대학에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을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 재단 내 심의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 상이하여 가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가능
-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심의 가능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름

다. 용자 조건

□ 용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 '최소 10만원이상' 용자 신청 가능

□ 용자 이율: 무이자

□ 용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용자 가능

- 용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용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용자횟수에 포함



구 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 (2·3년제)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4년제 대학	▷ 8회
기타 대학 (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놓여준 용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용자 수해 횟수 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용자횟수내에서 용자가 가능함.

라. 용자 제한

□ 제한 대상자

-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용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용자 제한

『용자 제한 대상자』
① 용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놓여준용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③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④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주1)} 등
⑤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⑥ 기 용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단, 상환해야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⑦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중복지원의 방지) *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는 생활비 대출도 제한됨

주1)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부당수혜 횟수	조치 사항
1회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2회	발견일 이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마. 신입생군 용자

□ 기 등록자 용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가능)

-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놓어촌학자금 용자 가능
- 용자금은 대학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계좌로 용자 가능
-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용자 지원 가능
-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 등록여부 판단
 - ※ 대학은 기 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업로드 및 업데이트 필요

□ 유의 사항

- 용자 실행 후 미등록 시, 용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용자 제한자로 분류 가능
- 용자 실행 후 대학 변경 시, 반드시 용자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대학으로 용자를 받고자 하면 재심사 후 지급 가능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시, 용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 학생이 추후 용자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3 신청방법 및 행정처리

가. 업무 처리 흐름도

대출단계	재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대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상담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발급 - 가구원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제출(서류 징구 대상자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진행 (농어촌지역여부, 농어촌지역 거주일수, 농어업종사자확인,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중복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농어촌지역여부, 농어촌지역 거주일수미만, 농어업종사자 확인,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중복지원 정보 보유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정보 보유자 등)
대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승인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승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계좌 잔액 이체 - 대학대표계좌로 대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실행확인 및 등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대표계좌 입금 확인 - 대출실행자 등록처리
사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위 이의신청자 관리 - 재대출 및 등록금 반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대출 등)

나. 신청 방법(학생)

□ 준비 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 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정은 불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 정보제공 동의현황조회
동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소득분위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가입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조회 불가하여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 그 외 자격은 시스템 확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시스템 확인 가능 (시스템 확인 불가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방해양수산청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 농업인 확인서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인 확인서

※ 농업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서류발급 기간은 약 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야 함.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 업로드

□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용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용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다. 대학 업무

□ 용자시행 안내 및 홍보

- 각 대학 소속 농어촌 학생들의 더 많은 용자 수혜를 위하여 용자시행 안내 및 홍보 요청 바람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 ‘관리자 포털’에서 용자신청 학생들의 등록금액 확정 후,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정보를 기한 내에 업로드 (※ 반드시, 업로드 기한 엄수)
- ※ 수납원장 등록 시 유의사항

- ① 업로드 기한 미 준수로 인한 용자제한 관련 책임은 해당 대학 귀책
- ② 신청정보,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의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년, 학적, 학과, 등록납부 대상 내용 등이 일치하여야 용자실행이 가능
- ③ 개인별 등록금액 확정 시 입력 및 등록하며 학생정보, 등록금 정보, 장학금정보 등을 입력
- ④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하여야 함



□ 대학 대표 수납계좌 등록

- 농어촌학자금 용자용(用) 학교 대표 수납계좌 등록 필수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재단으로 ‘공문 발송’ 필수
 - 공문발송 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을 별도 첨부

□ 특별 추천

- 재단의 본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대학에서는 성적 또는 학점 미달자를 대상으로 정상참작이 가능한 학생을 선정하여 대학 자체심사 후 관리자 포털에 입력
 - 특별 추천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재단 요청 시, 제출 필요
 - 특별 추천대상자는 재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 ※ 기간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 바람

□ 용자 금액 확인 및 등록금 대체

- 농어촌학자금이 대학계좌에 입금되면, 각 학생별로 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금으로 대체 (재단 → 대학 → 등록금 대체)

※ 협조 요청
- 농어촌학자금의 대학계좌 송금이 지연될 경우, 학생의 등록금 납입 기간 유예요청

라. 행정 관리

□ 소속대학(교)의 책무

- 농어촌학자금은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 등록금 대체 후 수혜자(학생)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
- 농어촌학자금 수혜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통지 하고 해당 금액을 상환
 -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교내장학금 등은 당 용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 조치(단,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 장학금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학, 자퇴 또는 퇴학한 학생 등에 대하여 용자금을 재단에 즉시 반환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통지
 - 기타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
 - ※ 용자실행 후, 상기 신청 또는 용자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용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 조치

- 학자금 수혜자의 학적변동시, 상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리자포털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매학기 고지
 - 변동사항 고지는 상시 가능하나, 재단은 관리를 위해 2월 졸업자는 4월부터, 8월 졸업자는 10월부터 대학에 요청 예정 (정확한 시기는 시기별 별도 공지)

□ 학생(수혜자)의 책무

- 학자금 용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용자 수혜자는 등록금 대체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용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용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용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용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용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용자 제한
- 학적 및 개인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및 변경
 - 자퇴, 휴학, 등의 학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서 기등록된 정보 확인 후 즉시 재단에 신고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4 용자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가. 반환 및 상환 방법

□ 학자금 용자 반환

-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 및 학생은 재단에 반환
 - 소속대학(교) : 담당부서는 재학 중인 용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중복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관리자포털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처리하고 반환사유, 반환금 등을 입력(서류 등 일체 미제출)’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이체 계좌 등록 또는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반환



□ 학자금 용자 상황

○ 졸업 등 학적 고지 (자퇴·제적 포함)

- 각 대학은 2월 졸업자는 당해 4월, 8월 졸업자는 당해 10월까지 학적업로드 가능 (정확한 시기는 학기별 별도공지)
- 학생은 졸업 등 학적을 재확인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에 고지
- 재단은 대학이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졸업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매학기 해당 대상자의 학적정보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 발생 시 입력필요
- ※ 학생이 졸업 등 관련 학적 변동사항을 기간 내에 확인 및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보유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상환스케줄을 생성함

○ 상환기간 설정

- 학자금 용자를 받은 자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익월)부터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생이 농어촌학자금을 수혜 받은 과거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스케줄 생성
 - 최초대학(교) 졸업 후 부여되는 거치 기간은 최대 2년 적용
-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 균등분할 상환이 적용되며, 이전의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유지
- 납부 기한 : 매월 27일까지

○ 상환 개시일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일 경우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당해 연도 8월 일 경우 : 당해 연도 9월 상환 개시
- 소속대학 폐교일 경우
 - 소속대학 폐교일을 졸업일자로 간주하여 폐교일 기준 2년 뒤 상환개시
 - 폐교월이 9월~ 2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3월 상환개시
 - 폐교월이 3월~ 8월 : 폐교일 기준 2년 뒤 9월 상환개시
 - ※ “농어촌학자금 상환에서 졸업 ”이란 대학 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 상환 납부 방법

- 자동이체 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로 통장 등록 후 이용 (제휴은행 가능)
- 제3자 자동이체 계좌
 - 제3자의 자동이체계좌 변경신청 및 차주의 동의 확인 후 제3자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 일회성 가상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 제3자 신청 시 일회성 가상계좌 발급가능
- 고유 가상계좌(고정식 가상계좌)
 - 개인 고유로 부여된 고유가상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

○ 상환 납부 방법 변경

-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좌 중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일 경우, 월별균등 상환방식으로 재단에 신청하여 약정내용을 변경 가능
- 단, 월별균등상환방식에서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으로는 변경 불가

○ 상환 총당 순서(순차적상환)

- 학자금 대출을 동일 학교에서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 지연배상금(연체 이자) 부과

- '16년 실행분 부터 만기경과 후 연체 기간별 차등(3%~9%)부과

구 분	만기경과~ 연체3개월이내	연체3개월 초과~ 연체6개월이내	연체6개월초과
적용금리	3%	6%	9%
비고	연체1구간	연체2구간	연체3구간

나. 상환 유예

□ 거치기간 연장

- 연장대상 : '10~'11년도 졸업자는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
 - '09년도 12월 이전까지의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으로 기존과 동일
 -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인한 자는 거치기간 없이 상환 원칙 동일



○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시간 : (영업일) 09:00 ~ 19:00

□ 상환기간 연장

○ 채무자가 해당 사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 재단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승인

【연장사유】 재난, 재해, 사고 및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유학, 임신, 지체 부자유자 등

※ 상환연장사유 발생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에 연장 가능

(가) 병역: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항 1호 및 제18조(현역의 복무) 2항에 의거 징집 소집 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 단,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기간으로 적용

※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만 적용되며 군휴학 기간은 최대 3년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군의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군 복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단,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

(나) 상급학교 진학: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 상급학교의 진학범위는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상급학교 진학이란 학사 취득 후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한 경우를 말함

(다) 유학: 재학증명서(영문), 비자 사본

○ 국외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하며 상급학교로 유학할 경우만 해당

- 어학연수자는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가 시행하는 연수일 경우 연장 가능

(라) 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 채무자가 임신 사유로 신청 및 서류제출 시 1년간 연장 가능

※ '14년도 이후 임신확인 및 출산자에 한함

(마) 사고 및 질병: 진단서 이외 기타증빙서류

- 병원치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연장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

※ 기타 증빙서류 : 전문의 소견서, 3개월 이상의 동일질환에 대한 외래치료 관련 영수증, 처방전 등

(바) 지체부자유자: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 최초 대출 수혜일자 이후 발생한 장애에 의해 1년 유예 가능, 이후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년 추가연장 가능

(사) 재단, 재해: 재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재해·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중 직접적인 재산 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재난극복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아) 징역 또는 수감: 판결문

-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징역 또는 수감 중인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복역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구류, 벌금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구속사유는 제외

□ 채무면제

- 사망: 사망한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한정승인 판결문 등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행정자치부 거주 정보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
- 재단이 채무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판결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장애: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장애 1급인 장애인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단, 대출을 받을 당시 해당 사유자일 경우 면제 불가)



다. 사후 관리 (연체 관리 등)

□ 연체 개월별 관리

○ 6개월 기준 : '16년 이후 연체발생 계좌(연체기준일 '16. 1. 1. 이후)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비 고
1개월~3개월 이전	연체 및 상환안내	채무자	상환안내
3개월~5개월 이전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통지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연체 6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
5개월~6개월 이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6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6개월이후~ 상환만기	신용유의 정보 등록결과 안내 및 최고장 발송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6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일 개별 SMS 발송

○ 10개월 기준 : '15. 12. 31. 이전 연체발생 계좌 등

- '15년까지의 연체발생 계좌, '10년~'11년 대출 및 무이자대여 계좌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비 고
1개월~4개월 이전	연체 및 상환안내	채무자	상환안내
4개월~8개월 이전	연체 및 상환안내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연체 10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
8개월~10개월 이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10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10개월이후~ 상환만기	신용유의 정보 등록결과 안내 및 최고장 발송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일 개별 SMS 발송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함

○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상환계획서 생성 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함
 - ※ 단,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6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3개월 해당 월 연체기산일인 27일)로부터 6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함

□ 신용회복지원

○ 분할상환약정제도 운영

- 분할상환 약정시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신용유의정보 해제하여 재기할 수 있는 신용회복 기회 부여
- 분할상환 기간 동안 채권 추심활동을 유보
- 약정 시 채무승인을 병행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법적조치 최소화

○ 소재불명(연락불가)자의 소재파악 방법

- 소관부처 및 행정자치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조회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Section 04

인재육성기부

chapter 1. 차세대 리더 양성	231
I.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232
chapter 2. 대학생 재능 멘토링	243
I.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244
II. 다문화 학생 멘토링	252
III. 대학생 재능 봉사	260
chapter 3. 기부금 사업	269
I. 기부금 사업	270

2016 한국장학재단 사업 정책

chapter | *1*

차세대 리더
양성

I.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I |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1 추진 현황

□ '10년 사업 시작 이후, 리더십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¹⁾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인재육성 사업²⁾으로 성장

- 1) 코멘트데이('10~'15), 리더십캠프('10~'13), 리더십콘서트('14~'15) 등
- 2) '15년까지 나눔지기 1,587명, 배움지기 13,077명의 배움지기 참여

□ '15년도는 사업 효과성 입증¹⁾,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²⁾, 제도 개선으로 활발한 참여³⁾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 시현

- 1) 참여 학생 대상 자체 조사 결과, 일반 대비 월등한 취업률* 확인
 - * 평균 취업률 73.9%: 일반대학생 전체 취업률 58.8% 대비 15.1%p ↑
 - * 대기업·공공기관 취업률 49.8%: 일반 대학생 대기업·공공기관 취업률 15.7% 대비 34.1%p ↑
- 2) 열린멘토링 도입, 리더십콘서트(국무총리 참석) 등 대규모 교육 안정적 운영
- 3) 나눔지기 교육 확대, 운영계획서 100% 제출 의무화, 모바일 소통 채널 도입 등

○ 또한, 활발한 의견수렴을 통해 나눔지기·배움지기 사전 교육 개선¹⁾과 선배 배움지기를 활용한 강연 등 개선점 및 아이디어²⁾ 도출

- 1) “연초 배움지기 팀장 교육이 좀 더 길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신규 나눔지기를 위한 기초 교육이 필요합니다.”(나눔·배움지기 온라인 설문조사, '15.12.31)
- 2) “선배 배움지기를 활용한 교육 및 연합 멘토링을 늘려주세요.”(총회, '15.12.2)

⇒ '16년은 교육의 내실화로 참여자 의견에 부응하는 한편, '15년 입증한 사업 효과성을 근거로 지속적인 성과 확산 필요

2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국가 재능기부 전문기관으로 도약
-----------	--------------------------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대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의 위상 정립 ◆ 사회지도층 멘토링의 모범 교육 체계 수립 ◆ PCIS(참여자, 콘텐츠, 기반제도, 공유) 관점의 안정적 운영
------------------	--

3대 추진 과제	1. 대표 멘토링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성과 발표의 장 마련 ② 인지도 높은 대형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③ 학회지 논문 게재 등 차별적 성과 발굴
	2. 모범 교육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간 멘토링 체계를 고려한 교육 체계 수립 ② 새내기 나눔지기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제공 ③ 열린멘토링 확대 시행 등 프로그램 내실화 ④ 나눔의 인재육성을 위한 나눔형 특별활동 지원
	3. PCIS관점 안정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참여자 지원 기준 개선(학점 기준 폐지 등) ② (C)멘토링 가이드북 표준화 및 발간 ③ (I)‘찾아가는 사무국 서비스’ 등 소통 기반 강화 ④ (S)성과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 등



3 중점 추진 사항

① 대한민국 대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의 위상 정립

- (성과 확산 선도 기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멘토링 성과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리더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대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인지도 높은 대형 교육 프로그램(코멘트데이, 리더십콘서트 등)의 안정적 운영
- (차별적 성과 지속 발굴) 외부 연구자 협업을 통한 학회지 논문 게재와 차별화된 사례 발굴 등 다각적 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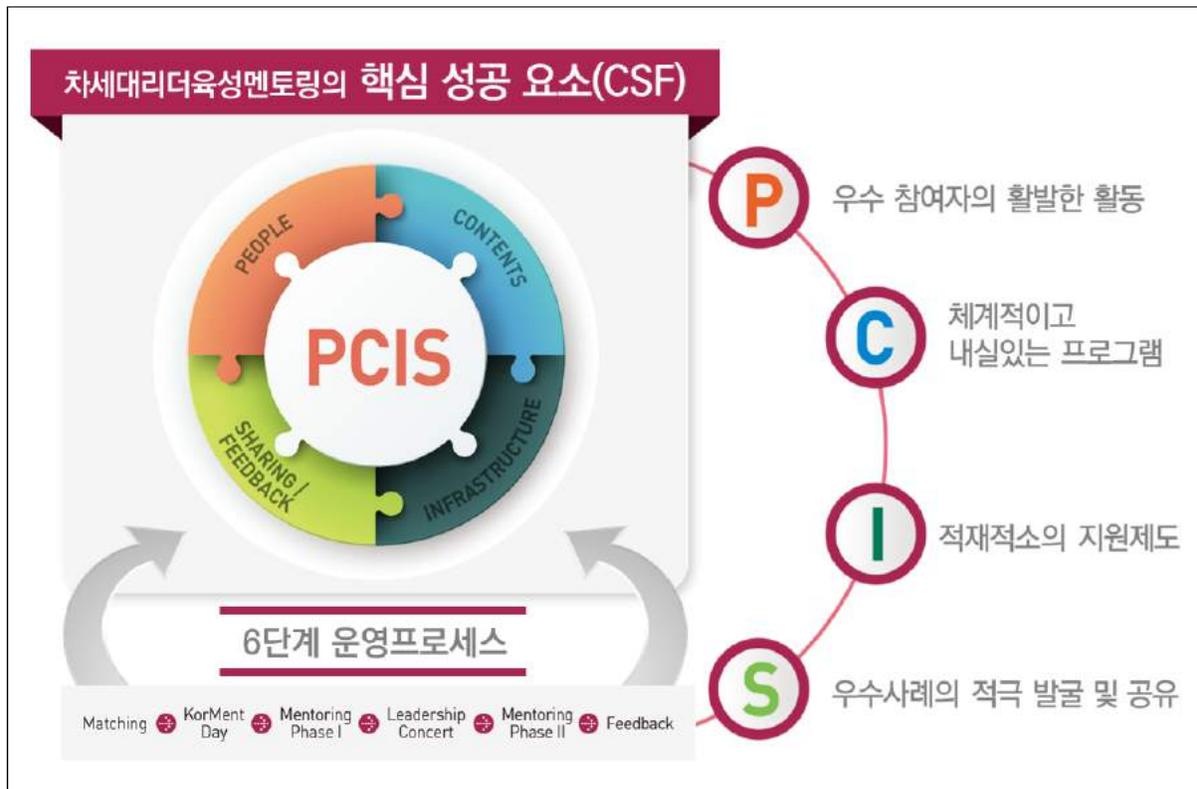
② 사회지도층 멘토링의 모범 교육 체계 수립

- (연간 교육 체계 수립) 1년 동안 운영되는 6단계 멘토링 체계*를 고려한 전략적인 인재육성 교육 체계 수립 및 운영
 - * 매칭 → 코멘트데이(발대식) → 1단계 멘토링 → 리더십콘서트 → 2단계 멘토링 → 피드백
- (참여자 맞춤형 교육 강화) 새내기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팀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팀 운영 노하우 공유
- (경력개발 프로그램 내실화) 배움지기가 다양한 나눔지기로부터 조언을 얻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프로그램* 내실화
 - * 열린멘토링(열린강의), 배움지기 선배 참여 강연, 나눔지기 연합멘토링, 사회공헌프로그램 등
- (나눔형(사회공헌) 특별활동 지원) 배움지기를 ‘나눔’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나눔형 특별활동’ 추가* 지원
 - * (당초,1개)배움형 특별활동 → (변경,2개)배움형 특별활동(유형 I), 나눔형 특별활동(유형 II)

③ PCIS(참여자, 콘텐츠, 기반제도, 공유) 관점의 안정적 운영

- (People, 참여자 선발 기준 개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 선발을 위한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 기준 개선
 - * 공무원·중소기업 대표·전문직 관련 세부 경력기준 수립, 활동횟수, 배움지기 만족 비율 등 과거 활동 결과를 가점요소에 반영('15.11.6, 멘토링운영위원회 승인)
 - ** 학업 축진이 아닌 인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멘토링의 궁극적 의미를 살리고자 학점 기준 폐지(B이상 →제한없음)
- (Content, 멘토링 콘텐츠 표준화) 나눔지기·배움지기 가이드북 표준화 및 발간

- **(Infrastructure, 소통강화 및 인재추천제 등 지원 확대)**
 - 나눔지기 간담회 및 ‘찾아가는 사무국 서비스’를 통해 소통 활성화
 -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에 대한 멘토링 지원 및 인재추천제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및 수혜자 확대 추진
- **(Sharing, 사업 공유자료 발간 및 홍보)** 우수 팀과 참여자를 소개하는 우수사례집 등 자료집 발간을 통해 사업 성과 공유 및 적극적 홍보





4 프로세스별 추진 계획

	프로세스	중점 운영사항	시행
1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지기 위촉 ■ 배움지기 선발 및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지기 세부 경력기준, 과거 활동 결과 등 가점요소에 따른 우수 나눔지기 위촉 - 배움지기 성적 기준 폐지 (B이상→제한없음) 	<p>1월</p> <p>2월</p>
2	운영 단계		
	■ 나눔지기 아카데미(교육)	- 새내기 나눔지기 맞춤형 교육 (연속 참여 나눔지기도 병행 실시)	3월
	■ 배움지기 팀장 교육	- 리더십 교육 강화 (당일 교육→1박2일 교육)	4월
	■ 코멘트데이(발대식)	- 참여자간 유기적 관계 구축	4월
	■ 멘토링 1단계	- 특별활동(나눔/배움형) 지원 (나눔형 특별활동 추가 지원)	4~7월
	■ 리더십콘서트	- 배움지기 역량 개발	8월
	■ 멘토링 2단계	- 경력개발 프로그램 내실화 (열린멘토링, 연합멘토링 등)	8~11월
3	평가 및 피드백		
	■ 찾아가는 사무국	- 직원 직접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연중
	■ 나눔지기 간담회	- 나눔지기 소통 기회 확대	연중
	■ 나눔지기 총회	- 연간 운영 보고 및 의견수렴 추진	12월
4	사후 관리		
	■ 수료증 발급	- 수료 요건 안내 강화로 수료율 제고	11~12월
	■ 인재 추천	- 연계 기관 지속적 확대	연중

가. 준비 단계

① 나눔지기 위촉

- 중점 사항: 강화된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나눔지기 유치
- 목표 인원: 300명 이내
- 위촉 절차: 나눔지기 후보 구성 → 심사 및 확정 → 정보 등록 등

〈위촉 세부절차〉

절차	내용	시기
① 나눔지기 후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기 활동 나눔지기 및 기관을 통한 추천 ○ 홍보를 통한 자발적 지원 ○ 배움지기 설문 조사를 통한 추천 	'15년 12월 ~ '16년 1월
② 나눔지기 심사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운영 위원 심사 및 이사장 최종확정 ○ 심사 내용 : 인물에 대한 종합 평가 진행 - 운영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대한 충족여부 및 우대요소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초로, 적정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나눔지기 최종 후보자 집단 구성 	'16년 1월 말
③ 정보 등록 및 운영 계획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지기 정보, 운영계획서 접수 및 등록 	'16년 2월 초

② 배움지기 선발 및 매칭

- 중점 사항: 지원자 학점 기준을 폐지하고, 희망 나눔지기를 3지망까지 축소* (기존 5지망) 하여 진행
* 전년도 5순위까지 의무 지망에 대한 불만, 4·5순위 지망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15 설문조사)
- 목표 인원: 2,400명 내외 (나눔지기 1인당 8명 내외 선발)
- 대 상: '16년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선발 제외대상〉

- i) '1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ii) '16년 대학(원) 수험생 지원 가능(다만, 불합격 시 선발 취소)
- iii) 기존 활동 배움지기 및 중도 포기자 (1기 ~ 6기)



○ 주요 선발절차

절 차	시 기	수행 방법
①신청	'16. 2월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②서류심사	'16. 2월	■ 배움지기 지원서 심사(80점) ■ 재단 사업 참여/사회소외계층 여부/ 봉사활동 등 가점 심사(20점) ※ 외부 심사기관 활용
↓		
③매칭	'16. 2월	■ 1 ~ 3지망 배움지기 및 나눔지기 매칭 ※ 매칭 시, 재단 임의배정 희망자는 활동지역 등을 감안하여 임의 매칭
↓		
④나눔지기 심사	'16. 3월	■ 서류 심사 또는 대면 면접* 진행(나눔지기 의사에 따라 진행) * 나눔지기 요청 시 사무국 심사
↓		
⑤합격자 발표	'16. 3월중	■ 최종 배움지기 선발자 발표

① 신 청: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② 서류심사: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합격 처리

③ 매 칭: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아래 2단계 매칭 진행

- 1단계: 배움지기의 지망 순위 기준 매칭

- 2단계: 사전에 '재단임의 매칭'에 동의한 배움지기를 대상으로 나눔지기-배움지기의 활동 지역을 고려한 추가 매칭

※ 2단계 매칭 결과 최소 요구 인원(8명) 미만의 배움지기가 배정된 경우 나눔지기는 비활동 나눔지기*로 분류하고 해당 배움지기는 불합격 처리. 단, 운영사무국과 나눔지기가 협의하여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운영
* 나눔지기풀로 관리하며, 중도 포기 나눔지기 발생 시 의사에 따라 멘토링 사업 참여

④ 나눔지기 심사: 매칭된 배움지기에 대한 나눔지기의 심사 실시

- 심사 위원: 나눔지기 또는 나눔지기 지정하는 인원

※ 나눔지기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무국이 별도 심사

- 심사 방법: 서면, 대면, 재단 위임(나눔지기 요청 시) 등

- 심사 결과: 나눔지기 당 8명의 배움지기 최종 선정

※ 나눔지기가 희망할 경우 사무국이 그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팀별 최소 6명 ~ 최대 15명 이내 선정

⑤ **합격자 발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최종 합격자 게시**

※ 포기의사 개선 등 원활한 멘토링이 불가능한 합격자의 경우 팀별 예비 합격자로 대체

나. 운영 단계

① 나눔지기 아카데미

- **중점 사항:** 사업 목적, 사업 진행 내용, 멘토링 기본 지도법, 우수 멘토링 사례 교육
- **대 상:** 제7기 나눔지기
- **주요 내용:** 프로그램 인재상 공유, 매뉴얼 및 가이드북을 활용한 멘토링 방법, 대학생 문화 이해, 상담 기법 등 교육

② 배움지기 팀장 교육

- **중점 사항:** 원활한 멘토링 활동을 이끌기 위한 팀장 리더십 교육
- **대 상:** 제7기 배움지기 팀장
- **주요 내용:** 멘토링 활동 필수사항, 팀활동 보고서 작성 등 팀장 역할 교육, 전기수 우수사례 공유 등

③ 코멘트데이(발대식)

- **중점 사항:** 나눔지기과 배움지기 간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멘토링 참여 요령 등을 교육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목표 수립	○ 목표 수립을 통한 팀별 Ice Breaking - 팀목표 수립, 경력개발 계획 수립·공유 등	목표 수립 Tool 활용
배움지기 오리엔테이션	○ 배움지기의 역량 개발 방안 교육 및 멘토링 수행 시 운영절차, 예의 등을 지도	교육매뉴얼등 활용
발대식	○ 나눔지기 배움지기 선언문 낭독 ○ 대표 나눔지기 위촉장 전달 및 배움지기 임명	
기타	○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 ○ 제6기 우수 배움지기 선발 및 우수사례 시상	

**4] 멘토링 1단계**

- 중점 사항: 멘토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나눔형·배움형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관계 형성 멘토링 시행	○ 상호 신뢰 관계구축 단계로서, 멘토링 가이드 및 초기 역량진단 제공	역량 모델 및 진단 도구
역량 강화 멘토링 시행	○ 코멘트데이에 수립한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이버강의 등 배움지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재단 리더십프로그램을 대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표준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 팀별 또는 개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연 8시간 이상)	팀별 자체 활동 등

5] 리더십콘서트

- 중점 사항: 배움지기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컨퍼런스 지원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멘토링 중간점검	○ 멘토링 1단계 개선점 발굴 및 멘토링 2단계 계획수립 지원 등	-
리더십 특강	○ 리더십 개발 성공사례, 리더의 성공노하우 등 강의	-
배움지기 역량개발 프로그램	○ 배움지기의 대학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6] 멘토링 2단계

- 중점 사항: 열린 멘토링 등 경력개발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역량 개발 맞춤 멘토링	○ 개인별 역량향상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진행 지원	역량 모델 및 진단 도구
역량강화 멘토링	○ ‘멘토링 1단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리더십콘서트에서 수립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멘토링 진행 지원	표준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특별활동	○ 현장학습, 기업탐방 등 특별활동 수행 지원 ○ 열린멘토링 등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 재단 리더십프로그램을 대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사회공헌 프로그램	○ 팀별 또는 개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연 8시간 이상)	팀별 자체 활동 등

다. 평가 및 피드백

① ‘찾아가는 사무국’ 및 나눔지기 간담회

- 중점 사항: 직원의 직접 방문으로 프로그램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진행하고 나눔지기 간담회 추진으로 소통의 기회 확대

② 나눔지기 총회

- 중점 사항: 나눔지기 우수사례 공유 및 나눔지기 의견 수렴 시간 확대 추진

구분	내용	비고
멘토링 활동 결과 평가 및 피드백	○ 멘토링 시작 시 배움지기 역량 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 사항 및 피드백 제공	역량 평가 및 피드백
	○ 배움지기 별 멘토링 활동 결과 평가	-
나눔지기 총회	○ 나눔지기가 모여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	-

※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성과 공유를 위한 별도의 종결식 개최 검토

라. 사후 관리

① 수료증 발급

- 중점 사항: 수료 요건에 대한 사전 독려 실시로 수료율 제고
- 수료 요건

	요건	세부 사항
1	성실한 멘토링 참여	팀활동보고서 기준 6회 이상의 멘토링 활동을 수행한 팀에 소속된 자로서 70%이상 참석*한 자 * 개인활동보고서가 제출되어 사무국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석 인정 ※ 소수점 이하 반올림 가능
2	리더십프로그램 참여 (2회)	코멘트데이, 리더십콘서트 참석 필수 ※ 리더십프로그램 불참시 적절한 사유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코멘트 사무국의 사전 승낙을 받은 자는 참여로 간주 ※ 재단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 대체 참석 인정(별도 공지)
3	나눔과 봉사정신 함양	연 8시간 이상 봉사활동* 수행 (증명서 제출 必) *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참여기간 중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지식봉사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
4	역량진단 수행 및 교육 이수	재단이 제공하는 역량진단 모두 수행 재단이 제공하는 역량개발 교육 이수

※ 수료기준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코멘트 사무국장 전결로 변동 가능(변경 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프로그램을 수료한 배움지기에게 향후 인재추천제 심사를 받을 자격 부여

② 인재 추천

- 중점 사항: 나눔지기로부터 추천받은 배움지기의 사회 진출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추천 대상: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재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배움지기로서 담당 나눔 지기가 추천한 자
 - ※ 그 밖에 연계기관의 요청 조건 등에 부합하는 자

2016 한국장학재단 사업 정책

chapter | 2

대학생 재능
멘토링

- I.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 II. 다문화 학생 멘토링
- III. 대학생 재능봉사



I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1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1-1 개요

가. 사업 목적

-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초·중·고등학생)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지역사회) 대학이 발굴 근로지에 우수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 (정부 및 사회) 사회적 지식 나눔문화 확산과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실천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제1항

나. 추진경과

구분	3기('13)	4기('13)	5기('14)	6기('14)	7기('15)	8기('15)
사업 예산	6,425백만 원		14,000백만 원		14,060백만 원	
나눔 지기	5,503명	9,529명	7,086명	7,023명	7,815명	6,829명
배움 지기	17,307명	33,645명	21,852명	21,069명	23,222명	18,186명
참여 대학	137교	161교	151교	150교	158교	161교
주요 사항	○신청방법 변경 - (기존) 개인·대학→재단 - (변경) 개인→대학→재단		○사업 명칭 변경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대상대학 제한 - 국가근로사업참여대학 한정 ○사업관리시스템 도입		○모바일 출근부 도입 ○우수나눔지기 제도 마련 ○방학 중 주당 활동시간 확대 ○최대활동시간 확대	

※ '15년 8기 실적은 '15년 12월말 기준으로 대학별 결과보고에 따라 변동 가능

다. 2016년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16년 3월 ~ '17년 1월
- 목표 인원: 나눔지기 12,000명(연 인원)
- 사업 예산: 14,060백만 원 (전년 동)

사업비	운영비
13,680백만 원 (전년 동)	380백만 원 (전년 동)

라.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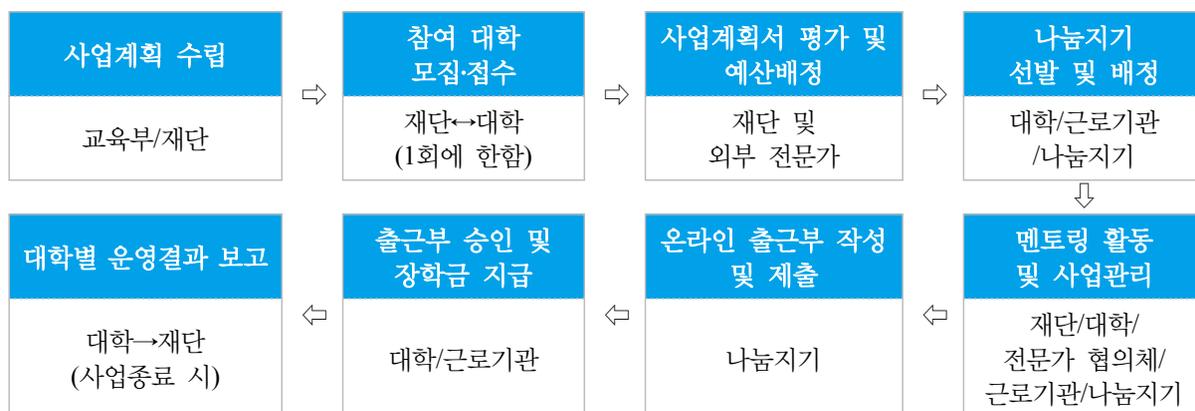
□ 활동내용

- 나눔지기가 배정된 근로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 소속의 배움지기와 멘토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시간당 국가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음

□ 지원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 시간당 9,500원*
-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추진(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운영 프로세스





1-2 세부 추진 계획

가. 참여대학 모집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기간 : '16년 1~2월 (연 1회)
- 대상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 대학
- 방법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을 통한 모집
 -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은 사업 운영계획서 新양식과 기존양식 중에서 제출 희망 양식을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 시스템’에 업로드
 - 사업종료 후, 사업 운영계획서 新양식 제출 대학 중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계획 대비 이행실적 우수대학을 선정 하여 포상 예정

나. 예산배정 [평가에 따른 합리적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배정 및 지급
 - 배정방법
 - (新양식 제출 대학) 사업 운영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사업계획 우수 대학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 신청액 전액 배정
 - (기존양식 제출 대학) 전년도 예산집행률에 따라 예산 차등 배정
 - 예산지급 : 상반기 60%, 하반기 40%
 - 하반기 40%에 대해서는 1학기 집행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2016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업무처리 기준 참조

다. 나눔지기 모집 [특별추천제 도입으로 사업참여 기회 확대]

- 선발기준
 - 기본요건 : 사업참여대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 멘토링 품질 향상과 연속성을 위해 기 사업 참여자 및 저학년 위주로 우선 선발 권장
 -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대학 내 자체 기준으로 심사하고,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특별추천제 도입)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대학(기관)담당자가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학이 승인한 경우, 성적기준 적용을 완화하여 대학생 특별추천 가능
 - 단, 동일 대학생의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학생포탈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선택 (신청기간은 대학별 자율 운영에 따름)

라. 근로기관 발굴 및 배정 [근로가능 기관 확대]

- 근로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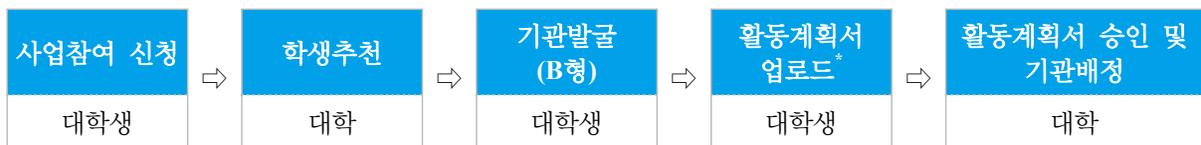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inf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지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발굴 및 배정 방법

- 발굴유형

구분	방법
대학 발굴형 (A형)	대학이 직접 기관을 발굴하여 선발된 학생을 해당기관으로 배정
나눔지기 발굴형 (B형)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 진행절차



※ 대학발굴형(A형) 신청자의 경우, 기관발굴 절차 생략

* 활동계획서는 발굴유형과 관계없이 필수 업로드

마. 멘토링 활동 및 사업관리 [대학 행정지원 및 근로가능 시간 확대]

□ 멘토링 활동

-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학습 동기부여 활동
- 놀이, 대화, 고민상담 등 사회정서발달 활동 및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생활습관 지도
 - ※ 이외에도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에서 선발한 활동 도우미에 한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 활동 가능(신규 나눔지기 조연, 사전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

**〈활동 도우미〉**

대상: 기 사업참여 나눔지기 또는 멘토링, 봉사활동 등 유경험자 우대
 규모: 일반 나눔지기 30명 당 1명
 ※ 활동 도우미의 사업운영 지원활동은 일반 멘토링 활동과 병행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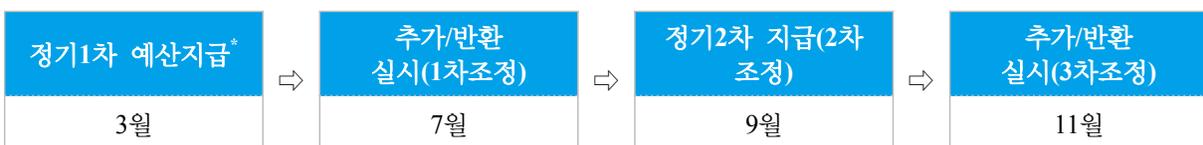
- 배움지기는 **근로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우선 선정 권장
 -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 유치원, 25세 이상 성인은 제외)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시간제한
 - 주당 최대활동 시간 확대: ('15년) 학기중 10시간, 방학 중 20시간 → ('16년)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 연초 시스템을 통해 대학별 제한시간 설정('16년 사업종료까지 변경 불가)
- 분 단위 활동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음
 -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에 따른 활동도 인정 안 됨

□ 사업관리

- (재단 역할) 전문가협의체 운영, 예산집행 점검, 사업현장지원
 -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교육부, 대학 담당자, 근로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지속 발굴
 - 예산집행 점검
 - 대학별 계획대비 집행(과부족)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 진행
 - 연간 총 3회 예정, 집행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간 사업 예산의 60%

- 사업현장 지원

방 법	내 용
전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및 활동시 안내사항 전달, 멘토링 활동현황 점검 • 활동 중 민원사항 접수 및 민원발생(부정활동) 신고처 안내
멘토링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활동 기관 현장점검 및 관계자 의견수렴 - 민원사항, 기관 환경, 활동내용 등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만족도 및 설문조사
대학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사업운영현황 점검* 및 의견접수 등 환류활동 진행 • 사전교육, 간담회 등 대학희망사항 지원

* 사업 관리감독이 미흡할 경우, 사업 예산 감액 및 참여 제한 등 가능

○ (대학 역할) 활동 도우미 운영, 나눔지기 관리, 예산 관리

- 활동 도우미를 활용한 나눔지기 관리 및 사전교육, 간담회 운영 지원

※ 구체적인 사항은 p.12 참조

- 대학에서는 중도포기자 및 대체선발자, 학적 변동자, 허위근로자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국고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 매월 장학금 지급액 및 예산 잔여액을 점검하여, 과도한 예산 불용 또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근로기관 역할) 나눔지기 인원 및 활동 관리

- 나눔지기과 활동 내용 및 장소에 대해 협의 후, 활동계획서 승인

- 나눔지기가 해당 근로기관 소속 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나눔지기에게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지시 불가

- 단, 멘토링 태도가 불성실한 나눔지기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또는 나눔지기의 소속 대학 담당자와 협의 후, 활동을 종료 시킬 수 있음

○ (나눔지기 역할) 출근부 관리, 부적합 근로 기관 및 수급자 제보

- 활동 후 5일 이내 멘토링 활동에 대한 출근부 입력 필수

- 근로기관의 부당한 활동 요구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 재단 또는 소속 대학으로 제보



바. 온라인 출근부 관리 및 장학금 지급 [장애요인 제거]

□ 온라인 출근부 제출

- (나눔지기) 학생포탈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
 - 활동 후 5일 이내 입력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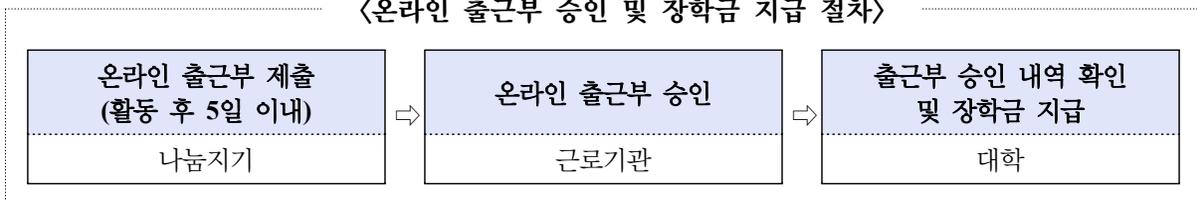
□ 온라인 출근부 승인 (기관관리자포탈 신규 도입에 따른 수기출근부 폐지)

- (근로기관) 기관관리자포탈을 사용하여 매월 나눔지기 출근부 승인
 - *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부 입력 기한을 초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담당자가 대신 입력하여 줄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 (대학) 근로기관에서 승인한 출근부를 근거로 장학금 지급
 - 지급일은 대학에서 정하며, 최소 학기별 3회 이상 지급 필수
 - 지급액 산정: “시간당 급여(9,500원) x 실제 활동 시간”으로 산정
 -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 출근부를 근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사후 지급하고, 최소활동시간을 채우지 못한 활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 원거리 활동자는 대학이 근로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근로 시간으로 인정 (월 최대 4시간, 1회 최대 1시간)
- 장학금 지급 절차
 - 대학은 근로기관이 승인한 온라인 출근부를 근거로 나눔지기의 학적변동 여부 및 지급계좌를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
 - 학적변동: 활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 당일 활동까지 인정되며, 변동 일 이후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계좌: 장학금은 학생이 사업참여 신청 시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해야할 경우 대학이 재단으로 전자공문 발송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장학금 지급 절차〉



사. 기타

□ 활동 인정 범위 확대

- 오프라인 사전교육, 대학별 나눔지기 간담회 등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 단, 해당시간과 학업시간표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시간인정 불가
 -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 안 됨

□ 고객 접점 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소통의 장 마련 및 의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
(주소 : cafe.naver.com/hellodcg)
- 사업내용 홍보를 위한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작(대학, 유관기관 등 배포)

□ 타 국가근로 장학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Ⅱ | 다문화 학생 멘토링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다문화학생) 초·중·고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대학생) 다문화 인식 및 나눔문화 제고 등 가치있는 근로기회 제공
- (정부 및 사회)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실천과 사회적 지식 나눔문화 확산

〈 사업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제1항

나. 추진경과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1,500	4,950	4,900	6,750	13,500	6,750
나눔지기	2,335명	3,736명	4,057명	4,888명	6,918명	4,784명
배움지기		4,071명	4,733명	4,784명	7,172명	5,288명
참여대학	13개	42개	47개	52개	82개	76개 대학
주요사항	○ 교육대, 사범대 중심	○ 재단 중심 사업 운영 - 참여대학전국으로 확대		○ 교육소외계층 수혜 확대 - 근로시간 단가 인상 - 사업관리시스템 도입		○ 참여자 사전 교육 강화 ○ 나눔지기 조력 프로그램 시범 운영

※ 2015년도 실적은 '15년 12월말 온라인 출근부 입력기준으로 대학별 결과보고에 따라 변동 가능

다. 2016년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명: 「다문화학생 멘토링」으로 변경
- 사업기간: '16. 3. ~ '17. 1.

라. 사업 내용

□ 활동내용

- 나눔지기가 배정된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교 소속의 배움지기와 멘토링을 진행 하고 시간당 국가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음
 - (주요활동) 교과목·놀이·예체능 학습지도, 진로·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학습 동기부여, 배움지기 학부모 사회 적응 지원 등
 - (참여인원) 나눔지기 4,000명 내외, 배움지기 4,500명 내외
 - (활동시간) 연간 120시간 내외,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이내
 - ※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450시간 이하

□ 지원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시간당 도시: 12,500원, 농어촌: 15,000원
 - 배움지기 소속 학교 주소 기준으로 도시, 농어촌 구분
 - 사전교육 및 특별활동은 도시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단, 배움지기의 개별 사유에 의한 활동 중단 시에는 지급가능)
- 우수 나눔지기 선발 및 다문화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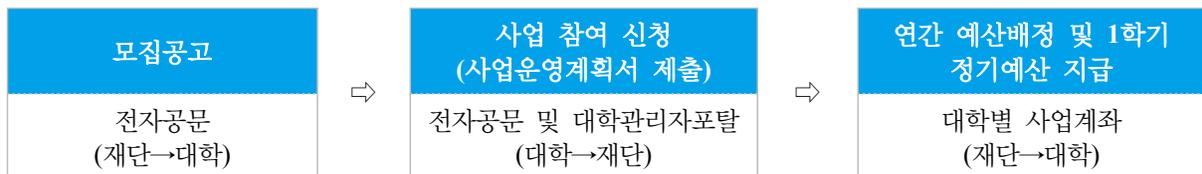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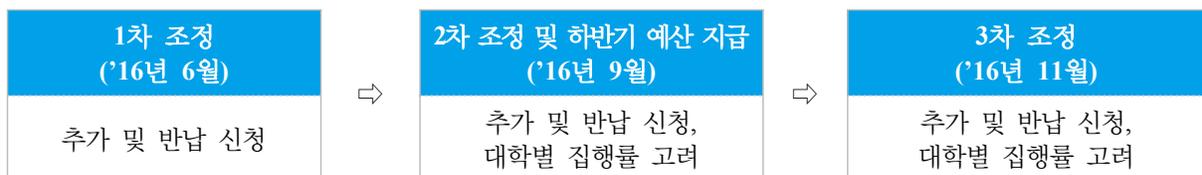
2 세부 추진 계획

가. 참여대학 모집·선정 및 예산 배정[장학재단]

- 기간: '16년 3월 초 (연 1회 모집)
- 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
- 신청 방법: 전자공문 및 '대학관리자포탈'을 통한 신청
- 선정 방법: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참여 대학 선정 및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배정 및 지급
 - (대학) 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운영계획서 제출
 - 사전교육 계획, 나눔지기 선발·관리계획, 장학금 지급계획 등 제출 필수
 - (재단) 대학의 운영계획서 및 전년도 집행률 검토 후 예산 배정 및 지급
 - ※ 예산 배정은 대학별 사업 참여 신청 종료 후, 별도 수립
 - (예산지급 방법) 상반기 60%, 하반기 40% 연 2회 지급
 - 하반기 40%에 대해서는 1학기 집행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
 - 사업전용계좌 사용 필수



- (예산관리 방법) 대학별 멘토링 운영 현황에 따라 추가·반납 예산 신청 접수 후, 대학별 집행률을 반영하여 배정 예산 조정



〈참고〉 사업 참여자별 이용 시스템

- 대학 담당자 :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http://eduman.kosaf.go.kr>)
 - 이하 '대학관리자포탈'이라 함
- 나눔지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이하 '학생포탈'이라 함

나. 나눔지기 선발[대학]

□ 선발기준

- **기본요건:**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 1인 이상 추천필요**
 -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 * 우수 나눔지기, 전년도 사업 참여자, 다문화 교육 이수자, 농어촌 멘토링 지원자 우대
-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참여대학이 공지**를 통하여 나눔지기 신청 접수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정서 함양 및 진학지도 등 역할 수행에 적합한 학생 등 **대학 내 자체 기준으로 심사**
-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은 선발된 나눔지기를 **‘대학관리자 포탈’에 등록**
- 선발된 나눔지기는 ‘학생포탈’를 통해 **참여 신청 및 사전교육 이수 필수**
- 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중복 참여 제한

다. 배움지기 선발[시도교육청]

□ 선발기준

- **기본요건:**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멘토링 참가 희망 학생을 선발**
 - * 다문화·탈북 결손가정(한부모·조손가정 등) 자녀, 기초학력 미달학생, 예비학교 과정 이수 후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 우선 선발
 - * 타 다문화교육 서비스 수혜자의 선정 지양
- 시·도 교육청은 선발 명단(공문), 멘토링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취합하여 재단에 통지(이메일 접수)
- 재단은 **‘대학관리자포탈’에 등록하여 매칭 준비**

라. 나눔지기·배움지기 매칭[시도교육청, 대학협의체]

□ 매칭방법

- 시·도 교육청 및 대학 협의체¹⁾를 구성하여, 선발된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1:1 매칭 후 대학이 매칭 결과를 **‘대학관리자포탈’에 등록**
 - * 지역, 성별, 전공 등을 고려해서 매칭 (1:1 또는 1:多, 과도한 1:多 매칭 지양)

1) 시·도 교육청 및 소속지역 대학교 연계망을 구성하여 나눔지기·배움지기 매칭, 나눔지기·배움지기 담당교사 사전교육 운영, 멘토링 모니터링,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 시도교육청, 대학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 지역 거점대학 선정하여 운영. 거점대학 운영비 지원



마.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 담당교사 사전교육[시도교육청, 대학협의체]

□ 사전교육 방법

-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멘토링 활동을 위해 시·도 교육청 및 대학 협의체 주관으로 나눔지기 및 배움지기 담당교사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프로그램 취지 및 운영방법에 대한 배움지기 담당교사 사전연수를 강화하여 배움지기 담당교사의 멘토링 관련 업무처리 능력 제고

□ 사전교육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 이해, 안전교육, 멘토링 계획서 작성, 우수 나눔지기를 통한 사례 공유, 출근부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방법
- 지원: 사전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 운영 가이드 제공

바. 멘토링 활동 및 사업관리

□ 멘토링 활동

- 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 ※ 이외에도 배움지기 소속학교·대학나눔지기가 배움지기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배움지기 소속학교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나눔지기는 사전 미팅을 통해 배움지기에 적합한 **연간 멘토링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움지기 담당교사에게 검수 및 제출
- 배움지기는 **참여학교에 소속된 다문화·탈북 학생**으로 기초 학력 미달, 예비학교 이수 후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타 다문화 교육서비스 미혜택자를 우선 선발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배움지기 **학교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 단, 사전에 배움지기학교·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시간제한
 -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음

1일 최대	단체특별 활동	주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 안 됨
- ※ 연간 활동 시간 **최소 10시간 이상**, 120시간 내외, **최대 450시간 이하**

□ 사업관리

○ (재단 역할) 멘토링 활동관리, 대학운영 현장 지원

- 멘토링 활동관리

- 대상: 대학 담당자, 배움지기학교 담당자, 나눔지기
- 방법 및 내용

방법	내용
전화조사	· 유의사항 및 활동시 안내사항 전달, 멘토링 활동현황 점검 · 활동 중 민원사항 접수 및 민원발생(부정활동) 신고처 안내
현장방문	· 멘토링 활동 기관 현장점검 및 관계자 의견수렴 · 민원사항, 기관 환경, 활동내용 등
설문조사	· 사업 참여 만족도 및 설문조사

- 대학운영 현장지원

- 대상: 2년 연속 사업 참여 대학과 신규 참여대학 중 일부 선정
- 방법 및 내용

방법	내용
현장방문	· 선발관리, 활동관리, 지급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점검 · 대학 담당자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 추후, 점검 및 의견 접수 사항에 대해 환류활동 진행

※ 사업 관리감독이 미흡할 경우, 사업예산 감액 및 참여 제한 등 가능

○ (대학 역할) 나눔지기 관리, 매칭, 학적 관리, 예산 관리, 출근부 관리, 나눔지기 사전교육

- 사전교육(연 1회 이상), 멘토링 모니터링, 특별활동은 거점대학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 나눔지기 관리, 간담회 운영 지원
- 대학에서는 중도포기자 및 대체선발자, 학적 변동자, 허위근로자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 매월 장학금 지급액 및 예산 잔여액을 점검하여, 과도한 예산 불용 또는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멘토링 종료 한달 전, 종료 예정일을 나눔지기 학교에 통보

○ (시·도교육청 역할) 배움지기 선발, 매칭, 나눔지기 및 담당교사 사전교육

- 초·중·고등학교 협의를 통해 멘토링 참가 희망 배움지기 선발
- 사업기간 중 배움지기 변동사항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수행
- 대학협의체와 공동으로 선발된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간 매칭 진행



-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멘토링 활동을 위해 대학협의체와 연계하여 나눔지기와 배움지기 담당교사 사전교육, 멘토링 모니터링,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 ※ 거점대학과 긴밀한 협의 요청

○ (배움지기 학교 역할) 배움지기 인원 및 멘토링 활동 관리

- 나눔지기와 활동 내용 및 장소에 대해 협의 후, 활동계획서 검토
- 나눔지기 멘토링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지도
- 나눔지기 사전미팅시, 배움지기의 특징 및 멘토링 방향 논의, 교내 멘토링 장소 안내
- 나눔지기에게 교내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지시 불가
- 단, 멘토링 태도가 불량한 나눔지기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또는 나눔지기의 소속 대학 담당자와 협의 후, 활동을 종료 시킬 수 있음
- 나눔지기에 대해 성범죄기록 조회

○ (나눔지기 역할) 성실한 멘토링, 불량 근로기관 및 부당 수급자 제보

- 사전교육 필수 참여, 지역별 간담회 참석으로 멘토링 운영 안내 사항 숙지
- 근로기관의 부당한 활동 요구를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 부당 수급 사례를 목격한 경우, 재단 또는 소속 대학으로 제보

사. 출근부 관리 및 장학금 지급

□ 온라인 출근부 등록 및 수기 출근부 제출

- (나눔지기)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출근부 등록 및 수기 출근부 별도 작성
- 활동 후 5일 이내 입력 필수

□ 수기 출근부 승인

- (근로기관) 담당교사가 멘토링 활동시간 확인 후 수기 출근부 승인
-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멘토링 활동은 나눔지기가 배움지기 학부모 및 배움지기 학교 담당교사(센터 담당자)가 확인

□ 온라인 출근부 승인

- (대학)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 출근부를 대사한 후 온라인 출근부 승인

□ 장학금 지급

○ (대학) 승인된 출근부를 근거로 **매월** 장학금 지급하고 사업 시작 전에 지급 시기를 나눔지기에게 공지해야 함

- 지급액 산정: 「시간당 급여²⁾ x 실제 활동 시간」으로 산정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출근부를 근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사후 지급하고, 학기당 10시간미만 활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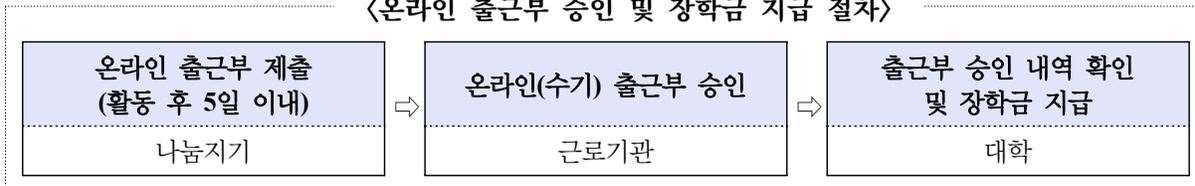
○ 장학금 지급 절차

- 대학은 승인된 온라인 출근부를 근거로 나눔지기의 학적변동 여부 및 지급계좌를 확인한 후 장학금을 지급

• 학적변동: 활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 당일 활동까지 인정되며, 변동일 이후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계좌: 장학금은 학생이 사업참여 신청 시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해야할 경우 대학 담당자가 ‘대학관리자포탈’시스템에서 변경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장학금 지급 절차〉



2) 도시 12,500원, 농어촌 15,000원 (배움지기 소속학교 주소기준으로 도시,농어촌 구분)
- 사전교육 및 특별활동은 도시기준 장학금 지급액 지급



Ⅲ | 대학생 재능 봉사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나눔지기) 봉사활동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대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적 리더십 배양**에 기여
- (배움지기)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인교육의 장** 제공
- (정부 및 사회)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사회적 재능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재단) 수혜자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사업 차별화** 도모

〈사업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제1항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정과제 46(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이행

나. 추진 경과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사업예산	251	1,215	1,564	2,097	2,097	1,920
나눔지기	985	2,561	5,619	6,112	6,312	4,234
배움지기	4,013	6,670	14,068	15,688	21,889	11,515
참여대학	22개	32개	45개	51개	57개	52개

※ '15년 캠프로 사업 전면 재편

다. 2016년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 기간: '16. 7월 ~ '17. 2월(방학 중 운영)

	13기	14기
하계방학	'16. 7월 ~ '16. 8월	동계방학 '16. 12월 4주 ~ '17. 2월 3주

□ 사업 예산: 1,920백만 원(전년 동)

사업비	운영비
1,720백만 원(전년 동)	200백만 원(전년 동)

라. 사업내용

□ 참여가능 대학 (별첨1 참고)

- 업무협약 체결 대학(2016년 4월 기준, 가톨릭대학교 등 72개 대학)

* 캠퍼스 구분 시 119개 대학

- 교육 소외지역 수혜범위 확대 및 특성화캠프(예·체능계)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한 참여대학 추가 가능

□ 참여대상

- (나눔지기) 사업 참여 대학 소속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4,200명 내외
- (배움지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재학생

□ 봉사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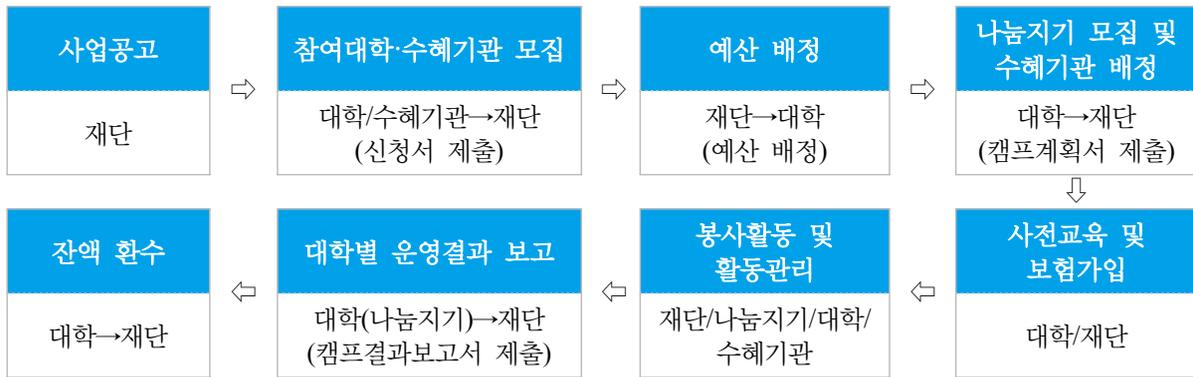
- 교과목 학습 지도, 진로·고민 상담 및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등 저소득층 가정 배움지기를 위한 맞춤형 방학 캠프(4일 이상)
 - (특성화캠프) 예·체능 및 다양한 주제로 창의적 활동을 체험하는 캠프
 - (어울림캠프) 배움지기 맞춤형 학업집중 및 진로상담 캠프
 - (국가장학생봉사캠프)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참여하는 사회봉사 캠프
 - (KOSAF캠프) 국가우수 장학생이 참여하는 교육 소외지역 대상 캠프

□ 지원사항

-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금 지원(4일~6일 30시간, 7일 이상 50시간)
 - 교재교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38만원(7일 이상 진행 시 58만원)
 - * (4일~6일) 나눔지기 35만원+대학운영비 3만원, (7일이상) 나눔지기 55만원+대학운영비 3만원
- 우수사례 공모·시상을 통한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업 배움지기 선발 시 우대
- 재단 이사장 명의의 봉사활동확인서 발급(홈페이지 출력 가능)



□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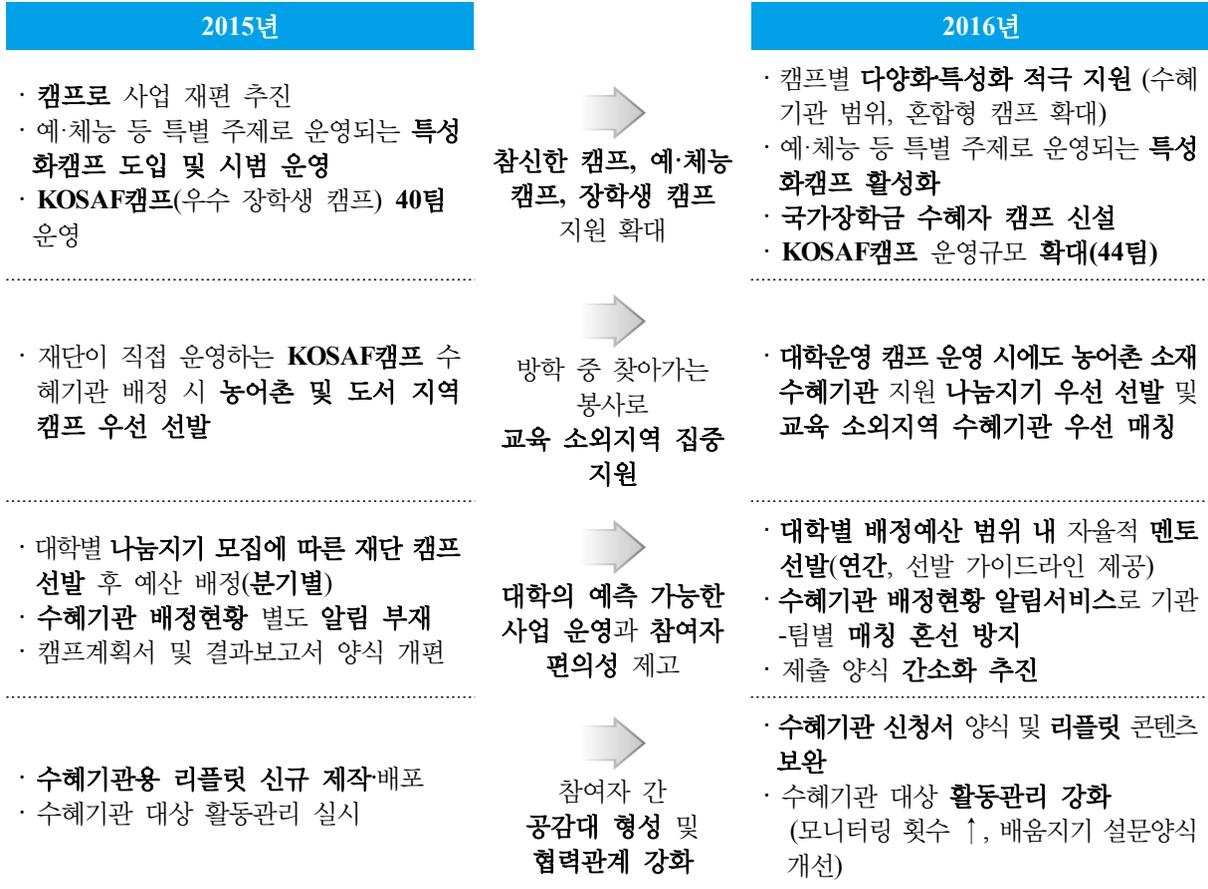


□ 참여 주체별 역할



2 세부 추진 계획(안)

< 2016년 대학생 재능봉사사업 주요 추진 방향 >



가. 참신한 캠프, 예·체능 캠프, 장학생 캠프 지원 확대

□ 수혜기관 및 활동장소 범위 확대

○ 창의적 활동 기획을 위한 운영기반 조성으로 캠프 다양화 및 지역사회 특성 반영

기 준('15년)		개 선('16년)	
참여가능 기관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및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참여가능 기관	미등록 기관일 시, 캠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참여 가능

☞ 수혜기관 범위 확대를 통한 군부대 봉사팀, 산재근로자 자녀 캠프 등 특수 캠프 장르로 팀별 참신성 있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형태의 캠프 지원
 * 수혜기관 방문 캠프(유형1) 및 대학교 초청 캠프(유형2) 캠프 외 기타 장소에서 진행되는 혼합형 캠프 확대 추진('15년 혼합형 캠프 15팀 추진, 전체 캠프의 3.1%)



□ 특성화캠프 활성화

○ 학습 중심 멘토링에서 탈피하여 방학기간 중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성화 캠프 및 예·체능계 장학생 선발 목표 비율 설정

기 준('15년)			개 선('16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캠프구분	특성화	대학 운영 (자율)	특성화	대학 운영 (특성화 캠프 50% 이상)	재단 운영 (예·체능계 장학생 전체인원의 10% 이상 선발)
	어울림		어울림		
	KOSAF	재단 운영	KOSAF		
→ '15년 캠프 재편으로 특성화 캠프 시범운영 * 캠프 주제 간 비율 지침 없이 대학 자율에 따라 프로그램 기획			→ 특성화 캠프, 예·체능계 장학생 선발 목표 비율 설정 및 목표 달성 대학은 차년도 예산 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		

☞ 특성화 캠프의 활성화를 통해 학업 중심의 타 멘토링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독자성 확립 및 수혜자(배움지기)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적 제공

□ 국가장학생 캠프 신규 추진 및 재단 운영 KOSAF캠프 확대 운영

○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참여하는 사회봉사 캠프 신규 추진

- 기수별 10팀의 '국가장학생봉사단'을 운영(연간 20팀, 140명 규모)

○ 국가우수 장학생의 사회봉사 캠프 확대(연간 44팀, 기수별 22팀 운영)

- 계열별 안배, 기참여자 우대를 통한 노하우 공유로 캠프별 다양성, 운영 효율성, 봉사활동 지속성 제고

기 준('15년)		개 선('16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운영규모	40팀	운영규모	44팀(10% ↑)
선발주체	우수취업장학지원부	선발주체	교육기부사업부
선발기준	장학금별 비율조정 없음	선발기준	장학금별 안배, 기참여자 우대, 산식화
대상장학금	대통령과학, 우수(인문, 이공계)	대상장학금	대통령과학, 우수(인문, 이공계, 예·체능)
활동비 지급	동일 기수 일괄 지급	활동비 지급	팀별 캠프 일정에 따른 분리 지급
중도포기자	활동비 환수	중도포기자	사유서 징구 및 활동비 환수

☞ 국가 장학생들에게 나눔봉사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봉사 품질 향상 도모 및 교육기부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나. 방학 중 찾아가는 봉사로 교육 소외지역 집중 지원

□ 대학운영 캠프 선발 가이드라인 제공

○ 업무처리기준 내 나눔지기 선발 및 수혜기관 배정 지침 수립

- 교육 소외지역 수혜기관(농어촌 및 도서 지역 소재) 지원 나눔지기 및 캠프 우선 선발로 방학 기간 중 4일 이상 진행되는 캠프형 봉사활동의 강점을 적극 활용
- (농어촌 기준 명시) 읍/면 단위 행정구역 소재 소혜기관

기 준('15년)		개 선('16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나눔지기 선발	별도 재단 지침 없이 대학 자율에 따라 나눔지기 선발 및 수혜기관 매칭	나눔지기 선발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지원 나눔지기 우선 선발
수혜기관 배정		수혜기관 배정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소재 수혜기관 우선 배정

☞ 재단운영 캠프(KOSAF캠프)*뿐 아니라 대학운영 캠프도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소외지역 지원 체계 강화

* KOSAF캠프의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 필요 기관을 추천받아 운영 중

다. 대학의 예측 가능한 사업 운영과 참여자 편의성 제고

□ 나눔지기 선발 절차 개선

○ 대학별 연간 배정예산 범위 내 멘토 선발

- 신청수요 증가에 따라 대학별 가능 멘토 인원을 조기에 확정하여 원활한 나눔지기 선발 및 수혜기관 배정

☞ 연간 예산 선배정에 따른 재단의 대학별 예산 비율 조정*, 운영규모 예측, 나눔지기 선발기간 연장 효과로 중도포기자 감소 및 예산 집행률 제고

* 대학별 전년도 예산 집행률, 활동비 반납기한 준수 등 운영결과를 고려하여 예산 조정

□ 수혜기관 배정현황 알림 서비스 제공

○ 수혜기관 배정현황 공지로 기관-팀별 매칭 혼선 방지

- 나눔지기(팀)-수혜기관 매칭 단계에서 현황 알림 부재에 따른 상호 간 혼선 및 불편함 발생에 따른 조치
- (수혜기관) 나눔지기 팀과 매칭이 완료되는 즉시 재단으로 매칭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담당자 협조 필요
- (대학) 매칭 현황 알림 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나눔지기 홍보 협조 필요



기 존('15년)		개 선('16년)	
수혜기관 배정	수혜기관 배정 현황 별도 알림 부재로 매칭완료 기관에 매칭을 시도함에 따라 대학(나눔지기)와 수혜기관의 불편함 초래	수혜기관 배정	캠프 모집기간 중 수혜기관으로부터 매칭결과를 실시간 수렴하여 재단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에 주기적 게시

☞ 매칭 현황 알림 부재로 인하여 상호 간 발생하는 번거로움 해소로 참여자 편의성만족도 향상

□ 캠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선

- (중복참여 제한) 동일 기수 내 나눔지기 1인의 2개 이상 캠프 중복참여 제한
 - 대학별 수요 증가에 따른 형평성 강화로 많은 나눔지기에게 균등한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
 - * 동일 기수 내 재단운영 KOSAF캠프 참여 나눔지기의 대학운영 캠프 참여도 제한
- (대학 활동관리 강화) 대학 현장점검 캠프 수 전체 캠프의 50% 이상 권장
 - 현장점검 캠프 수 권장 비율을 제시하여 캠프 안전 및 대학 운영비 집행 관리 강화
- (대학 운영비 집행 항목 추가) 대학 운영비 사용처를 세분화하여 제시
 - 사용처 항목 추가 및 적절한 운영비 집행 예시를 제공하여 운영비 집행 관리 및 대학 책무성 강화
- (활동완료 기준시간 산정) 캠프 일수별 최소 활동완료 기준시간 산정 시 오프라인 사전교육 시간 미포함(4~6일 캠프 30시간, 7일 이상 캠프 50시간)
 - 상세 기준을 추가하여 기준 미비사항 보완
- (제출 양식 간소화) 대학 및 나눔지기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출 양식 개선
 - 참여자 편의를 고려한 제출 양식 간소화로 멘토링 효율성 제고

기 존('15년)		개 선('16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중복참여 제한	배움지기(수혜자) 중복 참여 불가	중복참여 제한	동일 기수 내 나눔지기 1인이 2개 이상 캠프 참여 불가 ※ 배움지기 참여 제한은 완화 (2개 이상팀 참여 가능)
대학 활동 관리 (현장점검) 강화	대학별 자율 운영	대학 활동 관리 (현장점검) 강화	전체 캠프 중 50% 이상 현장점검 권장
대학 운영비 집행 항목 추가	사전교육비, 보험료, 모니터링	대학 운영비 집행 항목 추가	사전교육비, 보험료, 활동관리 항목 외 면접비등 나눔지기 선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항목 추가
활동완료 기준시간 산정	사전교육 시간 관련 기준 미포함	활동완료 기준시간 산정	오프라인 사전교육 시간 제외 산정 내용 추가
제출 양식	봉사 품질 관리를 위한 캠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개편	제출 양식	중복 항목 재정비 등 양식 간소화 추진

☞ 전년도 캠프 재편 시범 운영결과를 토대로 한 지침 미비사항 보완 및 제반사항 재정비로 사업 체계화내
실화 추진

라. 참여자 간 공감대 형성 및 협력관계 강화

□ 수혜기관 대상 안내 강화

○ 사업소개 및 협조사항 안내 보강

- 수혜기관 신청양식 및 리플릿 개선, 캠프 진행 시 활동관리 강화

기 존('15년)		개 선('16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리플릿	신규 제작 배포	리플릿	사업소개 및 협조사항 안내 내용 개선
활동관리	전화안내 1회, 전체 배움지기 대상 설문 실시	활동관리	전화 안내 2회 및 스크립트 보완, 배움지기 설문 양식 개선

☞ 수혜기관 사업이해 및 협조 도모로 재단-수혜기관-대학 간 협력체계 강화, 수혜기관 협조에 따른 대학 및 나눔지기 만족도 향상

□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및 나눔지기 참여도 개선

○ (유관기관) 유관기관 담당자 협의체 운영

- 참여자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설명회 정기적 운영 및 참여 기관 확대

○ (나눔지기) 나눔지기 교육·홍보 강화 및 참여 폭 확대

- 우수 콘텐츠 공유(포토북, 홍보동영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기 존('15년)		개 선('16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무협의체	신규 위원 구성 및 정기운영	실무협의체	참여기관 확대 구성 및 정기운영 * 수혜기관 참여 확대 유도
나눔지기 홍보	커뮤니티 신설	나눔지기 홍보	우수 콘텐츠 공유(포토북), 커뮤니티 활성화

☞ 사업의 중·장기적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참여자별 소통의 장 마련, 사업 홍보 및 활성화



3 환류활동

□ 기수별(하계/동계) 활동관리 계획 수립

- 목적: 캠프활동을 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환류평가를 통한 개선점을 도출
- 기간: 연중 상시
- 대상: 나눔지기, 배움지기, 대학 및 수혜기관 담당자
- 주요내용: 현장방문, 설문조사, 간담회 개최 등

〈 2016년 대학생 재능봉사(캠프)사업 활동관리 주요사항 〉

구분	대상	내용	일정	방법
아웃 바운드	나눔지기 팀장, 수혜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활동현황 점검 • 활동 중 민원사항 접수 • 활동 유의 및 안내 사항 전달 	하계 및 동계 캠프활동 기간	파견직원 활용
고객 제보처 운영	나눔지기, 배움지기, 대학 및 수혜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문의 실시간 응대 및 의견 수렴 	연중 상시	파견직원 활용
현장방문	권역별 캠프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활동현장 방문 • 활동 현황 점검 및 나눔지기 인터뷰 등 	하계 및 동계 캠프활동 기간	재단 담당자 방문
만족도 및 설문 조사	나눔지기, 배움지기, 대학 및 수혜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 만족도 및 설문 조사 	하계 및 동계 캠프활동 종료 이후	설문조사 시스템, 서면
커뮤니티	나눔지기, 수혜기관 및 대학 담당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소개 및 공지 안내 • 실시간 문의 응대 체계 확립 • 프로그램 사례 및 노하우 공유 • 우수사례 수상작 공유 	연중 상시	페이스북 및 네이버 카페 활용
간담회	KOSAF캠프 나눔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하계 및 동계 캠프활동 종료 이후	오프라인

- 향후계획: 참여자 의견수렴을 통한 환류평가 결과를 차년도 제도 개선 시 반영

2016 한국장학재단 사업 정책

chapter | 3

기부금 사업



I | 기부금 사업

기부금사업 〈푸른등대〉



내일은 향한 청년들의 푸르른 여정,
푸른등대가 밝게 비춥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빈곤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부금 사업 푸른등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을 비추는 기부
푸른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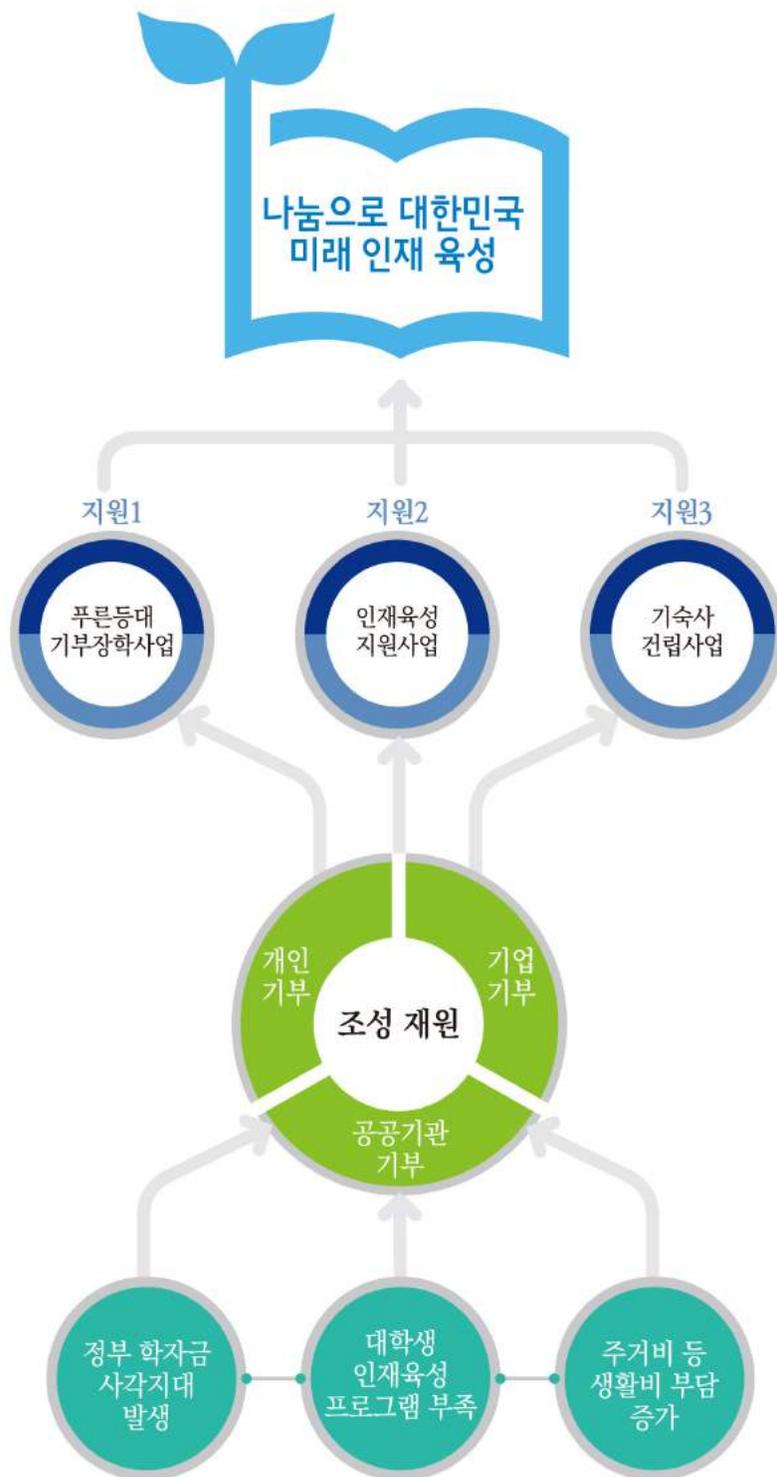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꿈을 향해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꿈의 길을 비추는 푸른등대입니다.



희망찬 대학생과 대학생의 꿈을 상징합니다.



등대에서 뻗어나가는 빛으로 청년을 푸른 미래로 안내하고,
희망을 전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의미합니다.





푸른등대 사업 안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 ○
웅크렸던 가슴을 짝 펴고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합니다.

01 아르바이트에 지친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생활비 장학금
정부의 맞춤형 등록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장학금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등록금 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정부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에 따른
등록금 잔여액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

02 세계로 나아가 유망주로 키워 드립니다.



• **꿈·끼 실현 프로그램**
기부처 사회공헌 방향을 고려하여, 대학생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생이 사회지도자층 인사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시 초·중·고교생에게 지식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숙사 건립 사업

03 엄마 품같이 따스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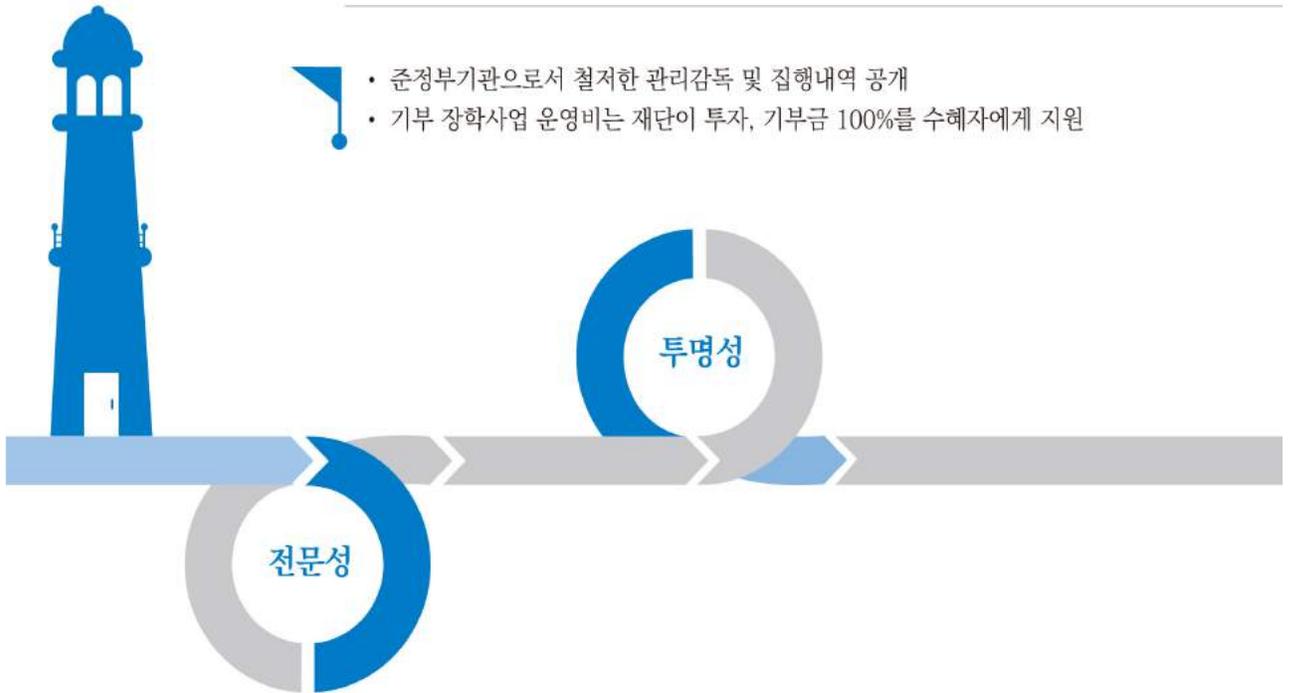


• **기숙사 건립**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별 기숙사를 건축해 부담없는 주거공간을 지원합니다.



푸른등대 특·장점

푸른등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학생의 꿈을 지원합니다.



- 준정부기관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집행내역 공개
- 기부 장학사업 운영비는 재단이 투자, 기부금 100%를 수혜자에게 지원

- 정부 학자금 지원제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전국 대학생 관련 정보 보유
-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과 리스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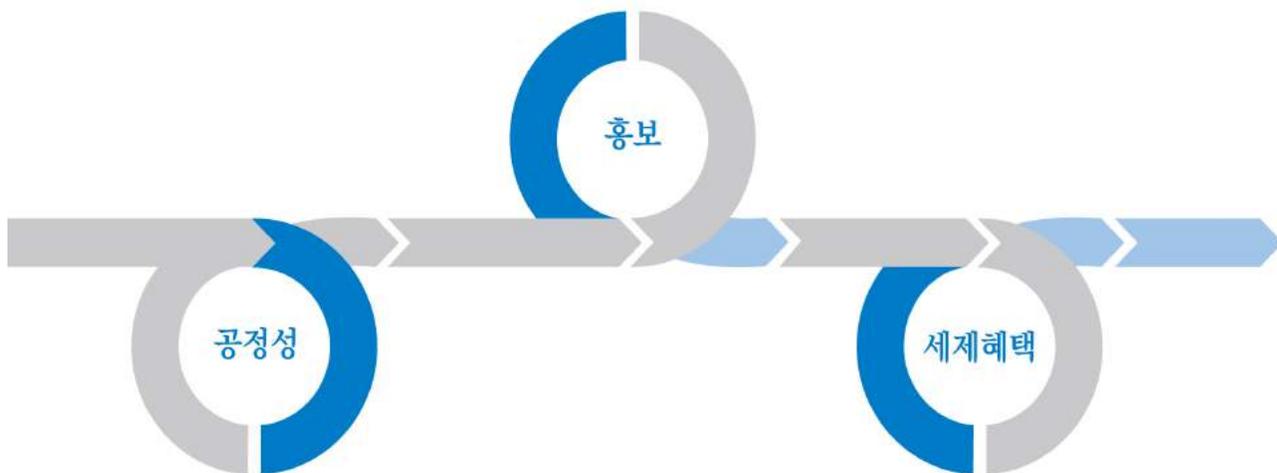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은
〈한국가이드스타〉가 선정한
우수 비영리단체입니다.

* 한국가이드스타: 한국가이드스타는 2013년 1월 1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결산서류를 기부활성화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최초의 공익법인입니다.

세정나눔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소망보육원	한국장애인재단
수석문화재단	한국장학재단
송가원	한국제이티에스
신명복지재단	한국카리스인터네셔널
신한장학재단	한국컴퍼션

한국일보 [2014. 12. 22]

- 일 평균 17만 명이 방문하는 재단 홈페이지 및 300만 명이 구독 중인 웹진, SNS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기부자 홍보 진행



- 온라인 시스템과 공정한 심사 프로세스를 통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원

-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일반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



푸른등대 홍보대사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
함께 응원합니다.

푸른등대와 함께 하는 서포터즈, 대학생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하기 위해
각 분야의 홍보대사가 푸른등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푸른등대 홍보대사는 시간과 재능, 전문성을 가지고 나눔의 의미를 알리며,
대학생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합니다.

청년의 꿈을 비추는 기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기부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일시 : 2016년 12(화) 장소 :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한국장학재단 제1호 기부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영기

- 어느 사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과 더불어 나눔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어느 순간에도 꿈과 희망, 용기를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눔이 필요합니다. 푸른등대와 함께 나눔의 행보에 동참하겠습니다.

- 서울예대에서 연극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신입생 40%의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자신의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연극, 뮤지컬 등에 대한 꿈을 다시 실현하고자 입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엄청난 용기를 낸 이들을 응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푸른등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박상원

- 몇 년 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법대생의 고민을 듣다가 가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뜻 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젊음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푸른등대와 함께 응원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곽금주



2015년 푸른등대 소식

1월



-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우수 나눔지기 발대식 (하나금융 후원)

3월



- 2015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원(386명, 813백만원)
- 제19차 기부금품운영위원회 개최

12월



장학증서(한국가스) 12. 23(수) 장소 : 한국장학재단 대회의



우리은행 인재육성지원, 2015. 12. 23(수) 장소 : 한국장학재단

- KEB하나은행 기부금 기탁
- 구찌그룹코리아 기부금 기탁
- 국민은행 기부금 기탁
- 대한LPG협회 기부금 기탁
- 우리은행 기부금 기탁
- 한국씨티은행 기부금 기탁
- 한국투자공사 기부금 기탁
- 한국가스공사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 제23차 기부금품운영위원회 개최

11월



한국화웨이 인재육성 2015. 11. 20. (금) 장소 : 한국장학재단



Realize Your Dream 2015 2015. 11. 20. (금) 장소 : 한국장학재단

- 상상드림프로젝트 시즌 2 운영(KT&G 후원)
- Realize Your Dream 해외탐방(블리자드 후원)
- 경남은행 기부금 기탁
- 광주은행 기부금 기탁
- 기술보증기금 기부금 기탁
- 농협은행 기부금 기탁
- 대구은행 기부금 기탁
- 부산은행 기부금 기탁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부금 기탁
- 신용보증기금 기부금 기탁
- 신한은행 기부금 기탁
- 제주은행 기부금 기탁
- IBK기업은행 기부금 기탁
- KDB산업은행 기부금 기탁
- 한국화웨이 기부금 기탁

희망찬 빛이 되어 줄
푸른등대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푸른등대 모금 현황



2015년 기부 주체별 상세 현황

[기업/단체]

10,67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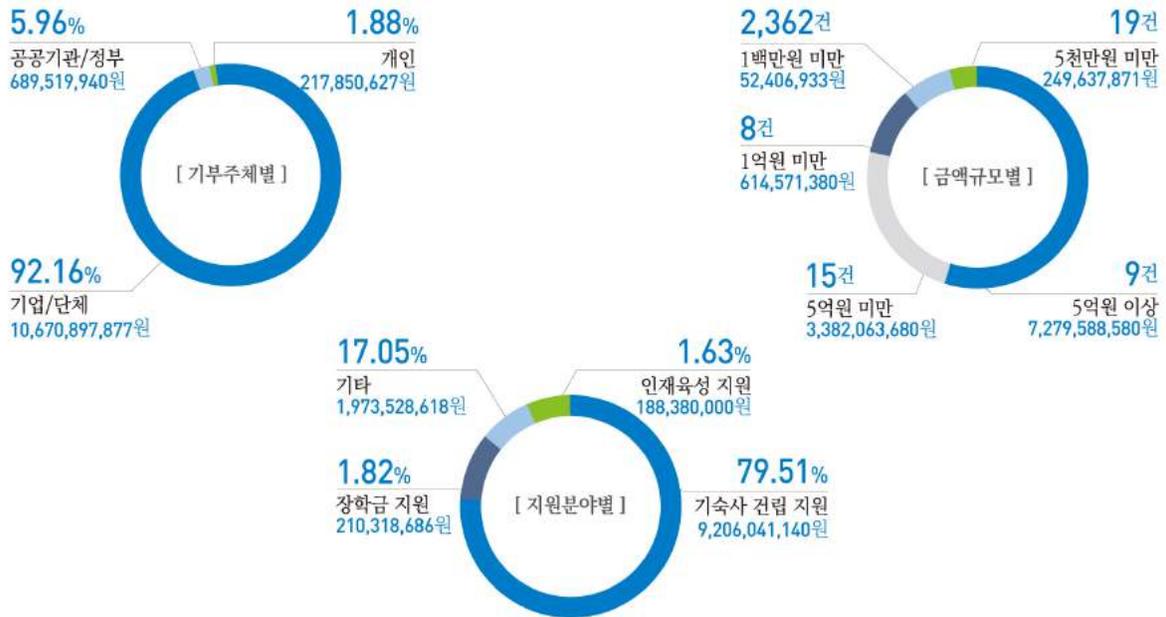
KEB 하나은행 1,615	우리은행 1,263	KB 국민은행 1,158	신한은행 1,152
BNK 부산은행 313	DGB 금융그룹 대구은행 257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160	BNK 경남은행 160
GUCCI 50	제주은행 39	세계한인회장대화운영위원회 31	ETS TOEFL 30

[공공기관]

684백만원

한국가스공사 300	한국수출입은행 178	HF 한국주택금융공사 97	KDI 신용보증기금 61
---------------	----------------	-------------------	------------------

2015년 모금 현황 : 총 116억 원



(단위: 백만원)

대한LPG협회 1,000	농협 890	IBK기업은행 888	KDB산업은행 701	citibank 351
KT&G 122	수산업업동조업중앙회 113	HUAWEI 100	광주은행 99	전북은행 82
(주)엘앤제이 16	erae 6	Virbac 5	BLIZZARD **	기타 69

[정부기관]

[개인]

KIBO 기술보증기금 38

KIC 한국투자공사 10

5백만원

교육부 5

218백만원

* '15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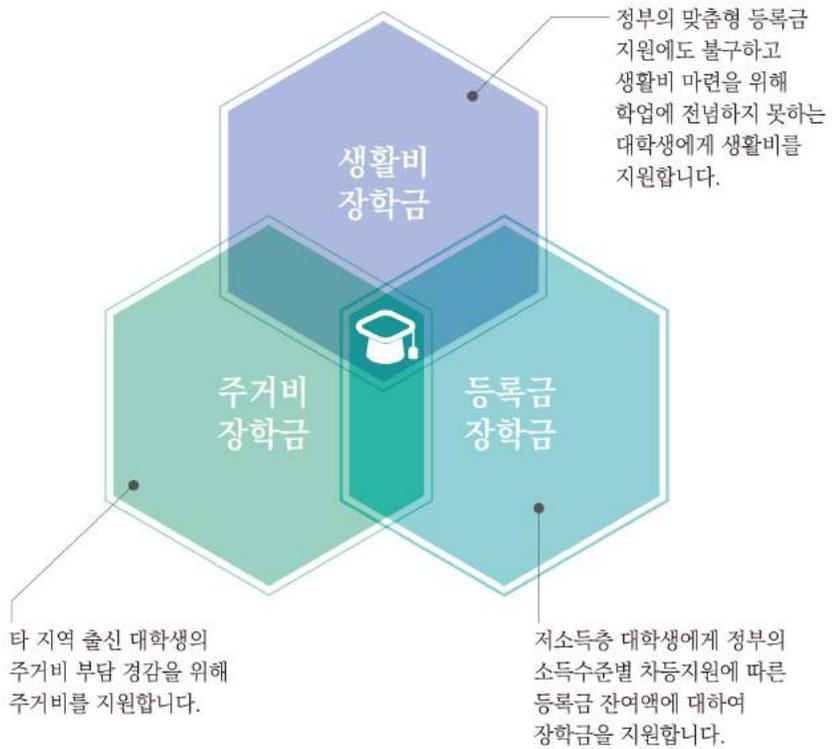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및 지원현황

청년들이 학업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비, 주거비, 등록금을 지원하는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유형



기부자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사례

- 대한LPG협회** : 법인 또는 개인택시 가정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지원
- HUAWEI** : 공학계열 우수 대학생 지원
- GUCCI** : 패션 전공 우수 대학생 지원
- 한국가스공사** : 각 지역별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프로세스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지원현황

총 **4,136명, 87**억원 지원(누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인원	84	624	623	917	892	996	4,136
금액	178	1,454	1,394	1,933	1,795	1,986	8,740

(단위: 명, 원)

2015년도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지원현황

기부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분야
대한LPG협회	984,000,000	492	법인 및 개인택시 가정의 대학생
한국가스공사	279,854,900	192	사회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KGC인삼공사	196,229,600	75	6년근 인삼경작인 가정의 대학생
넥슨코리아	126,974,000	36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의 대학생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80,000,000	40	주얼리 사업 관련 전공 우수 대학생
둔남장학금	49,382,000	34	동서울대학교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한국화웨이	47,500,000	19	IT, 전자 분야 등 관련 전공 우수 대학생
홈플러스	41,811,000	22	인문사회계 우수 대학생
KOSAF 펀드	38,000,000	19	보육원 퇴소 우수 대학생
범한판토스	38,000,000	19	사회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ETS TOEFL	30,000,000	15	영어활동실적이 있는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30,000,000	15	게임 및 컴퓨터 등 관련 전공 우수 대학생
구찌코리아	29,216,000	11	패션 관련 전공의 우수 대학생
세계한인회장단	15,387,000	7	사회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총합계	1,986,354,500	996	

* '15년 12월 31일 기준



인재육성 지원사업 및 지원현황

창의적인 대학생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인재육성 지원사업>

푸른등대는 기부자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스티브잡스를 응원합니다.

꿈·끼 실현 프로그램

기부처 사회공헌 방향을 고려하여, 대학생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합니다.

지구별 꿈 도전단



꿈을 가진 대학생이 전 세계 각지에서 팀별 꿈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배양하는 글로벌 대외활동 프로그램

미래 통일리더 아카데미



탈북대학생의 안정적 대학생활을 위해 남한대학생들과의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통일 시대의 리더 육성 프로그램

Realize Your Dream



게임·IT·컴퓨터 분야의 우수 대학생이 세계적인 게임 컨퍼런스 '블리즈컨 (BlizzCon)'에 참여하는 게임산업의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상상드림 프로젝트



세상을 따뜻하게 할 차세대 대학생의 꿈을 지원하여,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생이 사회지도자층 인사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시 초·중·고교생에게 지식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세대 리더육성 멘토링



대학생이 사회지도자층 인사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워 리더십과 섬김정신을 함양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대학생 재능멘토링



대학생이 교육소외지역의 초·중·고교생에게 학습지도, 예체능지도 및 진로상담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총 26억원 지원(누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금액	99	136	1,043	924	370	2,572

(단위: 백만원)

2015년도
인재육성 지원사업
지원현황

기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진행금액(백만)
KEB하나은행	미래통일리더아카데미	남북한 대학생이 미래통일 시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60
KEB하나은행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우수 나눔지기 프로그램	재단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사업의 우수 나눔지기 대학생 지원	124
블리자드	Realize Your Dream	블리자드 본사 견학 및 블리즈컨 참여 기회 제공	51
KT&G	상상드림프로젝트	세상을 따뜻하게 할 대학생의 꿈을 응원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13
구찌	구찌해외탐방	구찌 본사 견학 및 패션쇼 체험 기회 제공	10
엘앤제이	현물기부(가방) 지원	대학생 지식멘토링 참여 우수 대학생에게 가방 제공	9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장학생 지식봉사캠프	한국가스공사 장학생이 저소득층 초등학교 대상 지식멘토링 캠프 개최	3
합계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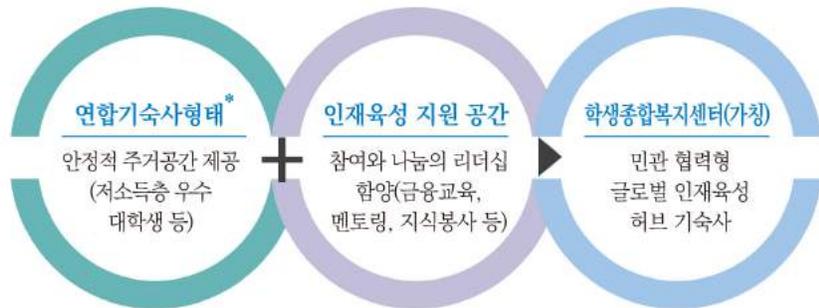
* '15년 12월 31일 기준



기숙사 건립 사업 및 지원현황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의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기숙사 건립 사업>

대학생의 주거공간 부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여, 학업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푸른등대**는 기부금 재원을 통해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 (연합기숙사) 대학캠퍼스 밖에 다수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공동으로 거주하는 기숙사

주요기능



“ 대학생의 안정적 주거 지원/창의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공간 ”

[학생주거공간지원]

- 대학생 주거지원
- 국·공립대 수준 기숙사비(15만원 이내)
- 지상 13층, 지하 1층
- 총 500실 이내, 1,000명 규모(2인 1실)

[인재육성공간지원]

- 지도자 멘토링 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 대학생 지식봉사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 상담공간지원]

- 금융 및 리더십 교육 지원
- 대학생 상담센터 운영 (학자금 대출, 장학금, 상환, 적성, 취업 및 진로 등)
- 지역연계 평생교육 지원

[문화 · 학습공간지원]

- 열린도서관 및 독서실 개방
- 멀티미디어실, 카페테리아, 강당 및 동아리실 등 운영
- 다목적실 및 재능개발실을 통한 학습지원 등

건립 현황



[건립 부지]



- 국유지: 고양 덕양구 원흥동 11-1
- 면적: 8,090m²(2,447평)
- 교통편: 도보 2~7분(지하철 원흥역, 버스정류장)
- 주변시설: 행복주택, 초·중·고,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건립 재원]



- 기부처: 전국은행연합회(20개 회원사, 326억원 기탁)
- 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중인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우수 학생 등
- 규모: 대학생 1,000명

[추진 체계]



- 관리 및 승인: 교육부(부지사용 및 운영 승인)
- 건립 및 운영: 한국장학재단
- 기탁: 교육부에 기부 채납 후 30년 이상 무상 사용



기부자 예우

푸른 꿈을 응원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을 드립니다.

푸른등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기부자님의 마음과 뜻을 소중히 생각하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려드려요



- 기부자 이름의 장학사업 운영: 10억 원 이상 기부자
- 명예의 전당 Wall에 등재: 1천만 원 이상 기부자
-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1천만 원 이상 기부자
- 기부자홀, 건물명칭 사용: 건축물 건립 재원 기부자

빛내드려요



- 연차보고서 기부자 인터뷰: 1억 원 이상 기부자
- 보도자료 배포: 5천만 원 이상 기부자
- 모범기부자 포상: 별도 심사를 통한 선정
- 재단 고객 대상 기부 장학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기억해드려요



- 기탁식 또는 수여식 개최: 5천만 원 이상 기부자
- 이사장명의로 감사패 제작: 5천만 원 이상 기부자
- 초청 및 소식지 발송: 재단 주요 행사 초청 / 연차보고서 / 재단간행물 / 홍보물품 / 기부 뉴스레터 발송 등

세제혜택

두 배의 기쁨, 백 배의 보람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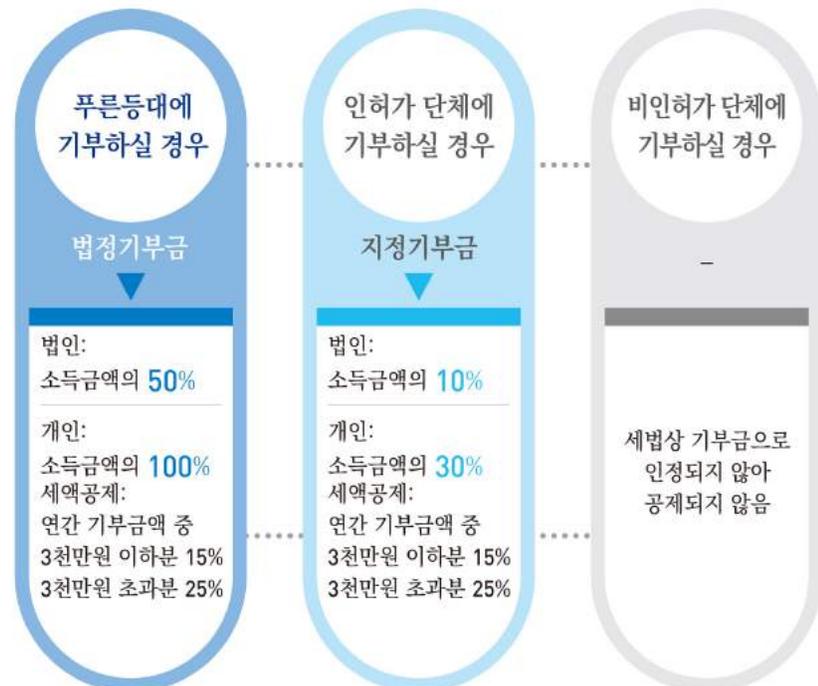
한국장학재단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에 기부하시면, 일반 지정기부금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4
- 법인세법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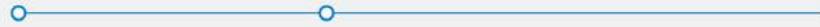
법정기부금단체의 세제혜택 안내

-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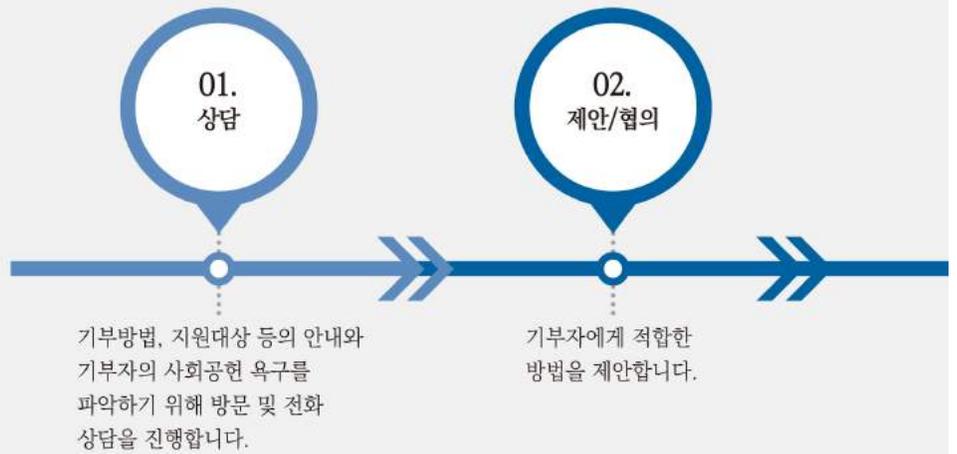


참여방법



희망의 물결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눔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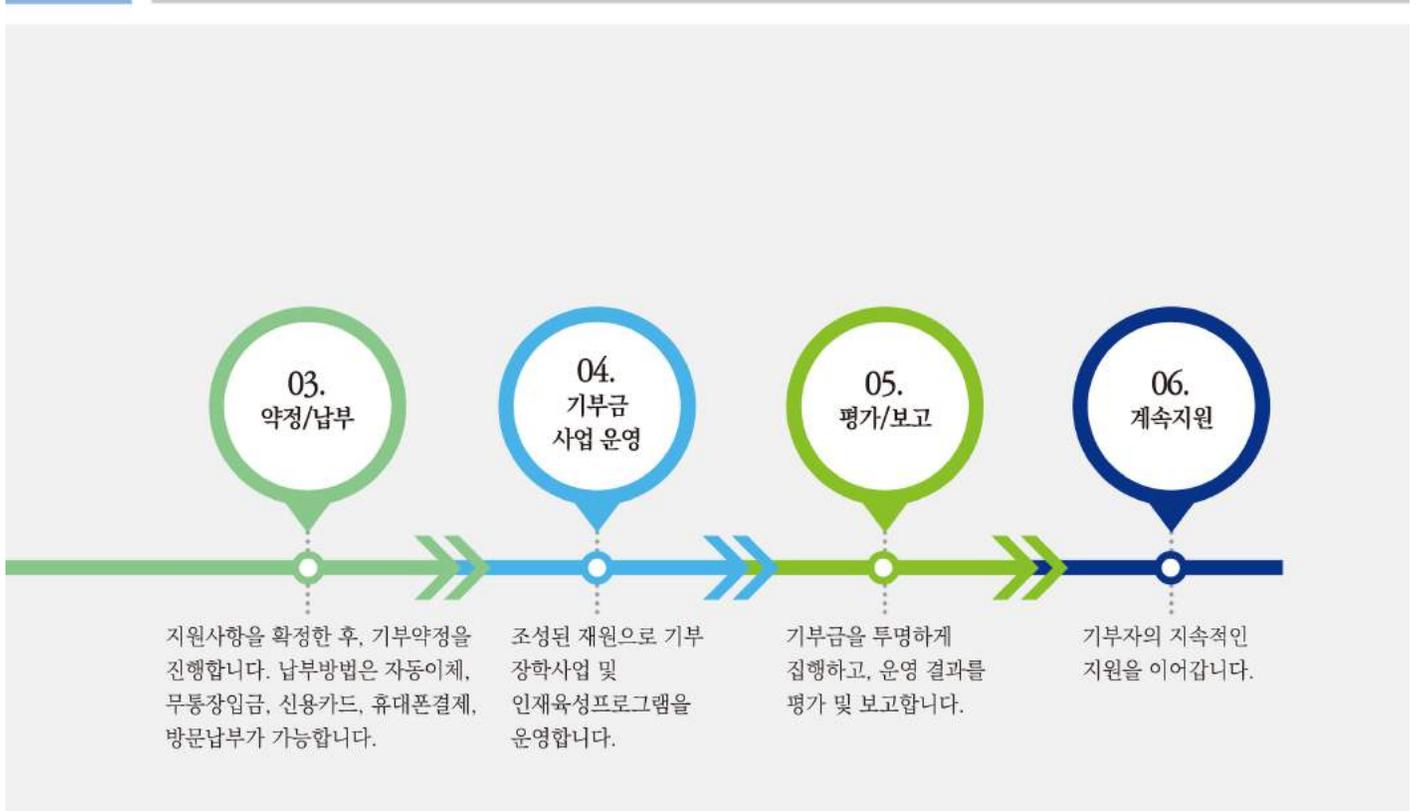
참여절차



참여방법



- ARS 소액기부(1통에 2,000원) 060-700-1003
- 온라인 기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전화약정 및 문의 개인기부: 02-2259-2621, 2623
 법인기부: 02-2259-2622
- 팩스/이메일/우편 이용약정 팩스: 02-2259-2089
 이메일: gift@kosaf.go.kr
 우편: (04527)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교육기부사업부



참여 가능한 기부금 지원 사업



〈1억 원 이상 기부〉를 하실 경우, 기숙사 건립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기부〉를 하실 경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은 물론 대학생 대상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기부〉를 하실 경우, 저소득층 및 우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05

한국장학재단 연혁
및 미래발전방향

I. 연혁 (연도별)	294
II. 미래 발전 방향	301

KOSAF



I | 연혁 (연도별)

□ 2008년

- 2008. 02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국정 중점과제 선정
- 2008. 05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기본방안 수립
- 2008.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2009년

- 2009. 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2009. 02 법률 공포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2009. 04 한국장학재단 IT인프라 구축
- 2009. 05 한국장학재단 설립(초대 이사장 이경숙박사)
- 2009. 06 한국장학재단 채권 신용등급 AAA획득(한국기업평가)
- 2009. 07 학자금 직접대출 개시



□ 2011년

- 2011. 07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관 평가A등급 획득(신설기관 최초)
- 2011. 08 국가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 2011. 09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경영인증 획득
- 2011. 10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Financial Service 본상 수상
- 2011. 11 제2회 국제 학자금 정책포럼 개최
- 2011. 11 금융형 기관 지정
- 2011. 11 제21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우수창간사보상 수상
- 2011. 11 2011 Spotlight Awards Education/Research/Foundation 부문 연차보고서 동상 수상
- 2011. 12 '12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4.9%→3.9%)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기준완화(B학점 이상→C학점 이상)

서울경제

2011년 01월 06일 목요일 A27면 사회

학자금 대출 금리 첫 4%대로 떨어져

1학기 4.9% - 내일부터 신청접수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도 역시 처음으로 4%대로 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4.9%로 결정하고 7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와 대출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008년 2학기 7.8%에서 2009년 2학기 5.8%, 2010년 2학기 5.2%로 계속 내려갔

학자금 대출금리 추 문화일보



2011년 05월 09일 일요일 008면 사회

“든든한 ‘든든학자금’ 대출... 정부가 내게 한 투자죠”

▶ 침묵할 하더라도 숨겨 두기 싫은

“든든학자금을 받은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돈이 아니라 미래 인생에 대한 국가의 투자입니다. 나눔을 보낼 인내가 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금을 받아 이자 없이 인회 할안정했는 경쟁력 때문에 2대 중반까지 ‘사제’ 지원 상이라고 하면 2009는 군형무를 마친 뒤 25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100% 저우인 학

과다에 비해 나쁜 이자율, 100%이 대출까지 되는 든든학자금은 내게 처음으로 담배의 값보다”고 회상했다.

같은 부안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태연(27)씨 역시 별명이 ‘늘은 친일생’인 노우이 대학생이다. 이씨는 “일부러 시험 다시 공부할 생각이 없는 생각을 했지만 등록금 때문에 진위를 명성할 때 든든학자금 제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남은학과 생활에 있어서 내기 마셨을 것인데





□ 2012년

- 2012. 01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연 1.75조원)
- 2012. 01 제8회 Webaward Korea 비영리단체 부문 대상 수상
- 2012. 03 2012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 2012. 10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올해의 소비자 마케팅 캠페인 금상 등 수상
- 2012. 11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소셜미디어 대상 준정부기관부문 대상 수상
- 2012. 11 제22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광고 및 공익캠페인상 수상
- 2012. 12 제9회 Webaward Korea 웹진부문 우수상 수상
- 2012. 12 2012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공기관부문 우수상 수상



□ 2013년

- 2013. 01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확대(연 2.7조원)
- 2013. 0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3.9% → 2.9%)
- 2013. 03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
- 2013. 05 제2대 광병선 이사장 취임
- 2013. 10 제6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 2013. 10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웹사이트기술부문 금상 등 수상(3년 연속 수상)
- 2013. 11 2013대한민국 최우수공공서비스대상 수상
- 2013. 11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소셜미디어대상 수상
- 2013. 12 제23회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경향신문 2013년 01월 14일 월요일
013면 사회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자녀도 준다

올해부터 적용... 금액도 인상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0% 가구(연간 환산소득 5710만~6703만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지원액도 높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해보

활보호 대상자와 3분위까지만 수혜를 받았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받는 금액은 4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1~6분위 지급 금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35만~22만5000원씩 인상됐다. 8분위의 지급금액은 7분위와 같은 6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민일보

7%대 학자금, 금리 2%대로 바꿔준다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연체자 원금 일부 탕감도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다. 2008년 2학기 때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66만2000명이

東亞日報

2013년 05월 28일 화요일
A27면 투데이

광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광병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71·사진)가 27일 한국장학재단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광 신임 이사장은 한



2013년 08월 09일 금요일 008면 사회

을 이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이 연체된 4만 여명에 대해 원금 일부를 탕감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상자(3200억 원 규모)를 국민통학기금에 매각하고, 원금 일부를 탕감해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큰 제정을 거쳐 이사장에 될 23일까지 3년이다. 1관인 한국장학재단은 1차 사업이 주요 업무다. 의 교육비 부담 완화정책 관계없이 누구나 의 2 기회를 가지 스 이다





□ 2014년

- 2014. 01 저소득층 지원 대폭 강화한 국가장학금 사업 확대(연 3.5조원)
- 2014. 01 다자녀 국가장학금 및 지방인재 장학금 시행
- 2014. 03 2014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 수상(3년 연속 수상)
- 2014. 06 2014 세종대왕나눔봉사 대상 및 국회윤리특별위원장상 수상
- 2014. 0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 2014. 07 맞춤형 카운슬링 센터(부산 학자금지원센터) 개소
- 2014. 09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지원을 위한 MOU 체결
- 2014. 10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웹사이트기술부문 금상 등 수상
- 2014. 10 2014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
- 2014. 10 2014 한국의 경영대상 '한국의 CS혁신 리더' 수상
- 2014. 11 2014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
- 2014. 11 제7회 인터넷소통·소셜미디어 대상 소통행정부문 대상 수상



경향신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부담 덜게 전환 대출·채무 경감 실시

한국장학재단은 29일 2009년 이전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저리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율은 2.0%로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에는 법제 근거의 부족으로 대출자는 6~7%의 이자를 부담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자 50만명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평균 20만원가량 이자를 덜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통과에 따라 지난해 2월 기준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를 위한 개인 채무경감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연체채권금 채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대상자 6만 4000여명은 개인별 조정된 금액에 따라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감면 이후 10년간 장기보통상환이 가능하다고



□ 2015년

- 2015. 01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한 장학금확대(3.9조원)
- 2015. 01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실시(~5월)
- 2015. 0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
- 2015. 05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 개최
- 2015. 06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14001) 인증
- 2015. 06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사업 실시
- 2015. 09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
- 2015. 11 한국장학재단 본사 대구이전 완료
- 2015. 12 제8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
- 2015. 12 2015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전자사보 부문 기획대상 수상





□ 2016년

- 2016. 04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 2016. 05 제3대 이사장 안양옥 박사 취임

내일신문

2016년 05월 26일 목요일 019면 정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안양옥 전 교총회장

한국장학재단의 신임 이사장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선임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과



심사, 교육부의 제청을 거쳐 안 전 회장이 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2019년 5월 24일까지 3년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됐으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 학자금 지원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 기부금 모집·관리 등을 맡고 있는 뒤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안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6년 동안 교총회장으로서 교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Ⅱ | 미래 발전 방향

1 경영목표 체계

가. 기관 미션 및 비전

□ 설립목적과 미션

- 재단은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
- 재단법상 설립 목적 및 기관의 존재이유 및 궁극적 목적을 반영하여 미션 설정

재단법상 설립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
--------------	---

미션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수준의 고등교육 장학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	---

□ 비전

- 재단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을 고취하고, 실현가능한 미래 모습을 미션과 사업에 근거하여 수립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장학·대출·인재육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고객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비전 수립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 종합장학지원(Total Care) 기관
----	--

나. 경영목표 체계

□ 재단 비전 달성을 목표로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략목표 도출 및 중장기 전략 재수립

- 임원·부서장·팀장·직원 워크숍 및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
 - * 임원·부서장, 팀장 워크숍 4회 개최, 전 직원 의견 수렴



□ **경영환경변화** 및 기관장 경영방침을 고려하여 **전략**(5대 전략목표 및 16대 전략과제) 및 **5대 사업**을 기능적으로 연계

□ 경영목표 체계 도출 과정

○ 경영환경분석, 자체진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경영목표 체계 수립



〈 경영목표 체계도 〉



2 세부추진 계획

전략목표 I 국민과 대학생에게 다가가는 국가장학금 제도 운영

전략목표 개요

1 추진 현황

- 국가장학금 규모¹⁾ 확대로 가계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²⁾은 '11년 총 등록금 대비 절반이상 수준을 달성하였고 등록금 안정화³⁾에 기여
 - 1) ('12)1.8조 원→('13)2.8조 원→('14)3.5조 원→('15)3.6조 원→('16)3.7조 원
 - 2) ('12)34.5%→('13)43.4%→('14)49.5%→('15)51.3%
 - 3) 국공립: ('11)435만 원→('15)409만 원, 사립: ('11)769만 원→('15)734만 원
- 금융재산부채 등을 반영한 공정·투명한 가구소득조사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기반 구축
- '15년 국가장학 현장모니터링 결과 반환금 총 3,012백만 원 환수
 - 점검대학 5.3% 확대* 및 반환금 2,178백만 원 증가
 - * ('14년)135개교 → ('15년)140개교, ('14년)921백만 원 → ('15년)3,012백만 원
- 국가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지속적 확대 지원으로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강화

2 필요성

- 국정과제(교육비 부담경감) 달성 유지 및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장학사업의 안정적 제도 운영
- 대학생들 직업체험 기회 확대, 질적 수준 제고 및 다양성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교외근로 활성화 필요

3 추진방향

- 소득분위 경제값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장학금지원 서비스 제공
- 국가장학금 부적정 수급 제재방안, 국가장학금 정책효과 측정방안 고도화, 국가장학금 II 유형 운영방식 개선, 지방인재장학금 제도 개선 등 국가장학금 관리체계 선진화
- 국가장학금 신청방안 개선, 국가장학 DW 구축, 대학과 학사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국가장학금 운영시스템 고도화
- 국가근로장학 종합지원시스템(KWS)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학생의 취업역량 개발 효과 극대화 도모



전략목표 II 수요자 중심 교육금융 확대

전략목표 개요

1 추진 현황

- 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학자금 대출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 제공

(단위: 억 원)

구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
취업후상환학자금	15,149	17,811	16,386	13,705	63,051
일반상환학자금	8,115	7,709	7,831	7,549	31,204
농어촌출신대학생	925	1,021	997	901	3,844
계	24,189	26,541	25,214	22,155	98,099

- 지자체와 이자지원협약체결을 통한 상환부담 경감 노력
- '16.8월 현재 서울, 경기 등 15개 지자체와 이자지원협약체결

'15년까지(9개)	'16년 상반기 중(6개)	'16년 하반기(4개)
서울, 경기(성남, 과천 포함), 경남(통영 포함) 광주, 제주, 장수	대구, 부산, 전주, 김제, 완주, 진안	아산시('16.9월중 협약) 남원, 군산(조례제정 완료) 청주(조례제정 중)

2 필요성

- 학기 중에 필요한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 광역자치단체 이자지원 확대 및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이자부담 완화 추진으로 종합장학지원 기반 마련
- 상환제도 및 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학자금 대출 시스템 구축

3 추진방향

- 안정적 학업수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노력
- 학자금대출금리 지속적 인하 및 지자체 이자지원 확대를 통한 이자 부담 경감 노력
- 상환관리체계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상환 편의제도 개선
- 공적자료 활용 확대 및 모바일 상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고객맞춤형 스마트 상환체계 구축
- 지자체 연계·협약을 통하여 부실채권 상환지원, 분할상환약정제도 개선 및 채무조정제도를 다양화 등 신용회복지원 확대 추진

전략목표Ⅲ 세계적 우수인재 육성 체계 구축

전략목표 개요

① 추진 현황

- 이공계, 인문 및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우수한 인재 양성 추진

[우수인재 장학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분야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	814 (15,142)	698 (13,667)	713 (14,239)	692 (12,920)	676 (13,297)
인문100년장학금	인문	162 (3,588)	125 (2,900)	140 (3,436)	132 (3,106)	131 (3,138)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	-	-	-	-	11(140)
드림장학금	해외유학	-	1 (10)	1 (15)	7 (23)	10 (42)
국가연구장학금	인문사회	49 (738)	46 (735)	50 (735)	50 (796)	50 (804)
합계		1,025 (19,468)	870 (17,312)	904 (18,425)	881 (16,845)	878 (17,421)

- 사회 지도층 멘토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국가 인재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인재육성지원 사업 수행

② 필요성

-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사회적 책무감이 있는 우수학생의 선발 및 육성을 위해 세계적·전인적 인재육성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국가 인적자원인 사회지도층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대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인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가 장학생이 지속적인 국가와 사회의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 제공 확대 필요

③ 추진방향

- 세계적·전인적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선발·운영체계 개선
 - ‘한국장학재단 스탠다드’ 평가체계 수립으로 우수인재 선발 및 육성 강화
 - 장학수혜주기를 반영한 전인적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확립, 사회적 전파
-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한국장학재단 소셜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재원의 사회적 환원활동 효과성 극대화 도모
 - ‘국가장학생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으로 사회적 환원활동 활성화
 - 우수 인적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 시너지 효과 창출
- 인재육성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성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 등 멘토링 프로그램 차별화 강화



전략목표Ⅳ 학생의 삶의 질 향상

전략목표 개요

① 추진 현황

- 기부금 조성 노력¹⁾을 통한 정부지원 밖의 대학생 지원 확대
1) ('10)20억원 → ('13) 26억원 → ('14) 125억원 → ('16) 156억원
- 대학생 주거안정 등을 위한 권역별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부지 및 재원 확보
- 고객감동 경영 실현을 위하여 현장 중심형 고객상담 필요
- 지역 고객을 위한 4개 지원센터 개소
- 부산 지원센터('14.7.), 대구·서울 지원센터('15.10.), 광주 지원센터('16.7.)

② 필요성

- 학생 주거난 심화, 생활비 상승 등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 경제적으로 곤란한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한 연합기숙사 확대 필요
- 재단 사업에 대한 고객의 자유로운 접근성 확보
- 장학금, 학자금 대출, 기숙사 사업 등 재단의 종합지원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공

③ 추진방향

- 교육기부 전문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기부 활성화
- 권역별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 제공
- 대학 내 일반상담 기능 강화 및 권역별 학자금지원센터의 현장 밀착형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하여 고객 편의성 증진
- 지원센터의 전국 17개 주요 광역시·도별 확대 추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원시스템 상담 및 지원 체제 구축

전략목표 V

미래 100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목표 개요

① 추진 현황

- 대학생 중심의 홍보를 통해 재단 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SNS, 블로그, 대학매체, 홍보대사)을 이용한 소통 운영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장학지원(Total Care) 추진
- 미션·비전·중기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도출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② 필요성

- 대국민 긍정적 여론 조성을 통해 재단의 사업기반 강화
- 종합장학지원의 발전을 뒷받침 하는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장학지원 효과분석, 고등교육 통계 서비스 강화 필요
- 기관 평가와 개인의 성과를 연계하는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필요

③ 추진방향

- 미래 수혜자인 유·초·중·고교생, 학부모 및 교원으로 홍보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지역에서부터의 풀뿌리 홍보체계 마련
 - 기존 홍보 대상인 대학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직접 대면홍보 추진
- 사업수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사적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사회 변화를 반영한 종합장학지원 발전방안 마련을 통하여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국가인재 육성에 기여
- 조직원 간 내부협업 및 소통체계 강화
 - ‘One Voice, One Mind, One Body’ 조직문화 정착
- 생산적, 성과창출형 노사관계 및 교육연수 기능 강화

참고

소득분위

I.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310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312

KOSAF



I |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사업 (아래 대상사업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학자금융자 - 장학금: 국가장학금(1,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기타 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지원사업 중 소득분위 활용 사업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차상위자격'을 유지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분위*)'이 학자금지원사업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로 '기초·차상위자격' 및 '소득인정액 구간'이 다를 수 있음 * '소득분위' 명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따라 '소득구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신청자 (신청+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권자: 대학생 (각 학자금지원사업의 신청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서(통합양식 또는 각 사업별 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기타 (해당자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말소등초본,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 수용증명서 등 제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이하 본 지침 내 동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자격명</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초생활수급자</td> <td>기초생계급여수급자</td> <td>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td> </tr> <tr> <td>기초의료급여수급자</td> <td>* 보장시설 수급자증명서 포함</td> </tr> <tr> <td rowspan="7">차상위계층</td> <td>기초주거급여수급자</td> <td>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td> </tr> <tr> <td>기초교육급여수급자</td> <td></td> </tr> <tr> <td>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td> <td>한부모가족 증명서</td> </tr> <tr> <td>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td> <td>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td> </tr> <tr> <td>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td> <td>(경중)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td> </tr> <tr> <td>차상위자활대상자</td> <td>자활근로자 확인서</td> </tr> <tr> <td>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td> <td>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td> </tr> <tr> <td>차상위 계층 대상자</td> <td>차상위 계층 확인서</td> </tr> </tbody> </table> </div>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중)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중)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구 분	내 용							
동의	가구원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대학생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한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및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방문, 우편, FAX)으로 제출 가능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 동의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사망·실종·수용·말소 등 확인·심사 (단, 해외이주말소는 해당안됨) - 심사 결과는 제외사유미달 및 증빙서류미비 등으로 구분되며, 증빙서류 미비일 경우, 7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 						
조사	소득인정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u>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u> 다만, 직권자료는 사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table border="1" data-bbox="511 1228 1396 140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소득평가액</th> <th style="width: 50%;">재산의 소득환산액</th> <th style="width: 30%;">소득환산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실제소득*</td> <td>(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승용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적용과 관계없이 승용차 소득환산율(월 4.17%/3) 적용</td> <td>일반재산 : 월4.17%/3 승 용 차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td> </tr> </tbody> </table> <p>* 학생 및 가구원 특성별 소득 공제 별도 적용</p>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승용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적용과 관계없이 승용차 소득환산율(월 4.17%/3) 적용	일반재산 : 월4.17%/3 승 용 차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승용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적용과 관계없이 승용차 소득환산율(월 4.17%/3) 적용	일반재산 : 월4.17%/3 승 용 차 : 월4.17%/3 금융재산 : 월6.26%/3						
확정	소득인정액 확정·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 확정(10개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소득기준 구간은 만원 단위 원칙으로 함 ○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분위) 확정 및 통지 						
이의처리	이의접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의 제기에 따른 접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자격 : 소득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 대학생 -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이의신청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필요시, 소득·재산(부채) 등의 추가 반영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수 있음) 증빙서류 미비(거절)일 경우, 7일 이내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인 이의처리를 위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가능 범위 :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증빙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단, 개별사업 기준 및 일정에 따라 이의신청절차(통지포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이의처리 반영	소득인정액 재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처리에 따른 학생 가구 소득인정액 재산정 및 소득분위 반영 						



II | 업무처리 프로세스

구 분	업무처리 절차	부서별(또는 채널) 업무수행주체	비고
신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등록접수 	홈페이지	시스템
가구원 심사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가족관계 확인, 동의서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동의 처리 등 가구원 제외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등 가구원 변경 이의심사 	홈페이지 서류처리팀(고객지원부) 소득분위운영팀	시스템 도급사 재단 직원
↓ 조사 요청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재산조사 의뢰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 요청 → 공적자료(금융재산포함)반영 → 소득인정액 계산처리 저소득자격 대상자(기초, 차상위)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자격확인 후, 소득분위 반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스템
↓ 소득인정액 산출			
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을 감안 소득분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별 구간기준은 국가장학지원부 결정 학자금지원 자격 결정 	IT전략실 국가장학지원부 <재단 업무시스템>	시스템
↓ 통지			
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분위 산정결과 신청자에 통지 	IT전략실 소득분위운영팀	시스템
↓ 통지 후 응대			
통 지 후 응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조사 결과 요약내역 및 소득산정방식 안내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세내역 조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내역조회 VOC: 소득분위운영팀 처리 	(1차, 단순상담) 상담센터(고객지원부) (2차, VOC상담) 소득분위운영팀	도급사 재단 직원
↓ 이의 처리			
이 의 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 이의접수에 따른 심사 	(3차, 이의처리) 소득분위운영팀	재단 직원
↓ 소득인정액 조정(이의 용인시)			
소 득 분 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한 학자금지원 사업별 반영 	각 사업부서	시스템